

통 일 문 답

1997

통일교육원

차 례

I. 통일정책 및 방안

1.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에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있는데 대북정책 추진의 기본방향 및 원칙은 무엇인가?/ 15
2.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통일을 추진하고 있으면서도, 통일정책의 기본철학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구현을 천명하고 있다. 이같은 두 입장은 상호 모순되는 것이 아닌가?/ 18
3.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통일정책의 기초는 남북한 상호체제의 인정을 전제하고 있다. 이같은 실정법과 통일정책 기초간의 모순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21
4.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무엇인가?/ 23
5.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핵심내용과 그 특징은 무엇인가?/ 26
6. 통일의 접근시각으로서 ‘민족공동체’란 무엇이며, 정치통일에 앞서 민족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28
7. 북한의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수용하지 못하는가?/ 31

8.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통일의 목표 또는 통일조국의 미래상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 34
9. 남북관계 및 통일환경의 변화를 감안할 때 통일에 대한 전망과 시기는 언제인가?/ 37
10. 북한은 공산주의 사상에 바탕을 둔 주체사상이 있는데, 우리에게서 정신적 지주가 될 사상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 39
11. 남북관계 개선에 주한미군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일부 견해가 있는데, 주한미군의 존속이 과연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언제까지 계속되겠는가?/ 41
12. 북한이 대미, 대일 협상시 보여주는 당당한 태도에 비하여 우리의 대미교섭 자세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비쳐보이는 이유는?/ 43
13. 독일이 통일 이후 겪은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었으며, 이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인가?/ 46
14. 독일은 통일후 과거 동독지역의 주민들을 위하여 어떠한 통합정책을 실시하였는가?/ 49

II. 남북관계 현안문제

15. 북한을 방문하거나 북한주민을 접촉하고자 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55
16. 대북교섭에 있어 창구일원화보다는 민간단체간의 접촉과

대화를 적극 권장하여 교착상태에 있는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57

17. 이산가족문제 해결에 대해 남북한의 기본입장은 어떻게 다른가?/60
18. 북한으로 가고자 하는 학생, 종교인 등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체제를 선전하는 효과가 있지 않은가? 그것이 통일로 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가?/62
19.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남북한 상호사찰 조항과 핵안전조치협정상의 IAEA 사찰 조항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64
20. NPT란 무엇이며, 이는 결국 기존 핵보유국만이 핵무기를 갖겠다는 강대국의 논리에서 나온 불평등조약이 아닌가?/67
21.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성격과 역할은 무엇인가?/70
22.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 사이에 체결된 경수로 공급협정의 구체적 내용과 그 의의는 무엇인가?/72
23. 대북 경수로 건설지원과 관련하여 한국, 북한, 미국, 일본 등 관련국의 기본입장 및 쟁점사항은 무엇인가?/75
24. 북한에 제공될 ‘한국형 경수로’란 무엇이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78
25. 대북 경수로 건설지원사업이 공급협정의 타결로 본격화되

고 있는데 우리가 강조해 온 ‘중심적 역할’은 무엇을 의미하며 건설비용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가?/ 80

26. 중·러와 수교한 우리가 북한의 대미·일 수교를 남북관계 진전과 연계하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의견은?/ 82
27. 4자회담과 다자회담(남북한·미·일·중·러·유엔)간의 장·단 점은?/ 84
28. ‘4자회담’의 제의배경은 무엇이며, 우리 입장에서 본 이해 특실은 어떠한가?/ 86
29. 북한의 식량난을 완화하기 위한 국내외 지원 현황과 우리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88

III. 교류협력

30. 남북한간에 물품을 반출·반입할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93
31. 남북간 물자교역시 물품의 수송·통관 및 대금결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95
32. 남북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이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97
33. 남북교역으로 손실을 입었을 때 이에 대한 보상제도가 있는가?/ 99

34.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남북한의 입장과 우리 정부의 경험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101
35. 남북 경제교류협력은 현재의 북한체제가 공고화되도록 돕는 것이 아닌가?/ 103
36. 남북협력기금의 적립 및 운용현황은 어떠한가?/ 105
37. 남북간 텔레비전방송 등 언론·출판분야의 교류협력 방안 및 전망은 어떠한가?/ 107
38. 환경보호분야에서의 남북 교류협력방안은 무엇인가?/ 109

IV. 통일환경

39. 한반도 통일에 대한 미·일·중·러의 기본입장은 무엇인가?/ 113
40. 탈냉전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의 특징은 무엇이며 평화정착의 가능성은 어떠한가?/ 116
41.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활동의 실질적 진전과 두만강지역개발계획(TRADP) 등 아·태지역에서의 다자간 경제협력이 동북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118
42. 중국과 일본의 군사대국화 추세가 동북아 정세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121
43. 북한이 미·일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관계개선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남북관계 및 주변 정세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124

V. 북한실상

44. 북한의 권력구조 내에서 ‘수령’의 위치는 어떤 것인가?/129
45. 북한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핵심권력기관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131
46. 북한이 말하는 소위 ‘우리식 사회주의’의 특징과 문제점은 무엇인가?/134
47. 동구사회주의권 및 소련 붕괴 이후 북한의 통치이데올로기 변용의 배경과 내용은 무엇인가?/137
48. 김일성 사망 이후 김정일의 통치이념은 무엇이며, 그의 리더십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가?/141
49. 북한의 공무원 채용방법과 대우는 어떠한가?/143
50. 남북한 행정구획을 비교하면 어떠한가?/145
51. 현재 북한에서 행정관료 등의 전문기술관료에 비해서 군부의 입김이 더 세다는 데 그 실상은 어떠한가?/147
52.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와 교화소의 실태는?/149
53. 북한에도 재판제도가 있는가? 있다면 그 절차는?/151
54. 생산수단의 국가 및 협동적 소유를 기본원칙으로 하는 북한에서 개인소유가 인정되는 재산의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153
55. 북한의 화폐금융제도는 어떠하며 화폐는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가?/155

56. 북한의 협동농장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결산분배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157
57. 북한의 농업관리에서 분조관리제 등 여러 가지 관리운영 제도가 있는데 그것들이 갖는 의미는?/ 160
58. 북한이 식량난을 겪고 있는 근본원인은 무엇이며 향후 식량문제의 해결전망은 어떠한가?/ 162
59. 북한의 경제가 7년 연속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제난의 근본원인은 무엇이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북한의 경제정책은 무엇인가?/ 165
60. 북한의 경제개방과 관련 외자유치를 위한 조치는 어떤 것이 있으며 앞으로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 되리라고 보는가?/ 167
61. 북한이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설치하여 외국자본을 유치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북한의 투자유치 실적 및 전망은 어떠한가?/ 169
62. 북한은 대외무역 부진으로 외화난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북한의 대외 무역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무역제일주의’를 관철하기 위한 정책은 무엇인가?/ 171
63. 북한의 ‘농민시장’이란 어떤 것이며 배급체제인 북한에서 시장의 등장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173
64. 북한의 암시장 등 비공식 경제의 실태는?/ 175
65. 북한의 노동당 당원(간부 및 일반당원)과 일반주민들의 생활수준을 비교하면 어떠한가?/ 177

66. 북한주민들의 관혼상제 실태는 어떠한가?/ 179
67. 북한 젊은이들의 결혼관은 어떠한가?/ 181
68. 북한 주민들의 여가생활의 형태와 실상은 어떠한가?/ 183
69. 북한의 보건의료정책의 실상은 어떠한가?/ 185
70. 남녀평등권이 보장된다는 북한에서 여성들이 가정과 사회에서 누리는 지위와 역할은 어떠한가?/ 187
71. 북한 농촌자녀들의 도시진출은 가능한가? 농촌의 부모를 도시로 이주, 부양이 가능한가?/ 190
72. 최근 북한 주민들의 사회일탈행위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원인과 실태는 어떠한가?/ 192
73. 최근 북한 주민들 사이에 자본주의적 가치관이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며,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가 북한체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194
74. 자본주의적 가치관이 확산되면서 북한 주민들의 직업관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196
75. 북한 청소년문화에 서구식 문화가 유입된 실태와 이에 대한 북한당국의 대책은 어떠한가?/ 198
76. 북한 주민들이 남한의 대중가요를 부르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의 대중문화가 북한에 유입되는 경로와 실태는 어떠한가?/ 200
77. 북한당국과 북한주민들의 남한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202

78. 북한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할 때 선발기준은 무엇이며, 학생들은 어떤 학과를 선호하는가?/ 204
79. 북한 학생들의 정규학과 이외의 활동은 어떠한가?/ 206
80. 북한의 교원 양성제도 및 교원에 대한 처우는 어떠한가?/ 208
81. 북한의 특수교육 및 외국어교육 실태는 어떠한가?/ 210
82. 남북한 언어이질화 실태와 극복방안은 무엇인가?/ 212
83. 북한의 언론실태와 그 기능은 무엇인가?/ 214
84. 북한의 반종교정책은 과연 변하고 있으며, 진정한 의미의 신앙의 자유는 허용되고 있는가?/ 217
85. 북한 주민들의 종교생활 실태는 어떠하며, 북한 내에 지하 종교는 존재하고 있는가?/ 219
86. 북한의 문학과 예술의 특징은?/ 222
87. 북한의 대중·러 군사동맹관계의 현황과 변화전망은 어떠한가?/ 224
88. 김일성 사후 북한에서 군의 위상과 역할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226
89. 북한의 전쟁 수행능력은 어느 정도인가?/ 229
90. 북한의 준군사조직의 종류와 규모는 어떠한가?/ 231
91. 남한에서 국방비가 더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북한 군사력 비교에서 아직도 남한이 북한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233

92. 북한체제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는 무엇이며, 붕괴가능성과 그 생존전략은 무엇인가?/ 235
93. 김정일 집권시 북한의 대내외 정책변화 전망은 어떠한가?/ 238

VI. 북한의 대남전략

94. 북한에서 대남전략을 담당하는 기구는 어떤 것이 있으며 또한 주요임무는?/ 243
95. 북한이 남한을 배제하고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은 무엇인가?/ 246
96. 북한이 한국 배제전략을 고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249
97. 북한이 주장하는 ‘민족대단결 10대강령’의 내용은 무엇이며, 이를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251

VII. 통일대비

98. 북한체제가 갑자기 붕괴될 경우 우리의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255
99. 통일과정에서 군사문제 협상이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의 하나로 여겨지는데 우리의 협상대책은 무엇인가?/ 257

100. 통일대비 차원에서 앞으로의 통일교육은 어떻게 전개되어야 하는가?/ 260
101. 통일비용이란 무엇이며,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이고 조달방안은 무엇인가?/ 264
102. 최근에 접증하고 있는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은?/ 267

I. 통일정책 및 방안

1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에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있는데 대북정책 추진의 기본방향 및 원칙은 무엇인가?

대북정책의 일관성 문제는 통일방안과 사안별 수시정책의 일관성 문제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북한의 통일방안이 1960년대 이래 외견상 연방제 방안으로 일관성을 유지해 오고 있는 듯이 보이는 데 반하여, 우리의 통일방안은 건국 이래 유엔 감시 하에 북한만의 총선방안, 유엔 감시 하에 남북한 자유총선방안, 그리고 1972년 7·4남북공동성명 이후 1982년의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3단계 3기조 통일방안,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 등으로 외견상 모습을 달리하였고, 또 사안별 수시정책에서도 가령 경제인, 종교인 등 민간차원의 남북간 교류·협력의 경우 당시의 정책상황에 따라 신축성을 보여 왔던 것이 사실이다.

물론 북한의 경우와는 달리 선거에 의하여 정권이 정기적으로 교체되는 우리의 경우 당시의 정책환경의 변화에 따라 통일방안이나 수시정책의 내용이 외견상 모습을 달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기본방향이나 원칙상의 일관성이 무너지지는 않았다. 우리나라의 통일방안이나 수시정책은 어느 경우에도 북한 공산독재체제와 우리의 자유민주체제간의 대결이란 기본여건의 범주 하에서 가능한

한 가장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방안과 정책이 강구되었기 때문이다.

우리 통일방안의 기본방향은 우선 우리 민족의 발전과 번영을 보장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체제 하의 통일실현이란 통일조국의 당위적 미래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하나의 민족통일국가의 완성을 일관성 있게 추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남북한간의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그대로 둔 상태로 미완성 통일의 연방(실제로는 국가연합)을 통일이라고 고집하는 북한의 입장과 기본적인 차이를 보이는 점이다. 그리고 남북 주민간에 신뢰가 조성되지 않은 단계에서 일시에 연방제로 통일하여 남북간에 끊임없는 마찰을 잉태하게 될 정치적 통일을 서두르기보다는, 남북 주민간의 사전 교류·협력 관계를 활성화하여 그 동안 이데올로기와 체제의 대립과 갈등으로 파괴된 민족공동체를 복원시키면서, 궁극적으로 하나의 민족국가를 완성시켜 정치적 통일로 접근하려는 점진적·단계적 통일실현 등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통일방안의 기본방향과 더불어 우리 정부는 사안별 수시정책 추진과정에서도 원칙상의 일관성을 견지하고 있는 바, 가령 미국과 북한만의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 대남 적화전략을 위하여 북한이 고집하고 있는 일련의 강탈적 주장을 철저히 봉쇄하고, 또한 대남 통일전선형성 차원에서 강행되고 있는 우리 정부와의 협상배제전략과 우리 정부와 미·일 등 우방과의 이간전략도 철저히 봉쇄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무리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민족의 전

면적 과멸을 자초할 무력수단이 아니라 인내로서 대화를 통하여 언젠가는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키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켜 궁극적으로 민족통일을 반드시 실현시키고 말겠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대북정책에 임하고 있다.

2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통일을 추진하고 있으면서도, 통일정책의 기본철학으로 자유민주주의 구현을 천명하고 있다. 이같은 두 입장은 상호 모순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분단된 조국의 통일 성취를 포기하지 않는 한 폭력이나 무력에 의한 통일이 아닌 평화통일, 다시 말하면 상대방인 북한과 대화와 협상을 통한 통일밖에 다른 대안이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왜냐하면 통일은 그 자체가 적대적 목적이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행복과 발전을 현실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분단의 질곡에서 벗어나 좀더 풍요롭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해 나가기 위한 수단으로 추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통일의 결과가 많은 사람에게 더 큰 고통이나 희생을 강요하거나 지금보다 더 불행한 삶을 가져오는 것이라면 굳이 통일을 추구해 나갈 필요가 없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통일된 이후에 민족 전체의 삶이 더욱 복되고 풍요로운 것이 되려면 앞으로 건설해 나갈 통일국가의 정치체제는 적어도 다음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것이어야 한다. 그 하나는 민족 구성원 모두가 동격의 지위를 인정받고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며, 동등한 참여의 기회가 주어지는 민주질서가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민주체제를 존중하는 모든 사상이 허용되는 다원주의 정치체제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국가로서 갖추어야 할 양보할 수 없는 최소한의 기본 조건으로서 위의 두 가지를 능히 보장해 줄 수 있는 현존하는 지도이념으로는 자유민주주의가 있을 뿐이다. 정치이념으로서 자유민주주의가 비록 최고·최선의 것이라 할 수는 없을지라도 오늘날 전체 인류가 보편적으로 추구해 나가는 최고의 가치인 자유와 민주, 복지를 현실로 구현해 나가는 데 있어 지금까지 인류가 발견해 온 어느 제도나 이념보다도 우월한 것임이 이미 역사로서 입증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의 ‘자유’ 대신 ‘평등’의 이념을 앞세우고, ‘민주’ 대신 ‘계급의 독재’를 내세워 자유민주주의를 대체해보려 했던 마르크스·레닌주의의 혁명적 시도는 1917년 러시아에서 ‘10월 혁명’을 최초로 성공시킨 이래 70여년 동안의 실험을 거친 끝에 비효율성이 완전히 드러나고 말았다. 1990년대에 접어들어 일기 시작한 구소련을 비롯한 동구 공산권의 몰락은 인간이 좀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체제로서 사회주의가 대단히 부적합한 것이었음을 충분히 입증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공산권의 대붕괴라는 역사적 교훈 속에서 세계 모든 국가가 이념적 대결에서 벗어나 자유화, 민주화, 복지화를 지향해 나가는 국제정세의 큰 흐름에 부응해 나가기 위해 입안된 우리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통일추진의 목표와 기본철학으로 그 우월성이 입증된 자유민주주의의 구현을 천명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현대국가에서 인간 중심의 자유민주주의의 추구는 세계사적 대세요, 역사발전의 진행방향에 부합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비

록 북한과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통일을 기본노선으로 하고 있으나, 민족 전체의 장래와 운명을 좌우하는 통일국가의 지도이념과 체제의 선택까지를 정치적 협상과 타협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는 확고한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다.

3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통일정책의 기초는 남북한 상호체제의 인정을 전제하고 있다. 이같은 실정법과 통일정책 기초간의 모순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협하는 내외의 도전 세력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서 그 법적 성격은 체제수호를 위한 안보관련 형사법임과 동시에 현행 형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형사 특별법으로 존재하는 것으로서 그 운용은 극히 제한적이고 방어적인 성격을 띤다.

현행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무조건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자행한 각종 행위가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들과 결부될 때 비로소 범죄 구성 요건상의 ‘반국가단체’로 간주되어 적대집단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만일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체제와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대남전략을 명백히 포기하는 경우 이 법이 규율하는 적대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

또 국가보안법은 주로 북한의 이중적 대남전략에 대응하는 방어적 목적의 형사법일 뿐 북한체제를 전복하거나 위협하려는 목적을 가진 적극적이고 공격적 법률이 아니므로 북한을 사실상의 정치적 실체로 인정하고 있는 우리의 통일정책 기초나 남북한 기본합의서 제1조의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정신과 배치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상대방의 체제를 하나의 정치적 실체로 사실상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것과 실정법상 우리 체제의 안전과 생존을 위협하는 적대행위를 용납하지 않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4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무엇인가?

오늘날 한반도의 장래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무엇보다도 북한의 변화에 관한 문제일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우리는 대체로 변화불가피론에 주목한다. 냉전 이후의 새로운 세계질서 구축이라는 흐름에서 본다면 북한의 변화는 불가피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문제는 북한의 변화가 바람직스러운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있다. 물론 우리는 북한과의 교류와 협력으로 북한의 개방을 유도함으로써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통일의 문턱에 다가서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최근의 정세변화는 우리가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붕괴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여기서 우리는 대북정책 수립을 위해 북한지도부의 상황인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단계에서 북한지도부의 최대 당면과제는 일단 정치보다는 경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들도 통치를 이데올로기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은 이데올로기를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밥을 먹고 산다. 1997년 북한 신년공동사설에 나타난 "먹는 문제를 결정적으로 풀자"는 주장에서 보듯이 '먹는 문제'는 북한이 처한 위기의 결정적 변수임을 알 수 있다. 그러기에 그들도 경제적 위기의 극복과 발전을 위해서는 개방과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인식하

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방의 물결이 필연적으로 몰고 올 외부세계의 영향과 그로 인한 북한체제의 붕괴위험성에 북한 지도부의 고민이 있다. 공여지책으로 북한은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까지만 개방하고자 할 것이다.

북한은 이미 김일성 생존 당시부터 어느 정도 점진적인 변화를 모색하여 왔다. 그러나 김일성의 사망으로 북한은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고 권력승계, 식량난 등의 내부요인 때문에 별다른 정책변화가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 그것은 개방 자체가 체제위협 요인이라고 우려하는 시각이 북한지도부 내부에서 비중있게 작용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 점은 1995년 10월 8일자 노동신문에서 ‘수령의 전사’라는 제목으로 정론을 통해 사회주의체제의 붕괴가 “노동계급의 수령이 서거한 이후…그의 권위를 혈통하는 안팎의 원수들의 공격과 배신으로 시작된다”고 지적한 것이나 1996년 5월 10일 노동신문 기명기사에서 “겉으로는 수령을 받드는 척하고 혁명과업에 충실한 척하면서 속으로 딴 꿈을 꾸며 뒤에서 딴 장난을 하는 것은 야심가 음모가들의 비열한 본색이다.··이들은 수령을 혈통고 혁명을 말아먹었다”고 지적한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렇다면, 북한이 개방과 변화에 자신감을 갖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고려해야 할 것은 최악의 상황을 초래할지도 모를 북한의 붕괴를 전제로 대북정책을 수립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북한체제의 돌발적 붕괴는 우리가 상정하는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며, 미국의 동북아 안보구상의 기본틀에 비추어 보아도 결코 바람직스러

운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의 대북한전략은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북한이 국제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급격한 충격을 통해 폭발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고 이른바 ‘연착륙’(소프트 랜딩)이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요컨대, 북한의 갑작스런 붕괴는 막대한 통일 비용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보다도 북한의 개방을 통해 점진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연착륙’을 위해서 북한의 모든 요구를 무조건 수용할 수 없음도 분명하다.

이렇게 볼 때, 평화정착을 기조로 하는 현실적 대북정책수단은 북한의 돌발적 붕괴를 막는 동시에 남북경협을 확대, 신뢰회복과 시장지향적 경제변화의 필요성을 인식시킴으로써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유도하는 것이 될 것이다.

5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핵심내용과 그 특징은 무엇인가?

1994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천명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통일의 기본철학 : 인간 중심의 자유민주주의 이념 구현
- ② 통일의 3대원칙 : 자유·평화·민주
- ③ 통일의 과정 : 3단계의 점진적·단계적 통일
 - 제1단계 : 화해·협력(적대·대립관계→화해·협력관계)
 - 제2단계 : 남북연합(공존공영·평화정착→민족공동체 형성)
 - 제3단계 : 통일국가완성(1민족 1국가)
- ④ 통일의 미래상 : 자유·복지·인간존엄성이 보장되는 선진 민주국가

이와 같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통일 민족사를 능동적으로 끌어갈 국민적 의지와 자신감을 토대로 그 동안 우리 정부가 꾸준히 추구해 온 통일정책 구도를 명확히 하면서 앞으로의 대북정책 추진방향을 분명히 제시한 데 그 의의가 있다.

다음으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 통일철학·통일원칙·통일의 미래상을 분명히 제시하였다.
- ② 민족공동체 건설을 통해 통일국가완성으로 가는 단계적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였다.
- ③ 통일의 주체는 민족구성원 모두임을 분명히 하였다.
- ④ 점진적·단계적 통일이 기본입장임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분단종식을 위한 우리의 주도적 역할과 의지를 표명한 것이며, 나아가 남북관계의 새 국면에 부응하는 종합적 통일정책구상을 천명한 것이다. 그리고 통일정책의 패러다임으로 ‘민족공동체’를 강조하면서 가공적인 국가체제의 조립보다 ‘더불어 살아가는 민족공동체 건설’에 우선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6

통일의 접근시각으로서 '민족공동체'란 무엇이며, 정치통일에 앞서 민족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다수의 인간들이 혈연이나 지연 등 상호간의 공통성을 기반으로 경제적 생활 등 일정한 목표를 지향하여 결집된 집단을 사회학적 개념으로 공동체라고 일반적으로 호칭한다. 예를 든다면 혈연을 기반으로 가족, 씨족, 민족공동체를, 지연을 기반으로 촌락, 부락, 국가공동체를 생각해 볼 수 있으나 그외에도 구성원간의 상호공통성과 지향하는 목적에 따라 종교, 문화, 예술 등 각 영역에서 수많은 공동체를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간에는 상호간의 동질성을 바탕으로 강력한 정서적 일체감이 형성되어 심리적 안정이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민족공동체는 오랫동안 민족사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민족의 동질성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로서 단일 민족공동체가 원칙이나 중국이나 미국 등 광역국가에서 볼 수 있듯이 여러 민족이 역사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다민족공동체도 물론 가능하다. 그리고 민족공동체는 민족경제공동체, 민족사회문화공동체 그리고 민족정치공동체 등의 구성요소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우리 민족은 실로 오랜 역사를 자랑하여 통일신라 이래만 따져도 1300년 가까운 통일 민족사를 면면히 이어 오면서 찬란한 민족문화를 꽃피워 온 자랑스러운 민족이다. 그러나 불

행하게도 최근세에 이르러 국제정세에 어두워 서구선진문물을 재빨리 흡수하지 못한 잘못으로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되었으며, 해방 후는 민족의 의사에 반하여 국제정치의 제물이 되어 분단을 강요당한 이래 어언 반세기가 넘어가고 있다. 그동안 남북한간에는 이데올로기 대립을 바탕으로 완전히 이질적인 체제가 정착되면서 이제는 단일민족임이 무색할 정도로 민족적 이질화가 계속 심화되어가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그런데 남북간의 이질화가 계속 심화되어진 것은 무엇보다도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라는 대립된 체제를 각각 채택하고 있는 정치적 요인이 크다. 이와 같이 이질화된 우리 민족의 통일은 이제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정착된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체제를 통일조국의 당위적 미래상으로 설정하고 남북이 하나가 되어 경제적, 사회·문화적 그리고 정치적 민족공동체를 형성시키는 것이다.

이같은 민족공동체의 형성은 남북의 외형적·제도적 통일, 즉 정치적 통일은 물론 내면적·정서적 통합, 즉 사회·문화적 통합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그런데 북한이 이른바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수하겠다는 한반도의 분단 상황에서 하루아침에 자유민주주의체제로 정치적 통일을 이룬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혹 기적적으로 정치적 통일을 이루었다고 하여도 사회·문화적 통합이 이루어져 남북한간의 고질적 적대의식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혼란만 지속될 것이다. 반면, 비록 정치적 통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오랜 민족문화를 바탕으로 남북한간의 사회·문

화적 교류협력은 가능한 것이며, 또 상호간의 필요성에 따라 경제적 교류협력도 물론 가능한 것이다. 즉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공동체 형성을 바탕으로 정치공동체로 이어지는 것이 통일로 가는 순리이다. 그러므로 화해협력단계, 남북연합단계를 거쳐 하나의 통일국가를 건설하려는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도 이같은 당연한 통일의 순리를 반영한 것이다.

7

북한의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수용하지 못하는가?

우리가 북한측의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수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적으로 말해서 그 내용 자체와 시대적 상황에 따른 변용과정에서 드러난 논리적 허구성과 전술적 기만성 그리고 비현실성 때문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첫째, 상대방 체제를 부정하는 선결조건을 제시해 놓고 이 조건이 성취돼야 비로소 연방제를 실시할 수 있다고 하면서,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그대로 두고 용인하는 바탕에서 연방제를 실시하자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자가당착이며, 더욱이 대화 상대방의 체제를 부정하는 것은 평화적 통일방안이라 볼 수 없다.

둘째, 통일된 뒤에 교류·협력하고 민족대단결을 도모하겠다는 ‘10대 시정방침’은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실현시켜야 할 남북한 사회개방과 교류·협력을 통한 민족공동체 형성을 거부하는 논리에 불과한 것이다.

셋째, 북한은 연방의 개념을 대외적으로는 공존지향적인 국가연합(Confederation)을 쓰면서, ‘10대시정방침’ 중에 민족연합군 창설이나 대외정책의 일원화, 즉 대외주권의 연방정부독점 등 전형적인 연방제(Federation)인 것처럼 보이게 하고 있다. 용어의 이중적 사용을 통하여 혼동을 야기하는 표리부동

의 기만일 뿐더러, 더구나 연방제에 필수적인 통일된 연방헌법을 부정하는 것은 그 자체가 허구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넷째, 선결조건을 문제삼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상과 제도가 서로 다른 체제간에 연방을 형성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으며, 역사적 선풍도 찾아볼 수 없다.

다섯째, 같은 민족간에 굳이 연방제를 실시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을 저들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다. 즉 북한의 '정치사전'에 보면, 연방제는 "문화, 풍습, 언어가 다른 이민족간에 실시하는 국가구조 형태의 하나"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들 스스로가 남북간에 연방제를 실시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란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북한은 '60년대 초 '과도적 통일형태'로서 연방제를 처음 주장한('60. 8. 14) 이래, '70년대 초('73. 6. 23)에는 '고려'라는 국호를 첨가하여 '고려연방제'를, '80년대 초('80. 10. 10)에는 '민주'라는 용어를 첨가하여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제시하였다. 여기서는 과거와 달리 '통일의 최종형태'라고 입장을 바꾸었다. 그러더니 1991년 신년사에서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에 기초한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등, 시대적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어 왔다.

또한 1993년 4월의 제9기 5차 최고인민회의에서 통일전선전술에 입각한 소위 '전민족 대단결 10대강령'과 '4대 전제조건'을 제시하였다. 여기서는 북한의 대남통일 공세가 점차 수세적·방어적으로 바뀌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북한이 이렇게 꾸준히 연방제를 주장하는 이유는, 연방제 개념이 내포하고 있는 평화공존성을 부각하여 내외 여론을

현혹시키고, 우리 사회의 감상적 통일논의를 부추기고, 우리의 국가안보태세를 악화시켜 선 남조선혁명, 후 남쪽의 연(용)공정권과 합작(연방, 연합, 연립)하여 적화통일을 성취하겠다는 기본노선 때문이다.

그러므로 북한의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은 연방제도 아니고 통일방안도 아니다. 대남적화전락에 입각한 위장된 평화전술에 불과한 것이라 단정하는 것이며, 여기에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근거가 있는 것이다.

8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통일의 목표 또는 통일조국의 미래상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

통일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 먼저 분명히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통일을 추구해 나가하고자 하는가? 다시 말하면, 지향해 나갈 통일의 목표와 미래상을 어떤 것으로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를 이루는 것이다. 만일 이루고자 하는 통일의 목표나 미래상에 대한 국민 각자의 생각이 각기 갈라져 있거나 상충되는 경우, 통일을 추진해 나가는 주체들의 통일 노력이 하나로 결집되지 못하고 그 전개방향이 상반되거나 분산되어 효과적인 통일정책의 추진이 어렵게 된다.

그런데 통일목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내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시점에서 통일에 거는 국민 각자의 기대와 견해가 너무나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일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기 위한 수단으로 추구해 나가는 것임을 전제할 때 국민 절대 다수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통일의 미래상은 대략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그려질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우리 모두가 이룩해 나가야 하는 통일국가는 7천만 민족 구성원 모두에게 자유와 복지,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이 함께 보장되는 하나의 민족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

리가 민족의 분단을 거부하고 기필코 통일을 이룩하겠다고 다짐하는 이유는 남북한에 흩어져 살고 있는 민족 구성원 모두가 하나로 다시 모여 좀더 자유롭고 풍요로운 가운데 오순도순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이 땅에 건설해야 한다는 대의명분 때문이다.

따라서 아무리 통일이 시급하고 절실한 과제라 할지라도 그 결과가 민족구성원 전체에게 좀더 나은 삶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특정한 계급이나 계층에만 이롭고 좋은 것인 반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다시 말해 전체를 위한다는 미명 하에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본적 권리와 자유가 유린되고, 개인적 복지가 희생되는 어떤 정치이념이나 제도도 통일국가의 그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둘째, 우리가 건설해 나가려는 통일국가의 궁극적 형태는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는 민족 구성원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울타리 속에서 함께 공존·공영해 나갈 수 있는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의 완전한 독립국가이다.

우리 민족은 타의에 의하여 강요된 지난 반세기 동안의 분단사를 제외하고는 1300여년 동안 민족을 단위로 하나의 생활권과 체제 아래 살아온 특별한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신라가 3국을 통일한 이래 오늘에 이르는 유구한 역사를 통해 수많은 외침과 환난 속에서도 민족적 단일성을 유지해 왔다. 이러한 남다른 역사적 경험에서 생성된 민족의 공통된 정서에 비추어 보면 사실상 두개의 국가가 병존하는 것을 의미하는 연방제나 국가연합방식의 통일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같은 민족이 하나로 통합된 이념과 제도 하에서 함께 살아갈 때 일층 역동적인 발전을 기할 수 있어 민족 전체의 복지와 자존을 드높여 나갈 수 있으며, 인류 공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1990년대에 접어들어 탈냉전과 함께 새로운 국제적 조류의 하나로 등장한 ‘신민족주의’의 추세에서 시사되는 생생한 교훈이기도 하다.

9

남북관계 및 통일환경의 변화를 감안할 때 통일에 대한 전망과 시기는 언제인가?

한반도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제적인 여건과 대외적 통일환경의 성숙 둘째, 남북관계의 변화와 대내적 통일환경의 성숙, 셋째, 통일주도능력과 범국민적 통일외지의 결집이라는 ‘3개 조건’이 고루 성숙되어야 한다.

우선 국제적인 여건은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소련의 몰락으로 인한 탈냉전시대가 전개되면서 예멘·독일이 통일을 실현함으로써 우리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대외적 통일환경은 우리의 북방정책 성공으로 러시아·중국과 수교함으로써 주변국가의 한반도정책에 변화를 가져왔다.

다음으로 남북관계의 변화와 대내적 통일환경은 ‘남북한 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채택으로 통일실현의 기반을 마련하는 듯 하였으나, 북한이 합의된 내용을 실천하지 않음으로써 별다른 진전이 없게 되었다. 한편 북한의 핵문제가 중대한 장애물이 되었고, 돌연한 김일성의 사망 이후 남북관계는 경색국면으로 치달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4자회담’을 제의해 놓았다. 북한은 평화정착을 위한 이 회담에 나와야 한다. 그리하여 경제협력 및 교류를 증진하여 대내적 통일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끝으로 우리의 통일주도능력과 통일의지의 성숙은 민주발전·경제번영·사회안정의 ‘통일3대 원동력’을 탄탄히 다지는 일이 우선되어야 하고, 범국민적인 통일의지를 확산시켜 통일 주도역량을 결집시켜야 한다.

통일전망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는 북한이 아직은 ‘우리식 사회주의’를 내세워 김정일체제 유지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김일성 사망과 세계사의 흐름, 국제정세의 변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개혁·개방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으리란 것이 일반적이다.

대통령자문기관인 21세기위원회의 통일전망을 참고로 소개하면 1995~2000년에 공존과 사회·경제통합단계, 2005~2010년에 정치통합단계, 2020년에 완전 통일단계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10

북한은 공산주의 사상에 바탕을 둔 주체사상이 있는데, 우리에게서 정신적 지주가 될 사상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

북한의 1992년 개정헌법 제3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규정된 것은 주체사상이 북한체제의 이데올로기적 기초임을 말해 준다. 그렇다면, 이와 비교하여 대한민국의 이데올로기적 기초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자유민주주의이다. 그 점에서, 본 문항에서 우리의 정신적 지주가 될 사상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가 자유민주주의라는 점도 분명하다. 우리 사회의 이념적 토대가 없다고 보는 견해는 적절하지 못하다. 우리 헌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듯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國是로 하는 민주공화국이다. 자유민주주의는 정치적 다원성과 개인의 자유 및 권리의 보장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기에 자유민주주의는 자유, 복지, 인간존엄성이 보장되는 선진민주국가 건설을 목표로 삼는 통일철학으로서도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통일철학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는 민족공동체 건설의 기본원리로서 민족구성원 각자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고 시민들의 동일한 존엄성에 기초하여 통일국가의 시민들을 대우함으로

써 일체감을 회복시키며 남과 북의 하나됨을 위해 관용의 가치를 중시하는 것 등이 핵심요소로 되어 있다. 건국 이래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시행착오와 시련을 경험하면서 오늘의 발전에 이르렀다. 그 점에서 자유민주주의는 우리의 정치적, 역사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11

남북관계 개선에 주한미군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일부 견해가 있는데, 주한미군의 존속이 과연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언제까지 계속되겠는가?

현재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휴전협정조인 직후인 1953년 10월 한·미 양국간에 체결된 상호방위조약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존재이유 자체가 북한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 미군의 역할은 북한의 재남침 억지, 동북아세력균형의 유지 등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철수문제가 거론되는 것은 북한이 전한반도 공산화전략 수행에 장애가 된다는 인식 하에 철수를 주장하면서 “민족의 자주성”을 특히 부각시키고 있어 6·25 동란의 역사적 배경과 북한의 대남위협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럴듯하게 들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1980년대 후반 공산권의 몰락으로 탈냉전이 시작되면서 냉전시대 미·소를 양축으로 한 ‘대결·대립의 긴장관계’가 ‘화해·협력의 관계’로 바뀌게 됨에 따라 더욱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거론되고 있으나 불행하게도 동북아 특히 남북한관계는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의 고수로 말미암아 아직도 ‘대결·대립의 긴장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요컨대 남북한관계는 탈냉전시대를 맞이해서도 냉전과 탈냉전의 2중구조가 특징인 바, 이는 현실의 안보가 최우선 과제로 통일의 전제가 됨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남북한관계의 특징 하에서 북한의 경제력은 우리의 1/20 수준이지만 군사력만큼은 세계 5위로 부상, 실질적인 대남위협이 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남북한간의 군사적 불균형, 상호간의 적대감과 불신 그리고 군사력집중, 북한의 남침가능성 등이 잔존해 있는 엄연한 현실 속에서 주한미군의 주둔은 남북한 관계개선의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북한의 대남도발 억지력으로 작용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동북아 전체의 세력균형이라는 보다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지정학적 균형유지 차원에 연결시켜 넓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물론 장기적이고 원칙적인 견지에서 우리의 방위는 우리 스스로가 이루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북한의 남침에 대한 우리의 독자적인 역지가 가능하거나, 북한이 대남적화 혁명전략을 포기했다는 확증이 있는 연후에 철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12

북한이 대미, 대일 협상시 보여주는 당당한 태도에 비하여 우리의 대미 교섭 자세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비쳐보이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대외 교섭이나 협상면에서 특정 국가가 견지하는 기본 자세나 태도를 일의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스러운 일이다. 당시의 제반 정황적 여건이나 환경 요소, 국제적 위상, 성취하고자 하는 국가적 목표나 이익의 성격, 종래 견지해 왔던 외교정책노선 등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특정 사안에 대한 외교적 입장이나 협상자세는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북한측이 미국과의 핵협상이나 대일 수교 교섭 등에서 보여 왔던 바와 같이 일반적인 국제적 규범이나 관례를 도외시한 채 체면불구의 억지 주장만을 일삼고, ‘벼랑끝 협상전술’을 구사하여 자신의 일방적 이익만을 관철하려 했던 협상행태를 마치 대단히 주체적이며 당당한 입장의 표현으로 잘못 평가하는 우리 사회 일부의 견해는 적지 않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우선 북한이 대외교섭에서 상투적으로 보여 온 것처럼 겉으로 보기에 강경하고 완고하기만한 자세는 국내 여론이나 정치적 상황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 유일 독재체제 하의 특이한 폐쇄적 대외노선에 바탕하고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국제사회에 처하고 있는 그들의 특수한 입장을 배경

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90년대에 접어 들어 동서 냉전체제가 붕괴되면서 중·소를 비롯한 사회주의권 내의 우방마저 대부분 상실하고 고립무원의 상태로 남게 된 북한의 경우 대외관계에서 이제 잃을 것이 거의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우리의 일상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이 잃을래야 잃을 것이 없는 막다른 입장에 처하고 보면 상대방의 입장이나 체면을 돌볼 여지가 없게 된다.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이와 마찬가지로 형편에 처하여 막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 북한의 대외관계가 아닌가 한다.

이와 반대로 우리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이기 때문에 대미 대일 관계를 비롯한 대외정책의 전개는 국내 여론 동향에 일차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는 전통적으로 대외 개방정책을 지향해 온 국제사회의 비중 있는 성원국의 하나로서 대외관계에서 남다른 신뢰와 체모를 지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더욱이 대북정책의 전개에 있어 이렇다 할 강력한 협상카드를 가지고 있지 못한 우리의 현 입장에 비추어 볼 때, 남북한이 참여하게 관련되어 있는 국제적 현안의 해결에 있어서는 아직도 한반도문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주변의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협조와 공조체제의 유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특정 외교 사안에서 미국, 일본 등 관계 우방국을 비롯한 주변국들과 가급적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제적 틀 속에서 공동의 이익을 증진해 나가려

는(이것은 흔히 ‘국제적 공조’ 노력이라 표현되고 있다) 우리 정부의 ‘현실적인 기본 입장’을 외세 의존적이거나 굴욕적인 것으로 매도할 수는 없는 일이다.

13

독일이 통일 이후 겪은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었으며, 이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인가?

독일이 통일 후 겪은 심각한 문제들은 첫째, 정치적 과거청산 문제이다. 이것은 과거 동독 공산정권에 의한 피해자와 가해자에 관한 문제인데, 피해자 10여만명의 복권·보상을 위해 신청을 접수하여 조사·처리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공산당과 정권기관 등의 권력남용자로 분류된 6천여명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원칙으로 처리하고 있다.

둘째, 동독지역에서의 행정·사법체제의 구축문제를 들 수 있다. 먼저 행정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통일독일의 행정체계에 적합한 지방행정 인력의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동독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자격심사와 재교육을 거쳐 재임용하거나 일부 서독 공무원들을 파견·전보하여 해결하였다. 사법분야에 있어서는 동독지역 주민들의 법률적 보호와 사법적 공백현상을 방지하고 새로운 사법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구동독의 사업요원들을 재교육시켜 자격심사를 거쳐 선별 재임용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셋째, 동독지역의 경제를 재건하는 문제였는데, 통일 후 시장경제체제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들의 도산,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낙후와 부족, 신규투자의 미비, 실업자의 속출로 인하여 동독경제는 실로 붕괴상태에 처해 있었다. 통일독일 정부

는 신연방주 경제재건계획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여기에는 막대한 경비가 소요되는데 통일에 필수불가결했던 경비(협정의 통일비용)와 동·서독 주민간의 생활격차 해소를 위한 보조금뿐만 아니라 동독재건을 위한 시설현대화와 신규투자 등에 막대한 비용(광의의 통일경비)이 투입되고 있다.

넷째, 소유권 등 재산권의 처리문제를 들 수 있다. 소련 군정시 점령고권에 의한 토지개혁으로 몰수된 재산권에 대해서는 보상을 원칙으로 하여 처리키로 함으로써 비교적 수월하게 해결해 가고 있으나, 그 후의 동독정부에 의하여 몰수당한 재산권에 대하여는 원소유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원칙으로 함에 따라 200여만건의 반환청구소송이 제기되었다. 이로 인한 소유권의 불확정 때문에 신규투자에 장애를 겪고 있다.

다섯째, 가장 심각한 문제는 히틀러 독재에 이어 계속된 동독정권 하에서 교조적·타율적 생활방식에 길들여진 동독 주민들이 새로운 민주주의제도와 시장경제질서에 쉽게 적응하지 못함으로써 겪는 심리적 갈등문제이다. 재산권의 불확실로 인한 위기감, 실직, 그리고 서독 국민들에 비하여 2등국민이라는 열등감, 사고방식의 괴리 등으로 심하게는 사회심리적 병리현상까지 보인다. 이 문제에 관한 한 아마도 한세대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의견들을 모으고 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문제들이 왜 대두되었을까.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것은 첫째, 동독이 붕괴된 상황에서 동독의 자생력이 회복되지 않은 채 급속하게 통일한 때문이며, 둘째, 서독은 자신들의 경제력을 과신하고, 동독 주민들은 통일

이 곧 풍요로운 생활을 보장한다는 환상을 가지고 안이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며, 셋째, 계속된 교류에도 서독이 동독의 경제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때문이며, 넷째, 통합 후 동독 사회주의체제의 자유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에 수반되는 어려움을 과소평가한 때문이며, 다섯째, 서독정부가 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프로그램을 갖고 있지 못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상대방에 대한 실태파악이 미흡하고 급작스런 통일에 대비한 준비가 불충분할 때, 상황에 떠밀려 통일하게 된다면 그 뒤에 따르는 문제와 혼란은 필연적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통일을 착실한 준비 속에서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하여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즉 통일문제를 현실문제로 인식하고 어느날 갑자기 통일을 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 되었을 때라도 이에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놓아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대비가 미흡한 가운데 통일될 경우라도 통합과정에서 온 국민들이 슬기를 모으고, 통일에 따르는 고통을 분담하려는 의지를 다져야 할 것이다.

14

독일은 통일후 과거 동독지역의 주민들을 위하여 어떠한 통합정책을 실시하였는가?

통일 당시 독일인들은 통일 이후 구 동독지역에 소위 ‘라인강의 기적’에 필적할만한 ‘엘베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으리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통일 직후만 하더라도 서독인들은 스스로의 역량으로 민족분단을 극복해냈다는 자부심과 함께 시장경제의 역동성과 자신들의 축적된 경제력으로 단 몇 년이면 통일 후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다. 구 동독인들은 그 동안 TV를 통해서 보아온 서독인들의 물질적 풍요와 생동감 넘치는 자유를 그들 자신도 곧 누리게 되리라는 잠미빛 환상에 빠져 있었다. 그 당시에는 오직 “독일은 하나다”라는 명제가 지배하고 있었다.

그러나 곧 당면한 실업문제, 재산권문제, 과거청산 문제, 통일비용, 사회심리적 문제 등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문제들 앞에서 양쪽 모두 높은 장벽과 깊은 골을 사이에 둔 커다란 거리감에 빠졌다. 특히 동독주민들의 서독주민들에 대한 열등감과 새로 적응해야 하는 환경 앞에서의 좌절감은 심각하였다.

그러면 통일독일이 독일주민, 특히 동독주민들에 대하여 어떤 통합정책을 펼쳤는가? 어찌 보면 독일정부가 통일 이후 동

독지역에 시행한 모든 정책이 다 주민통합정책의 고리를 이룬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동독지역의 재건을 위한 일련의 조치들, 즉 경제재건을 위한 재정적 지원,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 조치들은 물론이거니와, 과거정권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한 복권 및 보상조치나 사회심리적 안정감을 주기 위한 지도자들의 어루만짐 등이 모두 이에 속한다.

특히 사회심리적 갈등과 불만을 해소하고 국민적 통합을 조속하게 이루려는 지도자들의 노력이 가히 인상적이다. 그 중에서도 바이체커 대통령과 뒤이은 헤어쾅크 대통령 등은 중용에 입각한 포용력 넘치는 설득과 충고와 격려로써 여론분열의 위기 때마다 감동깊은 호소력을 발휘하였다.

내각을 이끄는 골 총리가 통합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분분한 여론의 포화속을 정면 돌파하여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장래에 대한 기대와 자신감을 고취시켰다고 한다면, 바이체커 대통령은 특히 한 단계 높은 조망과 중도적 입장에서 동·서 양쪽의 독일국민들에게 위안과 격려, 그리고 책망과 독려를 함으로써 지도력을 유감없이 보여 주었다.

즉, 동독인들에 대해서는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명예로운 시민혁명을 이룩하고 서독과의 통일이라는 현명한 선택을 하였으며, 사회주의체제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이라는 사상 유례없는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있는데 대하여 찬사를 보내는가 하면, 서독이 누리는 번영과 자유는 3~4년 만에 이룩한 것이 아니라 40년이 넘는 장구한 세월이 걸린 것임을 인식시키고 인내를 요구하였다. 반면 서독인들에 대해서는 동독인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하여 깊은 이해심을 가질 것과 통일과업

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지출과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고 설득하였다.

근 반세기에 걸친 세월 동안 유지돼 온 상이한 체제가 한 체제로 통일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모험이며 가히 전쟁과 다름없음을 인식하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가는 위업의 달성을 위해 상호 이해하고 양보함으로써 국민적 단합을 이룩해야 한다고 역설한 것이다.

현명한 지도자를 만난 독일인들은 아마도 아주 빠르게 그리고 조화롭게 국민적 통합을 성취할 것으로 믿어진다.

II. 남북관계 현안문제

15

북한을 방문하거나 북한주민을 접촉하고자 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현재 우리 내부에서 남북간의 교류협력을 규율하는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남북한 주민이 상대지역을 방문하거나, 서로 접촉하려면 사전에 정부의 승인 등 소정의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물론 앞으로 남북간에 왕래 및 통신 등에 관한 세부합의가 마련되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나 그 때까지는 우리의 법령이 정한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남한주민이 북한지역을 방문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원장관이 발급하는 ‘방문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방문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방문증명서 발급신청서, 신원진술서 및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여기서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증하는 서류라는 것은 북한 당국 또는 권한있는 기관에서 작성한 초청장이나 각서의 원본을 말한다. 앞으로 남북간에 통행에 관한 세부 합의 절차가 마련될 때까지는 방문신청자 스스로 이런 서류를 갖출 수밖에 없다.

다만 재외국민 중 외국에서 영주권을 얻었거나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은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고 해당 공관장에게 신고하고 북한을 방문할 수 있다.

북한지역 방문시 방문기간은 1년 6개월 이내이나 필요한 경우 최초의 방문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남한주민이 북한주민과 접촉하려면 통일원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여기서 접촉이라는 것은 남북한 주민이 직접 면담·회합하거나 또는 통신(전화, 전신, 팩스, 편지) 등을 통하여 상호간 의사를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승인을 얻으려면 북한주민접촉신청서, 신원진술서, 기타 통일원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남북한 주민의 접촉신청은 사전 승인을 받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국제행사에 참가한 사람이 그 행사와 관련하여 북한주민과 접촉하는 경우, 외국에서 우발적으로 북한주민과 접촉하는 경우, 외국에서 가족인 북한주민과 접촉하는 경우, 교역을 위하여 긴급히 북한주민과 접촉하는 경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승인 없이 접촉하는 경우에는 우선 접촉 후 7일 이내에 신고하면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이처럼 우리 법령은 남북한 주민의 상호왕래나 접촉을 적극적인 입장에서 보장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하겠다.

16

대북교섭에 있어 창구일원화보다는 민간단체간의 접촉과 대화를 적극 권장하여 교착상태에 있는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우리 정부는 통일실현에 있어서 남북한 당국간 뿐만 아니라, 각 분야의 민간참여를 통하여 인적·물적 교류와 협력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확고히 하고 있다. 이는 각 분야에 걸친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이 화해와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나아가 민족동질성 회복과 민족 공동번영의 길을 확연히 열어 줄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남북 민간교류 활성화정책의 일환으로 1988년 ‘7·7 선언’을 통해 “남북한간 각 분야의 상호교류를 적극 추진한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한 후,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1990년 8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을 제정하였고, 이 법률과 시행령에서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관하여 통일원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1994년 11월 ‘남북경제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는 ① 남북한간 인적 왕래와 물적 교류협력의 개방, ② 종전까지 통치행위의 차원에서 다루어 오던 남북 교류협력의 법적 보장에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은 그 누구라도 법적 절차

를 밟아 북한주민과 접촉하거나 또는 북한을 방문할 수 있고, 북한과의 교역이나 협력사업을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남북경제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 이유는, 1994년 북·미 제네바 핵협상의 타결로 북한 핵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하고, 대북 경수로 지원 및 북한과 관련국가와의 관계개선 등 한반도 주변상황의 전개에 따라 남북한간 경제협력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진전시켜 나갈 시점에 이르렀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민간차원에서의 남북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남북관계 진전과 궁극적으로는 통일을 향한 민족공동체 형성에 이바지 하도록 하지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보다 효율적이며 바람직한 교류협력을 위한 질서를 구축하는 데 있다. 즉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사업과 이를 위한 접촉과 대화에는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되 법적 절차와 테두리 안에서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침을 ‘창구일원화’라고 한다면, 이것은 민간차원의 접촉과 대화에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다. 양자가 모순관계에 있다는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정부의 창구일원화 방침은 모든 접촉과 대화를 정부가 독점하고 민간차원의 참여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 하라는 것이며, 정부로서는 남북관계 진전과 교착, 북한의 태도와 그들 내부의 사정에 비추어 그때 그때 속도를 조절(조장 또는 억제)할 뿐이다.

더구나 남북간 정치·군사적 대치상태가 아직도 지속되는 상황이어서 어느 개인이나 단체가 북한측과 접촉·대화 또는 교류협력을 자의적으로 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나 사

회적 혼란, 그리고 그로 인한 남북관계의 파행을 예방하는 일은 정부의 책무이며, 이에 대비한 제도와 방침이 ‘참구일원화’라고 보아야 한다. 즉 정부는 교류협력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이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실제적인 교류협력과 이를 위한 접촉과 대화는 각 분야의 민간인들이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예를 보아도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것들은 당국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이루어진 것들이었음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이산가족문제 해결에 대해 남북한의 기본입장은 어떻게 다른가?

우리 정부의 이산가족문제 해결의 기본입장은 다음과 같다.

이산가족문제는 남북간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한 과제이다. 즉 분단고통의 극복과 인간의 기본권인 가족권의 보장을 확보하는 것은 인도주의의 문제로서 더 이상 어떠한 이유로도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특히 이산가족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가족상봉의 실현을 위하여 우리 정부는 그 동안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다. 그러나 북한의 형편상 당장 실현이 어려울 것을 감안하여 차선책으로 우리 정부는 관문점에 ‘이산가족면회소’와 ‘우편물교환소’라도 설치·운영하는 문제와 ‘고령자 고향방문단’을 우선적으로 선발하여 상호 방문을 실시하자는 제의를 해 놓고 있다. 만일 이 문제도 여의치 않으면 제3국을 통한 서신교환 및 가족상봉을 위한 노력과 국제적십자사나 UN 등 국제기구를 통한 이산가족문제의 해결을 위해 상호 노력하자는 제안도 내놓았다. 이러한 우리 정부의 제의는 이미 ‘남북기본합의서’와 ‘교류협력에 관한 부속합의서’에서 쌍방간에 합의된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이산가족문제에 대한 기본입장은 이미 합의

된 내용을 실현할 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산가족 문제를 정치문제와 결부시키면서 “통일만 되면 이산가족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이 소극적인 입장을 고수하려는 이유는 폐쇄적인 북한사회가 이산가족들의 자유왕래로 인하여 북한체제의 유지에 부정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을 크게 우려하는 데 있다.

18

북한으로 가고자 하는 학생·종교인 등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체제를 선전하는 효과가 있지 않은가? 그것이 통일로 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가?

정부는 통일을 실현해 나가는 데 있어서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은 필수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는 민간차원의 다양한 교류협력을 통해 남북간 상호 이해와 인식의 폭을 넓힘으로써 분단의 장기화로 인한 이질화를 해소하고 통일 후의 심리적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대학생이나 종교인의 교류도 이들에게 북한의 실상을 직접 체험하게 하여 북한체제를 올바르게 이해시키는 한편, 건전한 통일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으로 가고자 하는 동기와 목적에 있다. 일부 대학생과 종교인이 통일문제를 직접 협의할 목적으로 자의적으로 북한측과 접촉하거나 북한을 왕래하고자 한다면, 이는 북한의 대남전략 전술에 정치적으로 이용되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통일정책 추진에도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순수한 교류목적과 취지에서 벗어나 단지 통일이나 교류의 명분으로 정치적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북한과 접촉하거나 내왕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정부입장에서도 현실적인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고 대북접촉이나 방북을 허용하는 것은 책임 있는 당국으로서 취

할 태도라고 할 수 없다. 대학생·종교인 등의 방북문제에 대해 과감하게 나가야 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으나, 남북관계에서는 단순히 어떤 방안을 실험해보는 차원에서 처리할 수는 없으며 어디까지나 현실에 바탕을 두어 접근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남북관계의 특수한 현실을 감안하면서 인적 접촉과 왕래를 질서있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남북관계를 파행시킬 우려가 있는 사안은 미리 예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겠다.

정부는 교류의 목적과 동기가 순수한 사안으로서 남북간 화해와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류협력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며, 향후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교류협력 여건이 호전되면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교류의 범위가 점차 확대될 수 있다고 본다.

19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남북한 상호사찰 조항과 핵안전조치협정상의 IAEA 사찰조항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IAEA의 핵안전조치협정은 범세계적인 핵확산금지체제로서 국제적 장치이며, 남북한 상호사찰제도는 현재 이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한반도를 비핵화하기 위해서 남북 쌍방의 합의(1992. 2. 19. 발효)에 의한 사찰제도이다.

IAEA 사찰은 해당 당사국이 IAEA에 수시 및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핵물질량과 그 국가 내에 현존하는 핵물질량이 같은지를 비교·확인하고, 핵물질이 핵시설의 외부로 반출되지 못하게 주요 위치에 감시용 카메라의 설치 및 봉인을 하며 연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그러나 IAEA 사찰은 정보와 장소에 대한 접근에 제한을 받게 되는 한계가 있다. 사찰관은 신고된 시설의 약정된 장소에만 접근이 허용되고, 협정 당사국이 동의한 범위 내에서만 사찰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특별사찰제도가 있기는 하나 이 역시 당사국이 동의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즉 UN의 제재방식에 의하지 않고는 강제사찰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또한 사찰대상이 기본적으로 핵물질에 국한되기 때문에 핵물질이 개입되지 않는 핵탄설계 및 제조공정 또는 고폭실험 등에 대한 사찰은 실시할 수 없다. 아울러 NPT나 IAEA의 핵

안전조치협정은 당사국의 재처리 시설이나 농축시설의 보유를 금지하지 않기 때문에 당사국의 이러한 시설의 가동과 핵무기개발 가능성을 막을 수 없고, 뿐만 아니라 핵무기를 반입했을 경우에도 사찰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남북합의에 의해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는 이와 같은 IAEA 사찰에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문제를 추가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고려된 사찰제도이다.

첫째,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남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의 시험, 제조, 접수, 보유, 배비, 저장, 사용 등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관련한 의심되는 모든 장소 특히 군사기지도 사찰대상으로 포함된다. 따라서 핵무기에 대한 사찰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핵무기 제조에 필수적인 핵폭발장치, 즉 기폭장치 등에 대한 사찰도 가능하게 한다.

둘째, 비핵화선언은 남북한으로 하여금 핵재처리시설과 농축시설의 보유를 금하고 있기 때문에 핵무기 제조의 원인을 그 싹부터 제거하게 되며, 이는 NPT나 IAEA 사찰체계로는 전혀 접근할 수 없는 측면이다.

셋째, 우리측이 제안한 남북 상호사찰의 내용에는 특별사찰 제도가 그 핵심내용으로 되어 있다. 특별사찰은 남북 쌍방간에 서로 의심되는 지역과 시설에 대한 사찰을 할 수 있게 해주어 ‘비핵화’ 의무이행을 상호 확인하는 효과적인 제도로서, IAEA 사찰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한반도 내에서 핵무기의 개발과 보유를 감시하는

데 있어서 IAEA 사찰의 한계점을 보완, 극복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현재까지 사찰규정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

20

NPT란 무엇이며, 이는 결국 기존 핵보유국만이 핵무기를 갖겠다는 강대국의 논리에서 나온 불평등조약이 아닌가?

핵확산금지조약(NPT)은 핵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1968년 UN총회에서 결의안으로 채택되어 1970년 3월 5일 발효된 국제조약이다. 이 조약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5개국(미국, 구 소련, 영국, 프랑스, 중국) 이외에 비보유국가들의 핵무기보유를 억제함으로써 핵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다자간 조약이다. 12개 항의 전문과 11개 조의 조문으로 구성된 핵확산금지조약의 골자는 ① 핵무기의 수평적 확산(새로운 핵보유국의 등장) 방지, ② 핵무기의 수직적 확산(기존 핵보유국의 질적, 양적 증가) 방지, ③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등이다.

NPT의 주요 내용과 그 실효성을 평가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핵확산금지에 관한 것으로 핵보유국의 핵무기 개발지원과 비핵국의 개발시도를 금지한 내용이다. 이는 대체적으로 이행되고 있으나 5개 핵보유국과 원자력 선진국들이 정치적·상업적 동기에 의해 핵잠재국들의 핵개발을 지원하고 이라크와 북한 등 신흥 핵개발국들이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을 시도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둘째, 안전조치에 관한 부분은 비핵국의 NPT준수 검증으로 비핵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IAEA 사찰로 나뉘어져 있다.

셋째,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부문은 핵보유국과 비핵국들간

에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넷째, 군축부문은 핵무기의 수평적 확산금지와 수직적 확산 금지를 연계하려는 비핵국들의 요구로 핵보유국들의 입지가 약화되었다.

다섯째, 비핵국의 안전부문은 비핵지대 창설과 안전보장으로 세분된다. 핵보유국은 비핵국의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있으나 비핵국들은 보다 완벽한 안전보장을 원하고 있다.

여섯째, 조약의 개정, 이행 및 연장을 규정한 부문은 조약의 개정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개최는 없었으나 ‘조약이행평가회의’는 1975년부터 5년마다 개최되었고, 1995년 연장회의에서는 NPT체제를 지속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이 조약내용에서 핵보유국과 비핵국의 의무는 불평등하게 되어 있다. 예컨대 비핵국은 핵무기의 제조나 보유를 할 수 없고 IAEA의 사찰을 받을 의무가 있으나, 핵보유국은 IAEA의 사찰을 받을 의무도 강제 조항이 아니다. 바로 이같은 점들이 조약의 불평등성을 제기케 하는 것들이다.

1995년에는 프랑스와 중국의 핵실험이 세계여론의 지탄이 된 바 있었다. 그러나 더이상 핵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핵보유국이 늘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감시체제로서 IAEA의 사찰을 받도록 하는 것은 불가피하고 당연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더 적절한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 앞으로 핵보유국들은 보다 효과적인 핵기술이양 및 보유 핵무기의 감축 내지 철폐를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하며 이를 보장할 제도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1996년에 핵실험금지조약(CTBT : The Compre-

hensive Test Ban Treaty)이 체결되어, 비핵국에 대한 안전보장의 구체적 명문화 등도 시도되었다.

21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성격과 역할은 무엇인가?

KEDO는 제네바 기본합의문에 규정된 대로 대북 경수로사업의 재원조달과 공급을 담당하는 다국적 콘소시엄 형태의 기구로서 1995년 3월 9일 정식 설립되었으며, 동년 7월 20일 뉴욕에 본부사무실을 개설했다. KEDO의 기관으로는 집행이사회, 사무국, 총회 및 자문위원회 등이 있는데 집행이사회는 원회원국인 한국, 미국, 일본 3국 대표로 구성된 최고의사결정기관이며, 전원합의제 형태로 운영된다.

사무국에는 최고위직인 임기 2년의 사무총장 1명(미국인 보스어스 총장)과 사무차장 2명(한국 : 1명, 일본 : 1명)을 두며, 정책 및 북한사업운영안전 및 품질보장, 재정 및 증유, 총무 등의 부서를 두고 있는데 사무국 직원은 원회원국 중에서 채용되고 있다.

현재 KEDO에는 원회원국인 한국, 미국, 일본 3국 외에 핀란드,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인도네시아, 칠레, 아르헨티나 등 7개국이 KEDO의 목적을 지지하고 자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집행이사회에 승인을 받아 일반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EU의 가입도 추진되고 있는 등 대북경수로지원사업과 북한핵문제의 전반적 해결을 위한 국제기구로서의 역할과 활동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KEDO의 설립목적은 제네바 기본합의에 따라 북한이 흑연 감속원자로를 동결하고 궁극적으로 이를 해체하는 대신에 1000MWe 용량의 한국표준형 원전2기를 북한에 제공하고, 폐연료봉 처리와 경수로 1호기 완성시까지 북한에 대체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다. KEDO는 1996년 3월 20일 우리나라의 ‘한전’을 일괄도급방식으로 북한에서 경수로사업을 수행할 주계약자로 공식 지정하였다. 이로써 ‘한전’은 각각 1000MWe 용량의 한국 표준형원자로 2기로 구성되는 울진 3·4호기를 참조발전소로 하여 대북 경수로공급사업의 설계, 제작, 시공 및 사업관리 등을 전반적으로 수행하게 되었으며 '97년중 KEDO-한전간의 주계약체결을 목표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이 대북경수로지원사업이 KEDO라는 국제기구를 통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은 북한이 남한과의 직접대화를 기피하며 형식적으로라도 미국을 통하려는 저의에 기인한 것이다. 어쨌든 KEDO는 경수로사업 추진과정에서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남북간의 대립과 충돌을 완충시키는 국제적인 보장장치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겠다.

22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 사이에 체결된 경수로 공급 협정의 구체적 내용과 그 의의는 무엇인가?

1995년 6월 13일 쿠알라룸푸르에서의 미국·북한간의 합의결과에 따라 동년 12월 15일 뉴욕에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간에 대북 경수로 공급에 관한 국제조약성격의 협정문이 정식 서명되었다. 이는 전문 18개조와 4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경수로 공급협정의 체결의의는 그 동안 우리가 주장했던 ‘한국표준형 원자로’ 공급과 ‘한국의 중심적 역할’ 수행이라는 경수로 사업의 원칙이 재확인된 점과, 북한 핵문제 해결에 진일보 했다는 점이다. 북한 핵문제 해결의 핵심요소인 경수로사업의 기본골격이 만들어지고 지금까지의 정치적 합의사항이 국제법적 의무사항으로 전환되었고, IAEA의 임시·일반 사찰은 재개되었으며, 장기적으로 남북한간의 교류협력과 긴장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경수로공급협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KEDO는 북한에 2개 냉각재유로를 가진 1,000MWe 용량의 가압경수로 2기로 구성되는 경수로사업을 일괄도급형식으로 제공한다는 것으로 이는 바로 울진 3·4호기를 참조발전소로 하는 한국표준형 원자로 2기를 제공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둘째, 공급범위에 있어서 우리측은 경수로 원전건설과 이에

필수불가결한 사항에 한해 부담하게 되었다. 부지준비, 부지 내의 공사용 도로, 공업용수, 공사관련 인원 숙소 등 건설 개시에 필요한 공사와 냉각수 취·배수용시설, 바지선 물양장, 수중보를 포함한 양수시설 등 원전 운영에 필수적인 사항과 기타 모의훈련대 등 원전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 등 통상적인 원전건설에 포함되는 범위 내로 한정하였다.

셋째, 북한은 각 경수로발전 완공 후 각 호기별로 ‘3년거치 17년상환’의 무이자 조건으로 상환하기로 합의하였다.

넷째, 사업진행에 긴요한 사항인 통신·통행, 사무소 설치문제로 통행로(해·공로)는 북한측이 지정하되 KEDO와의 합의가 필요하며, 기존 통신시설에 대한 방해받지 않는 이용 보장과 KEDO 및 KEDO측 사업자의 독자적 보안통신수단 설치도 허용되었고, 사무실 설치문제는 현장사무소 외에 공항 등 직접 관련지역에 추가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KEDO 및 그 직원은 KEDO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북한 영역 내에서의 특권 및 면제를 부여받으며 KEDO계약자 및 하청계약자 인원은 신병과 재산, 영사보호를 받으며 경수로 사업과 관련하여 북한의 조세·관세 등을 면제 받는다.

여섯째, 핵활동 관련 의무사항으로 북한은 NPT잔류, 핵동결 및 해체, 폐연료봉 국외반출, IAEA 임시·일반사찰 재개, 안전 조치 전면 이행 등의 의무를 지게 되었다.

일곱째, 법률적인 사항으로 KEDO의 독립적·법적 지위가 인정되고 분쟁해결 절차도 규정되었다. 대북 경수로지원사업의 근간이 되는 경수로 공급협정에 따라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KEDO와 북한간에 ‘특권면제 및 영사보호’ ‘통행’, ‘통신’, ‘부지인수’, ‘서비스이용’ 의정서 등이 이미 체결되었으며 필요한 의정서들이 계속 체결될 예정이다.

또한 경수로건설 예정부지에 대한 조사가 1995년 8월 15일 이래 6차례 실시되었으며 1997년도 상반기에 7차 부지조사도 곧 실시될 예정이다.

23

대북 경수로 건설지원과 관련하여 한국, 북한, 미국, 일본 등 관련국의 기본입장 및 쟁점사항은 무엇인가?

한국은 대북 경수로지원과 관련하여 범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을 설치·운영(1995. 1. 23)하고 있으며, 이 사업과 관련한 우리의 기본 입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수로 지원과정에서 우리가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비용부담에 상응하게 KEDO의 구성 및 사업추진은 물론 경수로 건설 전과정에서 우리의 주도적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경수로 지원은 반드시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북한에 대한 경수로 지원은 민족 내부간에 이루어지는 협력사업이라는 성격을 갖기 때문에 교류협력법 등 국내 법질서와 부합되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공동체의 건설과 민족복리의 증진이라는 ‘민족발전공동계획’의 시각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경수로지원은 북·미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추진되어야 한다. 경수로지원을 위해서는 북한의 핵동결 조치와 함께 IAEA의 핵안전조치협정이 이행되어야 한다. 즉 북한의 핵투명성이 보증되어야 하며, 뿐만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의 이행과 남북대화 재개 등 북·미 기본합의서에서 합의

한 사항이 경수로 지원과정과 연계되어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에만 집착하며 한국을 배제하려는 기본전략으로 줄곧 협상에 임해왔다. 북한은 노형 선정문제에서 한국형 경수로의 안전성 결여를 핑계로 거부하였으나 현실적으로 한국표준형 이외의 다른 대안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어 결국 받아들였다. 인허가 절차에서도 북한법에 따른 자의적 절차를 주장하다 ‘안전심사분석보고서’에 기초한 우리측 허가절차를 수용하였다. 북한은 경수로 공급범위에서도 일체의 비용부담에 반대하며 송배전시설, 항만시설 개선, 핵연료성형공장, 사용후 영구 저장시설 등 무리한 요구를 해 왔으나, 협상과정에서 이를 철회하였다. 당초 북한은 대금상환 및 제반 의무사항 등 부담을 다소나마 줄이고자 하였으나, KEDO측이 제시한 3년거치 17년 무이자 분할상환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포기할 수 없었으며, 김일성의 유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북한은 자기들이 비난했듯이 한국형 경수로가 북한사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트로이의 목마’라고 여기는 측면이 있다. 많은 남한 기술자들이 북한을 왕래하게 되면 북한 주민들에게 미칠 정치적 파장을 우려하여 북한은 가급적 한국측 인력들이 북한주민과 접촉하지 않도록 원자력 발전소 건설지역인 신포를 경수로특구로 지정하여 다른 지역과 분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 계획을 동결하고 과거핵 의혹을 규명하여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체제를 유지하려는 것이 기본

입장이며, 북한의 갑작스런 붕괴보다는 점차적인 개방에 의한 변화와 한반도의 질서와 안정을 바라고 있다.

앞으로 한·미·일 정부간에 경수로 사업비 재정분담을 위한 협의가 계속되겠지만 미국은 적성국교역법, 수출법, 핵비확산법 등의 국내법상의 규제와 북한에 대체에너지를 공급하는 중유비용과 폐연료봉 안전보관처리비용의 부담 등을 이유로 경수로 건설비용을 직접 지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본 역시 북한의 핵위협을 줄이기 위하여 대북경수로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상당규모의 재정분담을 약속하고 있으나, 한·일간 경수로 비용분담규모가 확정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앞으로 대북 경수로지원사업에서는 이미 체결된 5개 의정서 외에도 경수로 공급협정에 따른 KEDO - 북한간 후속의정서 체결 및 세부이행사항협의, 한·미·일 정부간의 경수로 건설 및 관련사업에 대한 재원분담협상, 상업참여문제협의, KEDO - 한전간의 주계약체결 등이 주요과제가 될 것이다.

24

북한에 제공될 ‘한국형 경수로’란 무엇이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대북 경수로 공급에 관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간 협정문 제1조의 노형 및 공급발전소에 관한 규정은 KEDO가 북한에 2개의 냉각재유로를 가진 약 1,000메가와트 용량의 가압경수로 2기로 구성되는 경수로 사업을 일괄 도급 방식으로 제공한다고 되어 있다. 노형은 KEDO가 선정하며, 미국의 원설계와 기술로부터 개발된 개량형으로서 현재 생산 중인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합의문은 북한에 제공될 경수로에 관해 “현재 건설 중인 두개의 냉각재유로를 가진 1,000메가와트 가압경수로 2기”라는 기술적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표준형 원자로의 제원(諸元)들이며, 일체 다른형은 배제된 것이다. 노형은 KEDO가 선정한다는 규정도 이미 한·미·일 3국간에 한국표준형 경수로로 합의된 사항이다.

KEDO와 주계약자로 지정된 ‘한전’ 간에 경수로 상업계약(주계약) 체결교섭이 진행되고 있다. 여기서 상업계약 체결대상이 되고 있는 한국형 경수로란 미국 컨버스천 엔지니어링사(CE)로부터 기술도입한 경수로(영광 3, 4호기)를 우리의 실정에 맞게 개량하여 우리 기술로 설계한 경수로를 지칭하며, 현재 건설 중인 울진 3, 4호기가 한국형 경수로 1호기이다. 울

진 3, 4호기는 1985년부터 정부가 본격적으로 추진해 온 원전 자립계획의 소산물로 영광 3, 4호기와는 기술적으로 1백여 항목의 차이를 보이며 가동률과 안정성이 크게 향상된 것이 그 특징이다. 오는 1998년 울진 3호기가 완료되면 현재 93.3%인 우리의 원전기술 자립도는 거의 1백%에 육박할 것이다.

한국형 경수로가 서방의 기존 원자로와 견주어도 전혀 손색이 없고 러시아형보다 월등하다는 것은 모든 전문가들이 입증하고 있으며, 북한에서도 인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한국표준형원자로가 세계적 관심을 불러 일으켰던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제공 경수로로 최종 선정된 것은 우리의 원자력 기술능력과 기술향상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25

대북 경수로 건설지원사업이 공급협정의 타결로 본격화되고 있는데 우리가 강조해 온 ‘중심적 역할’은 무엇을 의미하며 건설비용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가?

대북 경수로지원사업에서 우리가 중심적 역할을 한다는 것은 북한에 제공할 경수로는 한국표준형원자로 즉, 우리가 우리의 실정에 맞게 개량하여 우리 기술로 설계한 경수로(울진 3, 4호기)를 북한에 제공할겠다는 것이며, 제네바 기본합의에 따라 경수로사업의 재원조달과 공급을 담당할 국제기구로 설립된 KEDO의 구성 및 사업추진은 물론 경수로 건설 전과정에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경수로사업이 KEDO라는 국제기구를 통하여 추진되고 있지만 국내적으로는 남북한간 ‘민족발전공동계획’의 첫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경수로의 설계·제작·건설 등 전반적 사항을 우리가 주도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경수로의 국산화율(자립도)이 설계 95%, 제작 98%, 시공 100% 정도이며, 나머지 부분을 미국기업 등에게 용역과 하청을 줄 수 있다. 경수로 건설은 방대한 사업이기에 원가절감을 위해서라도 해외에서 산 부품을 구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술부분은 북한도 인정했으며 한국형 경수로가 빠지면 북한 핵문제 해결의 전체구도가 와해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여 있다.

1994년 11월 KEDO 설립회의시부터 한국기업이 KEDO와 주

계약자가 된다는 합의는 경수로사업에서 한국이 중심적 역할을 한다는 것이며, 1996년 3월 20일 KEDO가 ‘한전’을 일괄도급방식으로 경수로사업을 수행할 주계약자로 선정함으로써 이것이 확인되었다. 우리가 대북 경수로지원사업의 중심적 역할을 하기 위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부담은 불가피할 것이다. 참고로 참조발전소인 울진 3, 4호기의 총공사비는 43억 5천만달러가 들어간다. 이러한 막대한 재원마련에 정부는 가능한 한 국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최종 결론은 나지 않은 상태이다.

앞으로 경수로 건설을 위한 총사업규모가 확정되면 이에 따라 한·미·일 등 경수로 사업 참여국가간의 협의를 통해 관련국간의 비용분담규모가 확정될 것이다. 동합의시 우리의 부담부분은 국민대표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받아 확정되어야 할 것이다.

26

중·러와 수교한 우리가 북한의 대미·일 수교를 남북관계 진전과 연계하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의견은?

모든 남북관계는 민족통일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그 정당성 여부가 좌우되어야 한다. 남북의 정책당위성 여부도 같은 기준에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남북의 분단현실에서 우리 민족이 통일로 접근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대안은 남북한 평화공존체제를 정착시키는 것이다.

남북한 평화공존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남북한이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둘째, 남북한이 상호 상대방의 정치적인 실체를 인정한 바탕 위에서 셋째, 경제, 사회·문화적인 영역 등에서 다방면적인 교류와 협력관계를 통해 민족공동체를 회복시켜 나감으로써 정치적 통일의 기반을 조성시켜 가야 한다.

그리고 이같은 남북한 평화공존관계가 공고히 정착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한반도 주변4강의 보장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 정부가 미국과 함께 한반도의 전쟁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4자회담을 제기하고 있듯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한반도 주변강대국의 참여가 필요하다. 이런 시각에서 우리 정부는 7·7선언을 계기로 북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그 결과가 국제정세 변화와 맞물려

중·러 양국과 수교에 성공한 것이다. 한편, 같은 논리로 북한이 미국, 일본과 수교하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북한의 대미·일 수교가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면 우리는 결코 이를 방관할 수 없다. 북한이 미국·일본과 수교하려는 동기는 물론, 이미 한계상황에 이른 경제를 회생시켜 보려는 경제적인 필요성도 있지만, 그에 못지 않게 대남정책적인 요청이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북한은 한국을 배제시키고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한국을 미제의 식민지로 전락시키고 아울러 자기들이 한반도의 정통정권임을 부각시켜 공산화통일의 명분을 축적하려고 한다. 한국의 국가적 실체를 부인하는 이른바 ‘하나의 조선정책’을 관철시키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이 한국의 정치적 실체를 인정하고 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문제를 진지하게 토의해 나오는 정책선회가 있을 때 북한의 대미·일 수교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즉, 북한의 대미·일 수교는 남북관계의 진전과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4자회담과 다자회담(남북한·미·일·중·러·유엔)간의 장·단점은?

통일은 남북으로 나뉜 민족사회를 하나의 민주민족공동체로 만들자는 것으로 우리 민족의 과제다. 따라서 통일의 주체는 남북한 민족성원 전체이며,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할 당사자는 남북한정부 당국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남북한 당사자 원칙을 거부하면서 그 대신 ‘대미평화협정’ 체결만을 주장하였으나 이러한 주장이 여의치 않자 ‘중간단계’로 ‘대미잠정협정’을 제안(’96. 2)하였고, 이를 강요하기 위해 ‘남북기본합의서’(’92. 2 발효)에서 평화협정 체결시까지 정전협정을 준수하기로 한 약속도 무시하고 1996년 4월 북측 비무장지대 내에서 무력시위를 하는 등 정전협정의 무력화를 시도하였다.

이에 대하여 한·미정상은 제주도회담(1996. 4. 16)에서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남북한과 미국·중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을 아무런 조건없이 개최하자”고 제의하였다. 이러한 ‘4자회담’은 북한의 ‘북·미평화협정’ 체결주장이 정전협정체결의 실질적 당사자인 한국을 배제시키고 있는 데 대해 대안으로써 정전협정의 실질적 당사자 모두를 참여시켰다는 점에서 훨씬 합리적이고도 현실적인 제안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4자회담’은 남·북한·미·중 4자로 출발하지만 결국 남북한협상이 주(主)가 되고 미·중이 이를 보장하는 ‘2+2’로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2+2’는 북한이 대미관계 개선차원에서 미국의 참여·보장이 필수적이라고 인식하고 있고 또 국제적 보장자로서 중국이 참여함으로써 북한의 국익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선택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제적 보장방안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2+2’는 한반도 정치·군사문제에 일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러시아를 제외시킴으로써 러시아의 반발을 초래, 평화보장력이 약화될 수 있다. 또 국제사회에서 정치·군사적 역할 증대를 모색하고 있는 일본이 이에 소극적으로 대응,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일본의 경제·외교적 협조기대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기는 하다.

따라서 한반도 주변4강인 미·일·중·러와 유엔이 참여하는 다자간 방식을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러한 다자회담방식은 한반도문제에 대한 주요 관련국이 모두 참여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평화보장이 가능하다. 특히 일·러·유엔 등을 한반도 평화보장자로 포함시킴으로써 미·중의 과도한 영향력 확대를 견제할 수 있으며 일본의 실질적인 경제적 공헌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자회담은 한반도문제에 대한 주변4강의 개입을 인정, 제도화함으로써 평화보장뿐만 아니라 통일과정에서도 외세의 개입이 복잡하게 얽힐 수도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28

‘4자회담’의 제의배경은 무엇이며, 우리 입장에서 본 이해득실은 어떠한가?

북한은 1974년 3월 25일 최고인민회의의 결의를 통하여 대미 평화협정체결을 주장한 이래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1992년 2월 19일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발효하고서도 그 실천을 거부하고 대화의 창구를 미국으로 돌리고 있는 중이다. 남북기본합의서는 “현 정전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남북이 공동으로 노력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의 단독 평화협정체결을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은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뿐만 아니라 6·25남침전쟁의 성격을 미국의 침략전쟁으로 변질시키고 한국을 미국의 침략전쟁의 동조자로 전락시켜 우리 민족통일의 정통성을 확보하려는 대남전략적 저의를 갖고 미국과의 단독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는 것이다. 한국은 북한의 이같은 대남전략을 봉쇄·차단시키기 위하여 한반도 군사문제의 실질 당사자인 남북한과 정전협정 당사국인 미국과 중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을 1996년 4월 16일 제주 한·미정상회담에서 공동으로 제의하였다. 북한의 입장과는 달리 한반도 군사문제의 당사자 해결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중국은 남북대화를 통한 해결을 최선의 대안으로 권장하

는 입장이므로 ‘4자회담’을 거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오직 북한만이 입장을 유보하고 있다. 다만 북한은 대미협상을 위한 카드로 활용하고 대미협상채널을 유지하기 위하여 회담설 명회에 참여의사를 밝히면서 외교적으로 ‘소극적 거부’ 입장을 보여오다가 식량위기에 봉착하자 식량원조 조건등을 내세우면서 ‘4자회담’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선회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4자회담’에는 응하더라도 ‘4자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가 제도적으로 정착되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예상된다. 우리는 반드시 ‘4자회담’을 성사시켜 남북이 주축이 되고 휴전협정 당사국인 미국과 중국이 보장하는 방식으로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29

북한의 식량난을 완화하기 위한 국내외 지원 현황과 우리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북한의 식량난이 심화됨에 따라서 국내외 지원이 매우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지난 1995년부터 시작된 대북 식량지원은 우리나라가 쌀 15만톤을 비롯하여 총 2억 4,459만 달러, 국제사회가 우리 정부 및 민간지원금 1,259만 달러를 포함하여 총 1억 1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다.

우리의 대북지원은 정부차원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1995년에는 2억 3,200만 달러 상당의 쌀 15만톤을 국제기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지원하였으며, 1996년에는 세계식량계획(WFP) 200만 달러, 유엔아동기금(UNICEF) 100만 달러, 세계기상기구(WMO) 5만 달러 등 총 305만 달러를 국제기구를 통하여 지원하였다. 1997년에는 WFP를 통하여 600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부 차원에서 직접 혹은 국제기구를 통하여 북한에 지원한 규모는 총 2억 4,105만 달러에 이르고 있다. 또한 민간차원에서도 대한적십자사를 통하여 354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국제사회의 대북지원도 상당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UN 산하기구를 통하여 총 6,219만 달러 상당이 지원되었거나 지원될 예정으로 있는데 여기에는 1997년도 지원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우리측의 600만 달러도 포함되어 있다. 1차('95. 9

~'96. 6)로 930만 달러가 지원되었으며 2차('96. 7~'97. 3)에는 3,469만 달러가 지원되었다. '97. 4~'98. 3 기간에 이루어질 3차 지원에서는 미국 1,000만 달러, 한국 600만 달러, 호주 200만 달러, 노르웨이 20만 달러로 약 1,820만 달러 상당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다.

국제적십자사도 '95년 10월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우리측 354만 달러를 포함하여 약 1,210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다. 비정부기구인 국제NGO(국제선명회, 유진벨 등)와 개별국가, 조총련 등도 대북지원에 나서 현재까지 약 2,572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다.

금년 들어오면서 북한은 국제사회에 대해 긴급 식량원조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고, 북한의 식량난을 조사하고 돌아온 국제기구 임원이나 미국 의원들이 북한 식량사정의 심각성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조사결과를 근거로 하여 WFP 등 UN 산하기구들이 지난해에 비하여 대폭 증액된 대북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민간차원의 대북지원 확대조치를 금년 3월 31일 발표해 놓고 있다. 현재 대한적십자사로 일원화 되어 있는 대북식량 지원창구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현금을 제외한 쌀 등 곡물지원과 경제단체의 대북지원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우리정부는 UN 인도지원국의 대북지원과 관련 지난 2월 WFP 6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하는 등 국제적 차원의 대북 지원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동포애와 인도적 견지에서 계속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으로 있다.

단지 정부차원의 직접적인 대북 식량지원은 남북관계의 진전 및 국민여론의 바탕위에서 추진하는 것이 기본입장이다. 따라서 북한이 4자회담 수용 등을 통하여 남북대화에 긍정적으로 나올 경우, 우리 정부는 북한 식량문제의 근원적 해결차원에서 대북 지원에 나설 것이다. 또한 민간차원의 대북 직접 지원은 종교단체, 경제단체의 경쟁적 지원을 유발, 북측의 잘못된 판단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원될 식량의 균량미 전용 방지 및 분배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가운데 대한적십자사를 중심으로 질서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III. 교류협력

30

남북한간에 물품을 반출·반입할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남북한간에 교역을 하기 위하여 교역당사자가 물품을 반입 또는 반출하려면 대상물품, 거래형태, 대금결제방법에 관해서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교역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외에 무역업의 허가를 받은 무역업자로 제한하고 있다. 교역당사자가 정부의 직접적인 반출입 승인을 받는 것은 제한승인품목에 한하고 기타 자동승인품목은 외국환은행장에게 승인권을 위탁한 것은 남북간의 교역을 가능한 한 자유교역의 원칙에 따라 폭넓게 개방하려고 한 것이다.

특히 남북한간의 교역은 민족내부거래라는 특수성이 있고 또 남북교역을 촉진한다는 차원에서 북한지역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및 기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부과금을 면제하는 ‘무관세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무관세원칙은 남북간에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남북한은 남북교역의 무관세원칙을 국제사회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해서도 수출에 준하는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남북교역에서 경제적 이익

을 추구하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 남북관계 개선, 나아가 통일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관계법령과 정부의 지침을 따라서 질서있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남북교역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남북교역의 특수성과 북한체제의 특수성 등에 따른 어려움을 감안할 때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북한과 교역을 하려는 경우에는 세심한 사전준비가 필요하고, 특히 교역상품 선정에는 여러가지 여건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교역을 시작하기 위한 북한상사원 접촉은 믿음만한 중개상을 확보한 후 접촉예정 20일 전에 접촉신청을 해야 한다. 남북교역을 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체결인 바 계약상대방 선정에서부터 계약서 작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약조건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명기하지 않으면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견본제시 요구, 원산지 표시, 운송방법, 대금결제방법, 선적기일 등은 물론 가격결정에 있어서도 신중히 검토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물품운송에 있어서도 외국항구 경유 운송과 직항로 등의 장단점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선박을 보낼 때는 물품준비상황 확인 후 조치하지 않으면 입항료, 체선료 등 손해를 보게 된다. 북한측은 납기를 위반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특히 주의하고 원산지 증명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위장반입의 낭패를 볼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이 남북교역에는 신중하고 철저한 주의를 기울여서 추진해야만 일어날지도 모르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31

남북간 물자교역시 물품의 수송·통관 및 대금결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남북한간 물자교역이란 남한과 북한간 물품의 반출·반입을 말하며, 반출·반입이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간의 물품의 이동(단순히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포함)을 의미하며, 이런 물자교역에는 단순한 반출 외에 연계교역, 임가공 교역 등 여러 형태가 있다.

이러한 남북교역은 민족내부거래로 인정되기 때문에 원산지가 북한지역으로 되어 있는 물품을 반입할 경우에는 무관세로 통관된다. 반면 북한지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관세환급 등 통관절차가 일반수출과 동일하다. 이처럼 정부는 남북교역을 촉진하기 위해서 반출입품에 대해서 각기 유리한 통관절차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남북한의 외국과의 무역물품 운송형태를 보면 남한은 해상운송이 주로 이용되고 필요에 따라 항공운송이 이용되고 있으나, 북한은 육상운송에 대한 의존도가 크고 해상운송은 지리적 여건상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이용된다. 남한은 육상운송에서도 도로수송의 비중이 크지만, 북한은 철도수송의 비중이 크다. 따라서 앞으로 남북 직교역시 물자수송에는 상호간 육상수송에 있어서도 도로와 철도의 조정·연결이 필요한 실정이다.

남북간 수송망 연결에 대하여 교류협력에 관한 부속합의서에서는 경의선 등 철도와 문산 - 개성간의 도로 등을 연결하고 인천, 부산, 포항항과 남포, 원산, 청진항간 해상운송로의 개설 그리고 김포공항 - 순안비행장간의 항공로 개설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남북관계의 현실적 여건으로 보아 남북간에는 현재 해상운송이 우선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육로 및 항공수송의 실현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동 부속합의서에서는 필요한 경우 '임시교통로'를 개설하여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남북한간 교역된 물품의 대금결제방법은 남북 경제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외국환관리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일반수출입시의 대금결제와 거의 같으며 외국환관리법에 의해 허용된 결제방법과 결제통화의 사용이 가능하다.

현재 주로 행해지고 있는 남북간 간접교역에 있어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대금결제방법은 제3국 중개인 앞으로 신용장(L/C)을 개설하는 일반신용장 방식이다. 그런데 남북한은 앞으로 남북간 물자교역에 대한 대금결제는 청산결제(淸算決済)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쌍방이 합의하여 다른 결제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합의해 놓고 있다(교류협력에 관한 부속합의서 제1조 ⑧항). 또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도 이러한 방법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남북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이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남북 경제협력사업은 남북관계의 특수한 성격을 전제로 하여 추진되는 만큼 어디까지나 남북관계의 개선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질서있게 분쟁없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협력사업자는 사업시행중 법령이 정한 절차를 존중하여야 하고,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공공질서 및 공공복리를 저해해서는 안될 것이다. 만일 법령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절차위반의 조치를 받아야 할 것이며, 때로는 사업승인이 취소될 것이다.

우리측 협력사업자가 북한과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특별히 유의해야 할 것은 투자업종 및 투자방식 선정문제 그리고 입지선정, 출자, 자금 및 원자재 조달, 기타 생산제품 판매 문제 등이 될 것이다.

즉 북한과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할 경우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어느 업종에 투자할 것인가 하는 문제일 것이다. 그런데 북한과 협력사업을 추진할 때 업종결정권은 우선적으로 북한측에 있으므로 북한의 투자희망분야를 참작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북한측이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에 제출한 투자유치 희망분야 리스트를 참고해야 하고, 나진·선봉지역의 경우에는 북한이 발표한 나진·선봉투자대상 가이드

북이 참고가 될 것이다.

투자방식은 북한의 외국인투자관련법에 정한 합영, 합작, 외국인투자(독자) 방식이 있으므로 어느 방식을 선택할 것인가를 신중하게 비교·검토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또 북한과 같이 행정에 있어서 자의성이 강하게 작용하는 곳에서는 협력사업 상대자의 선정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입지선정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용수, 전기, 항만 및 육상교통 등 사회기반시설이라 하겠는데, 북한측은 합작기업의 경우 입지선정에 제한이 없으나 외국기업의 경우 자유경제무역지대로 한정되어 있고, 합영기업도 입지선정에 많은 제한을 하고 있다.

북한의 외국인투자관련법에는 등록자금이나 출자총액에 대한 규정이 없어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 합영기업의 출자비율도 중국이나 베트남과는 달리 명문규정이 없이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하게 되어 있어 오히려 북한측의 자의로 규제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남북 경제협력사업 경영에 필요한 외화자금 조달은 북한의 열악한 외환시장을 고려할 때 북한에서의 대부는 어려운 것이므로 우리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 원자재 조달은 남북한 또는 인접국가에서 지리적 근접성 등을 고려하여 구입해야 할 것이다.

북한에서 제품이 생산될 경우 목표시장 선정도 중요하다. 북한 내 판매, 남한으로의 반출, 아니면 해외에 수출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고, 해외 수출시에는 어느 국가를 목표로 할 것인가를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33

남북교역으로 손실을 입었을 때 이에 대한 보상제도가 있는가?

남북간에 교역을 하는 경우, 우리측 교역당사자는 남북교역의 특수성 때문에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북한은 경제체제가 폐쇄체제이고 무역관행 등이 서방국가와는 달리 불합리한 점이 많으므로 사전준비가 철저하지 못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도 남북교역의 추진과정에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 남북간에는 아직까지 아무런 분쟁해결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남북교역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서는 남북협력기금법 등 국내법의 구제방법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남북협력기금법에 의하면 우리측 교역당사자가 남북교역 추진과정에서 반출한 물품대금 회수불능, 대금회수 지연 또는 대응물품의 반입불능 혹은 반입지연 등으로 인해서 손실이 발생하고, 교역당사자의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그 손실액을 남북협력기금으로부터 보조받을 수 있다. 손실을 보조받으려면 남북교역을 시행하기 전에 정부와 손실보조약정을 체결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손실보조 약정자는 손실이 실제로 발생하였을 경우 사실증명서류와 함께 손실보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부는 정당한 손실보조금신청에 대하여 실제 발생한 손실액의 100분의 90 이내의 범위에서

남북협력기금으로부터 손실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민족내부거래라는 성격을 갖는 남북교역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일반상사 관련법령이나 수출보험 관련법령과는 별도로 남북협력기금법은 손실보조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다.

1991년 남북한 쌀 5,000톤 직교역에 따른 손실보조금으로 12억 6,800만원을 지급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하겠다.

34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남북한의 입장과 우리 정부의 경협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남북한은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와 ‘교류협력에 관한 부속합의서’에서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 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과 합작 투자 등을 실현해 나가기로 합의함으로써 경제협력을 추진해 나가자는 기본방향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남북간에는 여전히 경제협력의 실천문제에 대하여 기본적인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우리는 남북간에 교류협력을 통한 신뢰구축과 민족동질성 회복 등 민족공동체 형성의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통일국가 건설하자는 입장인데 반해서, 북한은 정치·군사문제 우선이라는 형식적인 논리와 그들의 폐쇄체제 유지라는 실질적인 이유로 선(先)교류협력을 반대하는 입장을 고집해 왔다.

그런데 최근 북한은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근본적인 입장 변화는 아니지만 파탄지경에 있는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서방국가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외자도입 관련 법체제를 정비하는 한편 남북간의 경제협력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자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당국간의 경제협력제도 마련은 외면하면서 우리 기업인을 상대로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중성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를 실질적인 협력관계로 진전시켜 나가면서 민족경제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하여 남북 경제 협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 나가고 있다.

우선 민간차원의 기업인 방북 등 남북 경제계 인사 상호방문을 허용하고 위탁가공교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자 방북 및 시설재 반출을 허용하였으며, 시범적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하고 민간차원의 북한지역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활성화 조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남북경제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과 ‘국내기업 및 경제단체의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에 관한 지침’ 및 ‘남북한 교역대상 물품 및 반출·반입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개정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민간 주도의 남북 경제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남북 당국간의 협의를 거쳐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분쟁해결장치’ 등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35

남북 경제교류협력은 현재의 북한체제가 공고화되도록 돕는 것이 아닌가?

남북 경제교류협력이 결과적으로 북한체제를 공고화하는데 도움이 될 뿐 정작 북한 주민들의 생활향상이나 통일을 앞당기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과거 서독에서도 제기되었던 것으로서 단기적·부분적으로는 그러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시야를 넓혀 장기적이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남북경제교류협력은 북한을 개방시키고 변화시키는 것은 물론 우리의 숙원인 통일을 앞당기는 데에도 크게 기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남북한이 평화통일을 실현해 나감에 있어서 남북간의 경제적 격차해소와 북한의 개혁·개방이 필수적인데 북한은 남북 경제교류협력에는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지만, 인적교류나 기타 사회문화분야 교류에 대해서는 그들의 체제유지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소극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는 남북한이 서로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북한이 수용 가능한 분야부터 교류와 협력을 실시하고, 점차 다른 분야로 확대·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그런 점에서 경제분야가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경제교류협력은 처음에는 물자교역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그것이 위탁가공교역으로, 다시 경제협력사업으로 발전되면서 인적교류, 수송, 통신 등의 교류가 수반되고 다른 분야의 교류협력을 유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이 외부세계의 정보에 접할 기회가 증대될 것이며, 이것이 북한사회의 개방과 변화를 앞당기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특히 약 10년간에 걸치는 경수로 건설지원은 우리가 지원하는 경비 못지않게 북한의 개방화를 위하여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통일이 실현된 다음 짧은 기간 내에 남북간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엄청난 통일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에서 볼 때 통일 이전부터 남북 경제교류협력을 통해 북한 지역의 산업 및 사회기반산업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통일 이후에 일시적으로 소요되는 막대한 통일비용을 분산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남북 경제교류협력은 북한체제의 강화보다는 북한사회의 개방과 변화의 촉진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북한이 남북 경제교류협력을 정치·군사적 목적에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북한의 군수산업이나 기타 체제공고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의 교류협력보다는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 주민의 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를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36

남북협력기금의 적립 및 운용현황은 어떠한가?

남북협력기금은 1991년 최초로 정부출연금(政府出捐金)으로 250억원을 조성한 후 1992년부터 3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400억원씩을 1995년에는 2,400억원을 조성하여 정부출연금 총액 3,850억원을 적립하였다. 또한 민간인의 출연금액은 국민투 자신탁의 2억 1,164만원 등 10건에 2억 5,559만원이다. 한편 1996년 말 현재 정부출연기금 총조성액은 그 동안의 대북지원 실적을 제외하고 3,407억원에 이르고 있다.

앞으로 남북 교류협력이 활성화되어 동기금의 지원 필요성이 증대될 경우에는 정부출연금의 증액은 물론 장기차입이나 채권발행 및 민간 출연의 확대 등 다각적인 자원조달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남북협력기금의 조성과 기본적인 운용·관리업무는 통일원에서 관장하고, 다만 그 효율성을 위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수출입은행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다.

남북협력기금의 지원방법으로는 무상지원 외에 손실보조, 자금대출, 채무보증 및 관련 은행에 대한 지원 등이 있다. 기금에서 무상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남북한 주민으로서 남북 왕래비용의 부담이 어려운 경우와 문화·학술·체육 등의 남북 협력사업을 시행하는 데 자금이 부족한 경우이다. 또 남북

교역이나 경제협력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손해를 보조해줄 수 있으며, 남북 교역업자나 협력사업자는 필요한 자금을 기금에서 융자받거나 채무보증을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남북협력기금의 지원실적은 1991년 남북한 탁구 및 축구단일팀 구성·출전경비 지원으로 9억 5,000만원, 쌀 5천 톤 직교역에 따른 손실보조금 12억 6,800만원이 있고, 1992년 이산가족 노부모 방문단 및 예술단 교환사업 준비금 보전으로 5억 5,100만원이 지급되었고, 1995년 대북 쌀지원사업 경비 지원으로 1,824억 367만원 등을 지급함으로써 1996년 말까지 총 1,970억원을 지원하였다. 따라서 총조성액에서 지원액 및 위탁수수료를 제외한 잔액(1996년 말 현재)은 약 3,407억원이며, 정부에서는 1997년 말까지 남북협력기금을 약 5,000억원 규모로 확대할 예정이다.

앞으로 남북교류협력이 활성화되면 기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럴 경우 동기금을 대폭 확충하여 수요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37

남북간 텔레비전방송 등 언론·출판분야의 교류협력 방안 및 전망은 어떠한가?

남북한은 1991년 12월 13일 합의한 ‘기본합의서’에서 다음과 같이 텔레비전방송 등 언론·출판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즉 “남과 북은 교육, 문화·예술, 보건, 체육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제2장 제9조). 그러나 북한은 이미 합의된 ‘기본합의서’ 및 ‘교류협력에 관한 부속 합의서’의 실천을 거부해 왔다.

일찍이 동서독은 1972년 12월 21일 ‘기본조약’ 체결 이후 제반협정을 체결한 이래 텔레비전방송 및 언론분야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해옴으로써 결국 통일실현의 꿈을 달성할 수 있었다. 이러한 독일의 교훈을 거울삼아 이제라도 당장 남북한 텔레비전방송자유시청, 직통전화 개설, 언론인 상호주재, 출판물 교류 등을 실시하는 것이 민족공동체의 구성과 동질성 회복은 물론 통일로 가는 지름길임이 분명하지만, 북한은 그들의 폐쇄사회 고수와 독재체제 유지에 불안요인으로 인식되는 한 텔레비전방송 및 언론·출판의 교류와 협력을 계속 거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차지하는 매스컴의 놀라운 위력 앞에서 북한은 개혁·개방으로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 한 끝까지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에는 현재 중앙텔레비전방송, 만수대텔레비전방송, 개성텔레비전방송 등 3개의 텔레비전방송국이 있으며, 중앙방송, 평양방송(대남용), 구국의 소리방송(대남용), 평양FM방송(대남용) 등 지방라디오 방송까지 14개국이 있다. 그리고 신문은 로동신문, 민주조선, 평양신문 등 14개 신문이 발행되고 있다.

만약 텔레비전방송 프로그램의 자유시청과 같은 교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선 남북한 텔레비전방송 방식의 통합이나 컨버터(Converter)와 같은 방송전환 송출장치가 추가로 마련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텔레비전방송시스템은 ‘NTSC 방식’인 데 반하여 북한의 텔레비전방송시스템은 ‘PAL방식’이기 때문이다.

〈참고〉

NTSC방식 : 한국, 일본 미국, 캐나다, 필리핀 등

PAL방식 : 북한, 중국, 영국, 홍콩 등

환경보호분야에서의 남북 교류협력방안은 무엇인가?

남북한은 유사한 지리적 환경으로 인해서 상호 환경오염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으면서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환경보호에 대처하는 방식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환경에 대한 인식이 낮으며 따라서 환경오염은 그들의 경제 수준에 비하여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의 경제개발과 함께 환경오염이 더욱 심화될 경우 통일 후 북한의 산업시설을 국제적 환경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막대한 환경관련 투자비용이 소요될 것이 틀림없고 그럴 경우 통일한국의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 환경보호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의 조기 모색은 남북 통일 후 환경문제에 따른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이다. 남북한이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장기적으로 남북한 경제통합을 목표로 하면서 주어진 여건 하에서 상호보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런데 남북한은 공해를 보는 시각, 환경에 대한 자료수준, 환경을 다스리는 법 및 행정기구 등에 있어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교류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래도 실제적으로 남북한은 환경오염 규제기준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 환경보호 교류협력의

대상사업으로는 첫째, 대기오염의 장거리 이동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하며, 둘째, 지역환경문제의 공동 조사를 실시하고 환경오염의 감소대책을 수립하며, 셋째, 공해 산업과 유해폐기물의 지역간 이동 규제를 위한 공동감시체제를 구축하며, 넷째, 남북한간에 환경기술협력 및 정보교환을 위한 남북한 환경보호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같은 남북한 환경보호협력은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민간주도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남북한이 환경보호를 위한 교류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환경관련투자를 선진국 수준(GNP 대비 1~2%)으로 늘려나가야 할 것이며, 특히 남북한 환경보호협력은 통일비용의 사전부담 차원에서 정부와 기업이 장기적이고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남북한은 남북관계의 발전단계에 따라 상호 정보교환 등의 단순교류단계에서부터 북한의 환경보호를 위한 산업구조 조정 등 장기협력단계를 거치는 단계적인 교류협력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IV. 통일환경

한반도 통일에 대한 마·일·중·러의 기본입장은 무엇인가?

한반도는 지정확적으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세계최대 해양 국가인 미국·일본과 대륙국가인 중국·러시아에 둘러싸여 있는 곳으로, 1945년 제2차세계대전 이후 미·소를 비롯한 연합국의 전후처리 과정에서 분단되었다. 따라서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데올로기에 의해 적과 동지로 나뉘어 대결·대립 하던 냉전질서 하에서 중국과 소련은 북한과 이념적 동지임과 동시에 그 배후세력으로서 ‘대북한 일변도정책’을, 반대로 미국과 일본은 ‘대한민국 일변도정책’을 유지함으로써 한반도는 동서냉전의 최전방에 위치해 있었다.

그러나 1989년 이후 ‘동구공산권의 몰락’과 ‘구소련의 해체’로 인해 1945년 이후 형성되었던 냉전질서가 붕괴됨으로써 세계질서는 지각변동을 일으키면서 급변하고 있다. 즉 탈냉전 이후 형성되고 있는 신국제질서는 억압적이며 획일적인 질서가 아닌 다원화·개방화·자유화가 강조되는 민주적인 질서하에서 ‘이데올로기’ 보다는 ‘개별국가의 실리’가 중시되면서 ‘긴장완화·화해협력’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세계정세는 동북아에도 영향을 미쳐 한반도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즉 과거 북한의 종주국임과 동시에 배후세력으로서 ‘대북한 일변도정책’을 유지해오던 구소

련과 중국이 1990년 9월과 1992년 8월 각각 우리와 관계정상화를 이루게 됨으로써 과거의 적대관계가 자국의 실리를 바탕으로 한 선린우호관계로 전환되었다.

이렇듯 탈냉전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과거 적대에서 화해·협력으로 개선되었지만 주변 4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기본입장은 ‘불통불란(不統不亂)’의 ‘현상유지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첫째, 탈냉전 이후 미국에게 있어 한반도의 전략적 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된 것은 사실이나, 아·태지역전략상 한반도의 중요성은 여전하다. 따라서 미국은 한반도문제에 균형자 역할 뿐만 아니라 주도적인 입장에서 우리의 통일노력을 비교적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일본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동북아의 안정에 필요하며, 북한이 남한에 위협으로 존재하는 한 일본에 대해서도 위협이 된다고 인식, ‘한·일 우호협력관계’를 한반도 정책의 기조로 삼고 있으며, 한반도에서의 비핵화와 현상유지차원에서 남북대화와 남북간 평화공존을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러시아도 1980년대 중반 이후 ‘대북일변도 정책’으로부터 ‘한반도 균형정책’으로 바뀌었고, 특히 러시아의 국내정치안정과 경제발전을 도모키 위해 ‘평화로운 주변환경’ 조성차원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기하고자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중국 역시 1992년 1월 남순강화(南巡講話) 이후 가속화되고 있는 개혁·개방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평화적인 주변환경 조성차원에서 한반도에서의 안정을 바랄 것으로 보

이다.

이렇게 볼 때 주변정세는 북한보다 우리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여건을 창의적·능동적으로 주도하여 평화통일환경 구축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통일을 위한 국제적 지원을 확보하는 문제는 주변 4강국이 한반도 통일에 소극적일 수 있는 이유를 제거하는 차원에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40

탈냉전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의 특징은 무엇이며 평화 정착의 가능성은 어떠한가?

탈냉전 이후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국제질서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소련이 주도하던 공산주의 이념의 세계적인 퇴락현상과 동시에 자유민주주의 이념의 전세계적 확산이다.

둘째, 사회주의권과 자본주의권의 경쟁의식으로 인한 과거의 소모적인 대결의 지양과 상호의존적인 국제관계의 발전추세이다.

셋째, 탈냉전 이후 이데올로기에 의한 분쟁의 가능성은 줄어든 반면 냉전시대에 잠재해 있던 민족주의적 갈등이 탈냉전과 함께 표출되어 지역분쟁이 빈발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넷째, 구소련을 비롯한 동구사회주의 국가들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그리고 중국의 사회주의시장경제 채택 등 시장경제체제의 전세계적 확산이다.

다섯째, 탈냉전 이후 형성되고 있는 국제질서는 군사·안보면이 강조되었던 냉전시대와는 달리 경제면, 즉 자국의 실리를 중시하는 추세가 나타나면서 ‘대결·대립의 긴장관계’가 아닌 ‘긴장완화·화해협력관계’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지각변동 속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역시 냉전시대의 상호적대적 관계에서 벗어나 자국의 실리에 바탕을 둔 협력적 상호관계로 발전, 동북아지역의 안보환경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즉 중·소관계 정상화(1989), 한·소 수교(1990. 9), 한·중수교(1992. 8) 등 탈냉전적 양자관계 재조정이 진행됨에 따라 역내에서는 다각적인 경제협력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 지역에서 형성되고 있는 신국제질서는 전세계적 차원에서 형성되고 있는 국제질서와는 상이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동북아 지역에서 미·일·중·러 등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을 뿐 아니라 중국과 북한이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있어 기존의 냉전적 대립요인이 잔존하고 있으며, 또한 분단국 문제, 영토문제, 군비경쟁 등 냉전적 요소가 잔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강대국간 세력관계 변화 가능성으로 인한 유동성과 기존의 냉전적 구조와 새로운 탈냉전적 변화가 병존하는 이중성이 동북아지역 신국제질서의 전반적 성격을 규정하는 주요 특징이다.

결론적으로 동북아지역은 탈냉전 이후 역내 경제적 상호의존과 정치·군사적 불확실성이 동시에 고조되는 과도기적 현상이 계속되고 있으나, 이 지역 최대 안보위협으로 주목받던 북한 핵문제가 미·북간 제네바합의(1994. 10. 21)로 해결의 '틈'을 마련함에 따라 점진적이거나 정치·군사부문에서도 동북아지역에서의 탈냉전이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41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활동의 실질적 진전과 두만강지역개발계획(TRADP) 등 아·태지역에서의 다자간 경제협력이 동북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1980년대 중반 이후 국가간의 보호무역주의 등 경제냉전이 심화되면서 세계가 경제블록화(EU : 유럽연합, NAFTA : 북미 자유무역협정 등) 추세로 나아감에 따라 아·태지역에서도 대 경제권 형성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한국, 동남아 국가 연합6국, NAFTA 3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중국, 대만, 홍콩, 파푸아뉴기니, 칠레 등 18개 회원국으로 이루어진 APEC이 바로 그것이다.

APEC은 1989년 1월 보브호크 당시 호주 총리의 제안에 따라 한국과 호주의 주도 하에 환태평양국가간의 경제협력과 무역증진을 목표로 창설한 아·태지역 최초의 범정부간 협력 기구이다. 그러나 APEC은 창설 초기 미국의 소극적인 태도와 말레이시아의 미국 참여 반대 등으로 난항을 겪었으나 1993년 11월 제1차 시애틀 정상회담을 계기로 큰 전기를 마련했다.

그후 1994년 11월 인도네시아 보고르에서 가진 제2차 정상회담에서는 APEC회원국간 무역자유화 등을 선언한 ‘보고르 선언’(선진국은 2010년, 개도국은 2020년에 무역 및 투자자유화조치 완료)으로 시애틀 정상회담을 더욱 구체화시켰다.

특히 네번째 정상회담(1996. 11 마닐라)에서는 자유화와 경제협력을 주 내용으로 하는 ‘마닐라실행계획’을 추진하고 끝

났다. 이는 1995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3차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자유화실행계획에 따라 국별로 제출된 내용이 이번 회의에서 종합된 것으로서 APEC이 이제 막연한 목표를 내걸고 실천계획도 없는 느슨한 모임이 아니라 본격적인 자유화 추진기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즉 아·태지역 무역자유화는 논의단계에서 ‘행동단계’로 진입, 점진적 역내 무역자유화로 APEC경제의 역동성을 품안에 안을 수 있게 되었다.

아·태지역은 세계인구의 40%, 세계 GNP의 60%, 무역규모는 46%를 점하고 있어 21세기를 앞두고 가장 각광받고 있는 지역이다. APEC의 발전은 다양한 아·태지역의 경제역량을 높이고 교육, 통신기술, 산업협력의 증대로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많은 기여가 예상된다.

한편 중국, 러시아, 북한이 접경하고 있는 두만강지역은 부존자원, 산업구조, 기술면에서 상호 보완성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냉전시대의 정치논리와 열악한 투자환경을 이유로 서방기업들은 투자하기를 주저했고, 역내교역도 중·러간 국경무역을 제외하고는 크게 활성화되지 않아 동북아국가간 총교역액에서 접하는 비중이 매우 낮았다.

그러나 1989년 이후 동서냉전체제가 종식되고 접경국가인 중국, 러시아가 시장경제지향형 대외개방정책을 가속화함에 따라, 동지역이 점차 동북아지역 개발권역의 핵심지역으로 부상되었다. 이에 따라 유엔개발계획(UNDP)의 주관 하에 두만강지역개발계획(TRADP)이 추진되었는데, 동계획의 목적은 동북아국가간의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무역·투자면의 경험잠재력을 활성화함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동지역을 아시아와 유

럽을 연결시키는 중계무역기지로 발전시킨다는 데 있다.

그러나 두만강지역개발계획은 두만강 접경3국은 물론이고 한국과 일본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는 장기적 계획으로서 한국과 일본의 투자가 확대되어야 하고, 양국의 투자증가는 다른 나라들로부터의 투자를 유인하는 촉매제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무역의 확대는 주변에 생산설비의 투자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금융·관광 등 서비스산업의 급속한 성장을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두만강지역개발계획이 실현될 경우 접경3국 뿐만 아니라 몽골·한국·일본 등 동북아 6개국 모두에게 장기적 경제성장촉진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이는 남북관계는 물론 동북아지역의 정치적 불안정을 해소·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42

중국과 일본의 군사대국화 추세가 동북아 정세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동서냉전체제 붕괴 후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러시아의 위협이 감소함에 따라 미국의 역할 또한 축소되는 등 ‘힘의 공백’이 생긴 틈을 타고 중국과 일본이 역내 주도권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은 원거리 작전능력의 강화 및 신속대응군 창설 등에 진력하고 있다. 아시아지역에서 유일한 핵강국인 중국이 1989년 이래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비를 매년 10% 이상 증액해 오고 있다.

특히 지난 1991년 걸프전 이후 미국의 첨단무기에 자극받은 중국은 소련으로부터 많은 군사장비를 사들여 대부분 1950~1960년대의 노후한 중국 해방군장비는 이 때부터 대거 교체되었다. 최근 3년간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50억달러 이상의 무기를 사들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방군의 전력은 최소한 15년 이상 현대화됐다는 분석이다.

즉 중국은 50대의 러시아제 SU-27기를 사들여 공군의 원거리 작전능력을 높였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는 MIG-29와 MIG-30의 중간형인 ‘섬(殲)10 전투기’ 합작생산에도 합의함으로써 매년 50대씩 출고되면 공군의 전투력은 현재의 2배로 강화된다.

해군도 지난 1990년대 초 황색(黃色)해군에서 남색(藍色)해

군으로 전략목표를 수정, 작전반경을 원양으로 확대하고 오는 2005년까지 함재기 40대를 갖춘 4만~5만톤급 중형항모를 자체 건조하기로 했다.

특히 1995년 들어서 세차례의 핵실험을 강행한 데 이어 대륙간 탄도미사일 ‘동풍(東風) 5’ 발사실험 및 1996년 3월 대만에 대한 일련의 무력시위는 2차대전 종전 후 지속되어 온 아시아의 평화구도를 흔들고 있다.

한편 일본은 동서냉전체제가 와해됨으로써 과거 가상 적이었던 러시아(구소련)의 군사적 위협이 사실상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방대한 경제력과 첨단과학기술 능력을 바탕으로 군사대국화의 길을 걷고 있다. 일본의 이같은 군사대국화 전략은 자민당 일당지배의 ‘55년체제’ 붕괴에 따른 정치의 우경화, 균형자 없는 국제사회의 태풍이라는 세계정세 변화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특히 GNP 1% 내에서도 아시아 최고수준인 방위비와 그 뒤에 숨어있는 첨단과학기술은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가능케 하는 버팀목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군이 아닌 자위대를 가진 일본의 1996년 방위예산이 4조9천8백억엔으로 세계 4위를 기록하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절대적 방위비의 차원을 떠나서라도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향한 법적 장치로는 1992년 PKO협력법을 제정, 자위대의 해외파병길을 열었고, 1994년 이후 재외 일본인 구출을 위해 자위대기(自衛隊機)를 파견할 수 있도록 자위대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떠받치는 기반은 군사장비의 첨단화계획으로 전역(戰域)미사일 방위(TMD) 구상을 위한 민관연구회(民官研究會) 발족, 정

찰위성개발 착수, 차기다용도지원기(UX) 2기와 공중조기경보기(AWACS) 4기 도입결정, 차기수송기(CX)의 국산화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고속증식로 실용화, 핵폐기물 처리시설 완비, 다량의 플루토늄 확보 등 원자력 자급체제도 갖췄을 뿐만 아니라 고성능의 무인우주선 H2로켓 개발 등 운반수단기술을 갖춰 핵무기 개발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발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게다가 1995년 11월 19년 만에 ‘방위계획대강’을 개정하여 일본의 국제적인 군사공헌 확대를 명문화하였다. 특히 1996년 4월 「미·일안보공동선언」을 통해 일본은 일본열도 및 극동에 국한됐던 활동영역이 아·태 전역으로 확대되어 이를 뒷받침할 군사력증강작업도 본격화 될 것으로 향후 일본 자위대의 역할은 더욱 강화되어 나갈 것이다.

이렇듯 동서냉전이 와해된 이후 동북아지역은 중국과 일본의 군비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나 문제는 중·일의 군사위협을 묶어둘 만한 안전장치가 아직 없다는 점이다. 이는 주변국을 자극, 역내국가들의 군비증강으로 이어져 전세계적인 차원의 긴장완화, 화해·협력 추세와는 다른 냉전과 탈냉전적 변화가 병존하게 되는 상황이다. 특히 한반도에서는 김일성 사망과 심각한 경제난 등으로 인한 북한체제의 불안정성과 어우러져 탈냉전시대에 냉전지대화가 가속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43

북한이 미·일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관계개선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남북관계 및 주변정세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북한이 대미·일 관계개선을 적극화하게 된 배경은 1990년을 전후해서 사회주의 국가들이 몰락하였음은 물론 북한의 배후 지원세력이었던 구소련(1990. 9. 30)과 중국(1992. 8. 24)이 각각 한국과 수교를 맺음으로써 북한의 입지를 크게 좁혀 놓은 데 있다. 뿐만 아니라 구소련의 북한에 대한 군사지원 감소는 물론 대소부채(약 50억달러)를 경화(硬化)로 상환(1992. 1. 1부터)할 것을 통고하는 등 중·소의 원조가 대폭 감소됨으로써 북한경제가 결정적인 타격을 입게됨에 따라 생존전략상 북한은 대미·일 관계개선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북·미간 접촉은 1984년 9월 김일성이 대미관계 개선의 의사를 표명한 것이 계기가 되어 북경에서 미·북한간 참사관급 접촉회의가 개최된 이후 그간 33회(1988. 12~1993. 5)에 걸쳐 있었으나 북한의 핵의혹으로 진전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가 북·미 제네바 핵합의(1994. 10. 21)를 통해 단계적인 경제제재 완화와 경수로 건설지원 및 상호연락사무소 개설을 약속함으로써 북·미간 관계설정을 위한 궤도에 일단 들어서게 되었다. 그 결과 미국은 이미 통신 등 부분적 해제조치(1995. 1. 20)를 취한 바 있다. 또한 경수로 공급 협정이 타결(1995. 12. 15)되었고 KEDO와 북한간에는 경수로

공급협정 이행과 관련하여 이미 「경수로부지인수 및 서비스 의정서」에 서명('97. 1. 8)하였고, 잠수함사건으로 그간 미루어 온 제7차 부지조사단을 신포에 파견('97. 3. 1)함에 따라 미국과 북한은 금년 상반기중 동결자산 해제와 함께 평양과 위싱턴에 연락사무소 개설 등 북·미관계 개선이 진전될 전망이다.

한편 북한의 대일 수교문제는 1990년 9월 일본의 가네마루 신(金丸信, 전 자민당 부총재)을 단장으로 하는 일본의 자민·사회당과 북한 노동당과의 회담에서 김일성이 수교를 제의한 데서 시작되었다. 북·일은 1992년 11월까지 여덟차례나 북경과 동경을 왕래하면서 수교회담을 진행하였으나, KAL기 폭파범 김현희의 일본어 선생인 '이은혜문제'와 '핵문제'로 결렬된 바 있다. 그러나 1995년 3월 28일 일본연립여당 방북단은 북한노동당과 수교교섭 재개에 원칙적으로 합의를 봄으로써, 지난 1992년 11월 중단된 북·일본간 국교정상화 협상의 실마리가 풀리게 되었다. 따라서 전후배상금 문제 등의 장애가 있으나 북·일관계도 북·미관계의 진전에 따라 머지않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북한은 제3차 7개년계획(1987~1993년)의 실패와 국제적 고립, 특히 2년에 걸친 수해로 인한 심각한 식량난 속에서 생존전략상 대미·일 관계개선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대미·일 관계개선이 남북관계 및 주변정세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과 부정의 양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긍정적인 면은 남북한에 대한 교차승인이 완성됨으로써 남북평화공존이 제도적으로 정착되면 북한의 대남무력모험은 더 이

상 어렵게 될 것이며 또한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이 증대될 것으로 지금까지 노력해 왔던 우리의 평화통일정책 실현에 긍정적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남북평화공존의 정착은 자칫 분단의 고착과 장기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이다. 미·일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의 대북한 경제지원은 북한독재체제의 생명력을 연장시킬 수 있음과 동시에 이는 북한으로 하여금 남북관계의 개선에 소극적 자세를 취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같이 양 측면을 모두 고려해 볼 수 있으나 북한과 미·일과의 수교는 결국 북한이 국제사회의 개방화라는 큰 흐름의 영향을 받게 될 것임을 감안할 때 한반도 및 동북아의 긴장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V. 북한실상

북한의 권력구조 내에서 ‘수령’의 위치는 어떤 것인가?

북한 권력구조의 가장 큰 특징은 ‘수령의 유일지도체제’라 할 수 있다. 그 동안 북한에서 김일성의 절대 권력을 보장해 주던 메커니즘은 바로 ‘수령제’였다. 북한의 ‘백과전서’에 의하면 수령은 인민대중 속에서 최고의 영도적 지위를 차지하는데, 그 지위는 절대적이라고 하며, 수령은 무엇보다도 근로 인민대중의 최고 뇌수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다른 표현은 노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는 당과 혁명의 최고영도자라고 한다. 한마디로 수령은 인민대중에게는 최고 뇌수이며 당과 혁명투쟁에서는 최고 영도자이다.

그런데 수령의 지위는 당과 국가기관의 지위를 차지한다고 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수령은 인민대중에 의하여 추대되지만 그들 중에서 나온 모든 특출한 개인과는 달리 인민대중 전체의 의사와 연원, 이해관계를 대변하여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인민대중 전체를 영도한다고 한다. 그러나 사실 김일성 수령은 구소련 공산체제의 도움으로 권력을 인계받고 피의 숙청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한 것이지 결코 인민대중으로부터 추대받은 것이 아니다.

수령제도는 김일성 1인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징적 지위임에 틀림없다. 이것이 등장한 시점은 항일빨치산

파들이 숙청을 통해서 권력을 잡은 1960년대 후반, 즉 1967년 당중앙위원회 제4기 15차 전원회의에서 반당 수정주의 분파를 분쇄하고 나서 당의 영도방법을 수령의 영도방법으로 전환하게 되었다고 하는 바 이것은 북한의 권력체계가 공산주의식 당 중심의 권력체계라기보다는 1인의 전체주의적 독재 권력체계에 역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5 북한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핵심권력기관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사회주의헌법에서 보면 북한체제는 조선노동당의 영도 밑에서 모든 활동을 하는 체제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핵심권력기관은 당이 전부일 수 있다. 그렇지만 북한체제는 어느 의미에서는 특이한 체제이다. 즉 북한의 정치체제는 사회주의적 요소와 군사적 요소가 함께 작용하는 체제이다. 즉 당의 영향력과 군부의 영향력이 함께 작용하는 체제이다. 현재 김정일이 이끌고 있는 현 체제 하에서는 정치·경제·외교 등의 위기관리와 관련하여 군부 중심의 위기관리체제가 들어서고 있다.

최근에는 ‘군민일치운동’을 통해서 군사 중시 기풍을 선동하고 당정권기관의 고위인사들에게 ‘혁명적 군인정신’을 따르라고 호소하는 등 군부의 영향력이 커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체제적 성격으로 보아 권력핵심은 당과 군이 중심을 이루게 되며 집행부서인 정무원에 속한 사회안전부와 당의 지도를 받는 국가안전보위부 등 공안부서가 소홀히 할 수 없는 권력기관이라 할 수 있다.

당의 조직은 당중앙위원회가 있고 그 산하에 정치국과 비서국 당군사위원회 등 핵심기관이 있다. 이 중에서도 비서국

은 필요시, 당인사 및 당의 당면문제를 토의·결정하며 그 결정의 집행을 조직·지도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영향력이 막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김정일이 인민군최고사령관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당군사위원회의 영향력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비서국은 당내 18개 전문부서를 거의 관장하고 있다. 중요 부서장은 비서를 겸직하고 있다. 18개의 전문부서 중에서 김정일이 부장을 맡고 있는 조직지도부는 실질적 최고 조직기관으로 13개 과의 25명의 부부장을 통해 당생활 지도 및 간부들의 인사관장, 간부들의 사생활 파악을 수행한다.

군부의 권력기구는 인민무력부, 인민군 총참모부, 인민군 총정치국 등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북한은 정치군인과 야전군인이 구분되어 있다. 바꾸어 말하면 정치군관이 야전군관보다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되어 있다. 정치군관의 총체적인 기구가 인민군 총정치국이다. 당규약에 의하면 조선인민군 총정치국과 그 소속 정치기관은 해당 당위위원회의 집행기구로서 당정치사업을 조직하고 수행한다고 되어 있다. 이들 기구는 당중앙위원회에 직속으로 되어 있다. 전시체제에서는 인민무력부와 인민군 총참모부가 체제 유지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지만 평시체제에서는 당의 지도력을 투입해야 하는 만큼 인민군 총정치국이 체제 유지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

이외에 체제유지를 위한 권력기구로는 정무원의 역할을 거론할 수 있으나 핵심 공안기구로는 사회안전부와 국가안전보위부를 들 수 있다. 사회안전부는 정무원의 기구이며, 국가안전보위부는 국방위원회 소속으로 되어 있다. 사회안전부는 우리나라의 경찰기구에 준한다. 또 국가안전보위부는 우리의 안

기부와 비슷한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북한체제 유지의 핵심권력기구는 당과 군이 핵심기능을 수행하며 이에 사회안전부와 국가안전보위부는 보조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46

북한이 말하는 소위 ‘우리식 사회주의’의 특징과 문제점은 무엇인가?

‘우리식 사회주의’란 주체사상을 기초로 하여 북한의 현실을 정당화하기 위해 만든 북한 특유의 사회주의를 일컫는다. 이 용어의 연원은 이론바 “우리식 대로 살자”라는 구호에서 찾을 수 있는데, 1978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책임간부협의회에서 김정일이 “우리식 대로 살아 나가자.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당이 중요하게 내세우고 있는 전략적 구호”라고 말한 것과 관련된다. 그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 수행에서 주체사상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해 나갈 것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그후 1989년 당이론지 ‘근로자’ 10월호의 “우리식 대로 살아 나가는 것은 우리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 있는 전략적 방침”이라는 제하의 논문에서 동구에서의 민주개혁을 신랄하게 비난하면서 전체주민이 ‘우리식 대로 살아 나갈 것’을 강조했다. 그러나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김정일이 1991년 5월 5일 행한 담화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와 1994년 11월 1일에 발표한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라는 논문에서 이론적으로 정식화 되었다.

1991년 5월의 담화에서는 우리식 사회주의의 특징을 3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주체사상을 구현한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이다. 주

체사상은 노동계급의 혁명사상이며, 개인주의보다 집단주의를 강조하는 사상임을 밝히고 있다.

둘째, 집단주의에 기초한 조직화된 사회로서 정치생활과 사상생활을 중요한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특히 사회주의 사회의 사상생활은 노동계급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사상생활이며, 노동계급의 완성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상생활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수령·당·대중이 일심단결된 불패의 사회주의이다. 인민대중은 사회를 건설하는 주체이긴 하지만 당과 수령의 ‘두리’에 하나로 굳게 단결하여야 혁명의 주체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사회주의는 과학이다”에서 현재 사회주의의 좌절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는 그 과학성으로 인해 결국 승리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선행 사회주의 이론은 주로 물질경제적 요인에 의한 변화발전을 주장하였는 데 반해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의 주동적인 작용과 역할에 의하여 발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둘째, 사람을 육체적 생명과 사회정치적 생명을 가진 존재로 규정하고 전자보다 후자를 더 중요시 여겨야 한다고 강조한다.

셋째, 능력 있는 지도자보다 인덕 있는 지도자를 더 강조하여 김정일을 인덕 있는 지도자로 선전하고 있다.

한마디로 주체사상에 바탕을 둔 북한식 사회주의는 정치적·이념적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일반 당 중심 사회주의보다는 수령 1인 중심의 전체주의 성격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경제위기에 처한 북한의 생존전략을 현실적으로 제약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식 사회주의’의 고수라는 점은 궁극적 승리를 장담하는 우리식 사회주의의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47

동구사회주의권 및 소련 붕괴이후 북한의 통치이데올로기 변용의 배경과 내용은 무엇인가?

해방 후 소련군 점령하에서 출범한 북한정권의 당초 통치 이념은 마르크스 - 레닌주의 였다.

그러던 북한이 ‘주체’의 문제를 처음 제기한 것은 1955년 12월 28일 당 선전선동원대회에서 행한 김일성의 연설이다. 김일성은 1953년 이후 전개된 대내외적 도전에 직면하여 ‘주체’의 확립문제를 내세워 국내적으로는 정치적 반대세력들을 숙청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주체’의 확립문제는 1955년부터 김일성에 의해 대내외정치에 이용되었으나, ‘주체사상’이란 말이 국가차원에서 다루어진 것은 1967년 12월 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1차회의 이다. 그후 북한은 1970년 제5차 당대회와 1980년의 제6차 당대회를 거치면서 오직 김일성의 ‘주체사상’만을 공식 이데올로기로 채택하였다.

하지만 ‘주체사상’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한 것은 1982년 3월에 발표한 김정일의 논문 ‘주체사상에 대하여’에서 이다. 이미 1970년대에 김일성은 “주체사상이란 한마디로 말하여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사상”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가

되려면 반드시 수령과 당의 영도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덧붙인 점이다. 주체사상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북한의 이데올로기적 당면목표는 김일성 우상화를 통한 수령통치의 정당화와 ‘자립적 민족경제건설’을 위한 인민의 노력동원에 주안점을 두었다.

그러나 북한은 1980년대부터 대내외적으로 체제변화의 압력에 직면하게 되었다. 대외적으로는 1979년부터 시작된 중국의 개혁·개방정책과 1985년부터 고르바초프가 주도한 페레스트로이카라는 개혁정책이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왔다. 더욱이 1989년부터의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는 북한 지도부에 대단한 충격을 주었으며, 특히 북한의 대외경제협력관계까지 와해시켰다. 그 결과 북한은 1990년 이후 계속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기록하여 경제난과 함께 체제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따라서 북한은 1980년대 중반이후 종래의 ‘주체사상’체계를 두가지 측면에서 변용시켜 사상적 방벽을 쌓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사회정치적 생명체론’과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 김정일이 1986년 7월 15일 담화에서 밝힌 사회정치적 생명체 이론의 핵심은 바로 혁명적 수령관이며, 핵심적인 내용은 수령－당－대중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생명을 가진 유기체라는 것이다.

둘째, 1980년대 말에 이르러 동구 사회주의가 몰락하기 시작하자 북한은 ‘우리식대로 살자’는 구호를 대대적으로 내세

우면서 이른바 ‘우리식 사회주의’를 1991년 5월 5일의 김정일 논문을 통해 정식화해 나갔다.

결국 ‘사회정치적 생명체론’과 ‘우리식 사회주의’는 동구 사회주의권의 변혁·붕괴과정을 목격한 북한이 체제고수를 위해 변용한 이데올로기에 불과한 것이다.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이 수령 중심의 집단주의 또는 전체주의를 강조하여 사회 결집을 꾀한 주장이라면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인민대중 중심적 관점을 강조하면서 ‘인덕정치’를 표방하여 주민들을 위무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와중에 북한은 김일성의 사망(1994. 7. 8)까지 겹쳐 경제난이 가중되는 가운데 체제유지가 더욱 심각한 곤경에 처하게 되었다. 따라서 북한은 ‘유훈통치’를 하는 실정이며 김정일은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등의 논문을 연이어 발표, 통치위기 상황에 대처하려 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김정일은 1995년 8월 28일의 노동신문 논설을 통해 이른바 “붉은기 철학”을 새롭게 내세워 주민들의 사상교양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김정일 중심의 단결과 사회주의체제 수호를 선동하고 있다.

이어 북한은 1997년 3월 17일 “우리는 승리한다”라는 노동신문 정론을 발표, 『지원사상』(김형직) → 『주체사상』(김일성) → 『붉은기 사상』(김정일)의 발전단계의 ‘틀’을 마련하여 강조하고 있다. 이는 김일성부자의 가계미화를 통해 김정일의 권력승계 정당성을 부각시키고 이른바 김정일시대의 역사적 당위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

이와 같이 북한당국은 정권수립 이후 지금까지 매번 그때

그때의 정치환경 변화에 따라 통치 이데올로기를 변화시켜
운용해 왔다. 따라서 북한이 새롭게 해석하고 있는 변용된 통
치이념은 그들이 처한 정치적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48

김일성 사망 이후 김정일의 통치이념은 무엇이며, 그의 리더십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가?

김일성 사망 이후 김정일은 1994년 11월 1일 “사회주의는 과학이다”에서 그의 통치노선을 밝혔다. 이 논문에서 사회주의 정치는 본질에 있어서 인덕정치라고 하며, 참다운 인덕정치를 실현하자면 인민에 대한 사랑을 지닌 정치지도자를 내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정일은 이 논문에서 정치지도자를 2가지로 구분하여 ‘능력이 있는’ 정치지도자와 인덕이 있는 정치지도자를 언급한다. 전자보다도 후자를 더 높이 평가하고 있다. 즉 “사회주의 정치지도자가 능력이 부족하면 사회주의 사회의 발전을 지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인덕이 없으면 인민을 배반하여 사회주의를 망하게 하는 결과까지 가져올 수 있다”고 한다. 현재 김정일의 리더십의 특징을 ‘인덕정치’로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선전술에서 보면 단천의 철광산에서 안전사고로 부상당한 노동자를 치료케 했다는 것, 노인들에게 환갑상·생일상을 차려준 일, 복잡한 계층에 속한 어떤 지식인을 차별없이 보살펴 준 사례들을 열거하면서 사랑과 믿음의 정치를 선전하고 있다. 또한 정치가 폭이 넓지 못하면 각계각층 균형을 다 포섭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광폭정치를 운운한다.

광폭정치는 북한의 복잡계층의 이탈을 막고 체제결속을 다지기 위한 수단으로 강조되고 있지만, 이로 인해서 출신배경을 따지지 않고 현재의 사상과 행동을 중요시함으로써 또다른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즉 내부결속을 위해 계급노선을 완화함으로써 복잡계층 내에서의 이탈자 증가와 같은 역기능이 예상된다.

김정일이 리더십에서 ‘인덕’을 제일의 가치로 강조하는 것을 보면 김정일은 김일성과 같은 대중적 인기를 유도하는 활달하고 대중적 지도능력은 없는 것 같다. 즉 김정일은 세습체제에서 권력을 물려받을 장자로서 권력세습자에 불과하다.

앞으로 김정일의 리더십은 정치적 이상화보다는 경제난을 해결하여 명실상부한 인덕정치를 해야만 확고하게 자리잡을 것이지만 그것이 용이하지는 않을 것이다.

한편, 1995년 8월 28일 노동신문 정론에서 김정일이 자신의 논문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를 가리켜 “나의 사상이 붉다는 것을 선포한 것”이라고 발표한 이래 ‘붉은기사상’은 1996년, 1997년 신년사에서 ‘승리의 표대’로서 강조될 정도로 새로운 통치이념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이 위기에 직면하여 과거 해방 직후에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을 전개해 나갔던 것처럼 붉은기사상총동원운동을 통해 혁명적 분위기를 고조시켜 사회주의를 고수하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북한의 공무원 채용방법과 대우는 어떠한가?

북한은 노동력동원계획에 따라 정무원 노동행정부에서 인력수급을 확정하여 해당 인력을 각 분야별 수요대로 할당·배치한다. 사회주의헌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만, 본인의 희망과 재능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과 정권기관의 조정·통제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직업선택의 자유는 없다.

결국 공무원의 채용방법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북한에서 특별히 공무원이란 별다른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와 같이 공무원과 일반 기업체의 회사를 구분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해당자의 채용 여부는 해당 직장의 당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성분과 당성이다. 그리고 정치적 신임도 역시 중요하다. 학력, 자격, 실무능력, 활동력 등이 고려되기는 하나 부차적이다. 즉 북한에서 관료층원의 원칙은 정치적 기준 70%, 실무적 기준 30%라는 비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공직의 주요부서에 채용될 대상자에 대한 성분검사가 까다롭고 매우 복잡하다. 그리고 중요기관의 책임자에 대해서는 당중앙위 비서국이 인사권을 행사한다.

북한에서 대학졸업생들이 제일 선호하는 직업은 외교관이

나 무역일꾼이다. 다음으로 선호하는 직업은 권세를 누릴 수 있고 권한과 혜택이 뒤따르는 당간부, 행정간부 등이다. 대학 졸업생의 직장배치는 대학 간부과에서, 전문대학졸업생은 각 도의 노동처에서 전담한다.

북한의 행정사무원들은 고정월급제에 의해 생활비를 지급 받는 데 기술직보다 액수가 적다. 왜냐하면 공장·기업소의 생산노동자들은 도급임금제에 의해 생활비를 지급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액임금은 당·정기관, 사회단체의 행정사무원들에게 적용되며, 도급임금은 협동농장원, 건설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 적용된다.

남북한 행정구역을 비교하면 어떠한가?

통일원이 발간한 ‘남북한 경제지표’(1995)에 의하면 남한의 영토는 99,392km²이고, 북한의 영토는 122,792km²이다. 그리고 남한의 인구는 44,453,000명이고, 북한의 인구는 22,953,000명이다. 즉 영토는 남한보다 북한이 다소 큰 반면, 인구는 남한이 북한보다 약 2배 정도 많다.

남한의 행정구역은 문민정부 출범 이후 지방자치시대에 알맞게 개편하여 ‘직할시’를 ‘광역시’로 개정하였고, 시·군통합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1특별시, 5광역시, 9도, 72시, 93군, 65자치구, 25일반기, 194읍, 1,235면, 2,349동, 97,577리(동)로 편성되었다.

반면 북한의 행정구역은 광복 이후 40여 차례에 걸친 개편을 통해 조정되어 현재에는 1특별시, 3직할시, 9도, 24시, 36구역, 148군, 3,322리, 892동, 256노동자구로 편성되었다.

북한의 행정구역 개편을 보면 1946년 ‘평양시’를 ‘평양특별시’로 승격시켰고, 경기도 연천군 일부와 함경남도의 원산시, 문천군을 분리시켜 일부 강원도 지역과 통합하여 ‘강원도’를 道로 편성하였다. 또한 1949년 평안북도의 강계, 자성, 후창, 위원, 초산, 회천군과 함경남도의 장진군 일부를 통합하여 ‘자강도’를 신설하였다. 그리고 1954년 함경남도 1시, 8군과 함경북도 백암군과 자강도의 후창군을 분리·합병하여 ‘양강

도'를 신설하였고, 황해도를 남북도로 분리시켰다. 한편 1955년 개풍군, 관문군을 개성시에 통합하여 '개성직할시'로 승격시켰고, 1980년 대안시와 용강군을 남포시에 편입시켜 '남포직할시'로 승격시켰으며, 1996년 선봉시를 '선봉직할시'로 승격시켰다.

이와 같은 북한의 행정구역 개편은 중앙집권제를 강화하여 사회주의적 통제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며, 행정구역의 수를 남한과 같은 수로 늘려놓음으로써 남북협상을 통한 남북한 총선거가 실시될 때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의 행정구역 개편에서 특이한 것은 과거의 행정구역 이름이 새로운 이름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이다. 즉 김일성·김정일의 우상화를 위하여 이들과 관련된 명칭과 가계인물들의 이름이 들어간 곳이 무려 100여개나 된다.

그 실례를 구체적으로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양강도 신파군을 '김정숙군(1981)'으로 바꾸었고, 양강도 후창군을 '김형직군(1988)'으로 바꾸었으며, 풍산군을 '김형권군(1990)'으로 바꾸었다.

그밖에도 함경남도 오로군을 '영광군'으로, 퇴조군을 '낙원군'으로 바꾸었고, 함경북도 경흥군을 '은덕군'으로, 경원군을 '새별군'으로 바꾸었다.

또한 '한은동', '새살림동', '은덕동', '충성동', '새날동', '붉은거리동', '해방산거리', '승리거리', '혁신거리', '통일거리', '영웅거리', '광복거리', '주체사상탑거리' 등 동명과 거리명도 무수히 바꾸었다.

51

현재 북한에서 행정관료 등의 전문기술관료에 비해서 군부의 입김이 더 세는데 그 실상은 어떠한가?

김일성 사망 이후 북한지도부는 생존전략을 추진하는 방법론상의 차이로 인해 이른바 개방개혁파와 군부강경파로 대별되어 왔다. 권력구조의 차원에서는 현재 북한이 국가주석과 당총비서를 공식으로 남겨둔 상태에서 군부를 중심으로 한 위기관리체제를 강화했다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군부의 영향력이 강화되었다는 징후는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1996년에 조선인민군 창건일을 국가적 명절로 격상시킨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1996년 6월 3일 노동신문 정론에서 “혁명은 총대로 고수되고, 총대는 필승을 담보…주체의 혁명적 무장력이 주체혁명 위업을 완성”한다고 주장하는 것에서 군의 역할, 기능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1996년 10월 22일 중앙방송을 통해 ‘사상사업의 중요성’을 역설함으로써 사회주의에 대한 배반과 그로 인한 체제붕괴를 경계하는 데에서도 혁명적 경각성을 촉구하는 군부강경파의 확고한 위상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제를 군부통치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비록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서의 김정일이 통치하고 있지만 조선노동당이 정책결정의 핵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당이 지배하는 사회다. 그 중에서도 정치국과 비서국은 권력

의 핵심을 이룬다. 정치국이 당의 모든 정책을 수립하는 절대 기구인 데 반해 비서국은 당 중앙위원회의 각 부서를 일상적으로 지휘·감독함으로써 실질적인 당의 지도와 통제를 수행한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의 정책결정은 군부의 입장 외에 당과 정권기관의 협조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권력의 서열상으로는 정권기관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무원은 방대한 국가관료기구라는 점과 구성원들의 전문성 등으로 인해 북한의 위기타개를 위해 그 역할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예컨대, 대외정책을 수립할 경우 군부와 외교부간에 불협화음과 갈등은 존재하지만 일단 정책결정이 된 후에는 상호협조해 나간다. 북한의 권력엘리트는 군부나 정권기관 등으로 구분된다기 보다는 당, 정, 군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김정일의 측근실세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와 교화소의 실태는?

최근 북한을 탈출한 주민들의 증언과 유엔인권단체 등의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에 수많은 정치범들이 인간 이하의 생활로 학대받는다라는 사실이 드러나서 국제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들의 정보자료에 따르면, 북한에는 정치범들을 수용하기 위해 함경남북도, 평안남북도, 자강도 등지에 10여 곳의 특별독재구역을 설치·운영하는가 하면 각 도·시·군별로 소위 교화소를 두고 정치범을 억류,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 수용소에 억류된 인원은 대략 20여만명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같은 수용시설은 북한의 철저한 통제와 수시 통폐합 등으로 정확한 시설규모나 인원을 알 수 없는 점이 문제이다.

어쨌든 북한에서는 일정한 법적 절차(재판)를 거치지 않고 집단으로 사회와 격리, 관리하는 곳을 ‘00호 관리소’ 또는 ‘특별독재대상구역’이라 하며, 여기에 수용된 사람들은 형기도 없이 인간 이하의 대우로 처참한 생활을 강요 당하고 있다.

그리고 일정한 법적 절차(재판)를 거쳐 형의 확정판결에 의해 수용하는 시설을 ‘교화소’라고 하며, 이 가운데 죄목의 성격과 형기 등을 고려하여 ‘69호 노동교화소’, ‘노동교화소’,

‘교화소’, ‘정치범교화소’, ‘49호 보양소’, ‘149호 대상지역’ 등으로 구분한다. 단순범죄자로서 1~2년 형기의 죄수는 ‘69호 노동교화소’에 수용되며,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은 자들은 ‘교화소’ 또는 ‘정치범교화소’ 등에 수용되고, 단순히 체제불평·불만 등 적응이 어려운 대상은 ‘49호 보양소’에 격리 수용된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형의 기간이 있다는 이외에 열악한 처우면에서는 특별독재대상구역의 경우와 크게 다를 바 없다고 한다.

53

북한에도 재판제도가 있는가? 있다면 그 절차는?

북한 헌법 제155조에는 재판소의 임무에 대해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계급적 원수들과 온갖 법위반자들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한다”, 제165조에는 검찰소의 임무에 대해 “범죄자를 비롯한 법 위반자를 적발하고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것을 통하여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 단체 재산, 인민의 헌법적 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두 조문을 살펴보면 북한의 재판 및 검찰기관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보다는 당의 정책과 노선을 보위하고 1인 독재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서 더욱 중요하게 역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단 재판소가 검사로부터 사건을 받으면 1개월 안으로 재판(북한 형사소송법 제189조)하여야 하며, 재판장 1인과 인민참심원 2인으로 구성된 재판소에서 재판서기와 검사가 참가한 가운데 재판준비회의를 개최하여 기소내용의 타당성, 형법 적용의 적절성 등을 검토한다(동법 192조). 이 회의에서 판사가 사건보고를 한 후에 검사의 의견을 듣고 다수가결의 방법으로 관정을 한다(동법 제193조).

원칙적으로는 인민재판소의 재판에 대해 도(직할시)재판소에 상소, 항의, 항고할 수 있는 3급2심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일단 공소가 제기된 자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 게 통례이다.

54

생산수단의 국가 및 협동적 소유를 기본원칙으로 하는 북한에서 개인소유가 인정되는 재산의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

북한의 소유제도는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의 기초가 된 생산수단과 생산물의 전사회적 또는 집단적 소유”라고 하는 사회주의적 소유형태를 특징으로 한다. 전인민적 소유는 국가소유의 형태로 나타나며 자연자원의 전부, 공장기업소의 절대다수, 운수, 은행 및 체신기관의 전부, 상업수매기관의 기본부분, 도시와 노동자구의 기본적인 주택이나 공공시설 그리고 국가기업소의 생산물 전부 등이 전인민적 소유에 속한다.

협동적 소유는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체제로의 과도기에 발생하는 사회주의적 소유의 한 형태이며, “당과 국가의 지도와 방조 밑에 농민과 수공업자, 그리고 중소상공업자들이 그들의 사적 소유인 생산수단”을 통합하여 형성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북한에서도 극히 제한적이거나 개인소유가 인정되고 있다. 북한의 개인소유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의 토대에서 발생한다고 하여 ‘사회주의에서의 개인소유’라고 강조한다. 따라서 개인소유의 대상은 근로자들이 받은 임금이나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받는 분배료와 그것으로 구입한 소비품들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근로소득과 저축, 가정용품, 일상소비품 등이 개인소유의 대상에 포함된다. 협동농장원들

의 ‘부업경리의 생산물’과 그 생산을 위한 약간의 소농기구들도 개인소유가 허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개인소유물은 그 소유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상속권도 인정하고 있다. 북한의 각종 수매기관과 농민시장은 개인소유물을 처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로 이용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의 화폐금융제도는 어떠하며 화폐는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가?

실물공급경제인 북한에 있어서 화폐·금융부분은 재정의 한 부분으로서 올바른 독립채산제 시행을 위한 감독 등 재정통제적인 기능이 매우 강한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재정부분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렵다. 북한의 화폐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일반화폐’와 무역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와 바꾼 돈표’ 등 2가지로 구분된다.

일반화폐는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화폐이고, 외화와 바꾼 돈표는 외국인 외화를 북한 내에서 사용할 때 바꾸어 주는 교환용 화폐이다. 북한에서는 외화를 직접 사용할 수 없다. 일반화폐의 종류는 1원, 5원, 10원, 50원, 100원 등 지폐 5종류와 1전, 5전, 10전, 50전, 1원 등 주화 5종류로 구분된다.

북한은 화폐에 대해 “상품세계에서 모든 상품들의 가치를 표현해 주고 교환을 중개해 주는 일반적 등가물의 역할을 하는 특수한 상품”으로 정의하고 가치척도와 유통수단, 축재수단, 지불수단 등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북한의 가격체계 자체가 국가에서 경제부문별 균형유지를 위하여 정책적으로 결정하고 있으므로 실제의 가치를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유재산제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화폐의 가치척도기능이나 축재기능은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하겠다.

북한에서 금융이란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화폐자금의 유통”을 말하며 지역적 범위에 따라 국내금융과 국제금융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금융의 주임무를 맡고 있는 은행들이 화폐자금의 수입과 공급과정에서 기관·기업소를 강력히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은 오히려 재정의 한 부분으로서 재정 통제적 기능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56

북한의 협동농장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결산분배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북한의 협동농장은 토지 및 기타 생산수단들을 통합하여 농민들의 공동노동에 의한 농업생산 활동의 기초단위로서, 행정구역상의 리(里)·동(洞) 단위로 구성되어 있고, 군(郡)협동농장 경영위원회의 지도·통제 아래 약 80~500정보의 농경지를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매 가구마다 부업차원에서 개간하여 생산하는 텃밭이 대략 30~50평 정도 씩 허용되어 있으나 이는 협동농장과는 별개이다.

북한 협동농장의 연간 결산분배는 협동적 토지소유제에 기초한 “농업의 협동적 경리(경영)에서 개인적 소비품의 분배과정을 동반하는 연간사업의 결산”이라고 설명되고 있다. 이는 북한 특유의 소득분배 방식이다. ‘기본적 분배방식’에 따르면 연간 총생산량 가운데 국가납부와 생산적 지출(생산비) 및 공동 축적기금을 먼저 공제한 다음 농장원 각자의 연간 ‘노력점수’에 따라 분배품(현금·현물)을 책정하게 된다. 여기에서 ‘노력점수’는 협동농장의 ‘기준작업정량표’에 의거한 ‘노력일수’와 작업내용에 책정된 단위점수로 산정한다. 예를 들어 작업내용이 종자파종이면 1점, 살충제 살포이면 1.25점, 모심기면 1.5점 등으로 설정하고, 이에 따라 작업일을 평가하여 점수를 산출한다. 또한 분배품 중 연간 소비량을 초과하는 곡

물은 국가에서 ‘국정수매가격’으로 거두어들인다. 협동농장원에 대한 분배결정 방법은 ①기본적 분배, ②작업반 우대제 실시 하의 분배, ③분조도급제 적용시의 분배 등으로 구분되는 바, 각 분배방식의 분배공식은 다음과 같다.

○ 기본적 분배공식

$$\text{개인분배량} = \frac{\text{총생산량} - \text{총공제량}}{\text{전체농장원의 노력일 총수}} \times \text{개인별 연간 노력일}$$

○ 작업반 우대제 분배공식

$$\text{개인분배량} = \frac{\text{기본 분배몫 총량}}{\text{전체농장원의 노력일 총수}} + \frac{\text{작업반 우대몫 총량}}{\text{작업반 노력일 총수}} \times \text{개인별 연간 노력일}$$

○ 분조도급제 분배공식

$$\text{개인분배량} = \frac{\text{기본 분배몫 총량}}{\text{재평가된 농장원 노력일 총수}} + \frac{\text{작업반 우대몫 총량}}{\text{재평가된 작업반 노력일 총수}} + \text{분조원개인 노력일수} \times \frac{\text{분조계획 노력일}}{\text{분조 전체 노력일 실적}}$$

$$* \text{재평가된 노력일수} = \frac{\text{노력 실제투입 계획일수}}{\text{실제 노력투입 실적}} \times \text{노력일 총수}$$

이와 같은 분배는 공히 생산계획 목표의 90% 이상 달성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량에 미달된 경우 기본적인 분배액에서 5~15%를 삭감하도록 되어 있다.

협동농장의 결산분배 시기는 일반적으로 추수와 탈곡이 끝날 시점에 실시되며, 결산시 공제되는 항목과 그 구성비중은 다음과 같다. 생산비는 총생산액의 28.7%~32%로서 증자대(2~3%), 사료대(0.7~1%), 비료대(2~4%), 농기계 사용료(7%), 관개수로 이용대(7%), 농기구 구입비(10%) 등이다. 그리고 공동축적기금은 협동농장 시설확장비용으로서 10% 정도를 공제하고 공동소비기금으로 사회문화기금(10%), 원료기금(3%) 등이다.

57

북한의 농업관리에서 분조관리제 등 여러 가지 관리운영제도가 있는데 그것들이 갖는 의미는?

북한은 최근 농업 생산의 증대를 위하여 분조계약제를 채택해서 실시하고 있다. ‘분조’란 협동농장의 작업 단위로서 평균 10~25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원래 북한은 협동농장을 중심으로 한 집단농업체제를 구축하면서 작업반, 분조, 작업조로 이루어지는 생산의 기본단위를 구축하였다. 작업반은 약 50~100명, 작업조는 4~5명 정도로 구성되었는데 분조는 중간수준의 생산단위에 해당하였다.

북한은 1966년부터 분조관리제라는 것을 채택하여 운영하여 왔다. 이 제도 채택의 주요 취지는 분조에 일정한 토지와 농기구 및 노동력을 고정배치하여 분배를 그 토지의 생산성과 연결시켜 실시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일정단위의 토지에 분조로 구성된 노동력을 고정배치하여 농업에 대한 농민의 책임과 인식을 제고시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민의 생산성을 높여 농산물의 생산증대를 이룩하자는 데 주요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 당시의 분조관리제 주요 역할은 실질적으로 농민의 집단생활을 강화하여 공산주의 사상을 교육시키고자 하는 데 두어져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생산의 기층단위와 생활의 기층단위를 일치시켜 정치사상 사업과 경제활동을 결합

하고 나아가 농민을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시켜 혁명화, 계급화 과정을 촉진시키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다.

이처럼 분조관리제가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사회주의의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활용이나 농민의 생산성 향상과는 무관한 제도로 변질되었다. 이는 곧 북한의 구조적인 농업 침체를 가져오는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로 작용하게 되었다.

최근 북한이 겪고 있는 식량난은 연속된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이러한 협동농장관리운영에 있어서의 분조관리제가 지닌 구조적인 모순에도 상당히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 당국은 심각한 식량난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 중의 하나로 1995년부터 분조관리제가 지니고 있었던 문제점을 타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분조관리제를 개선하여 해당 협동농장 관리기구와 분조단위로 책임생산량을 계약한 이후 생산을 추진하며 초과생산분은 해당 분조가 자체적으로 분배하거나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개선내용은 농업생산물의 초과생산분에 대한 분배 및 판매의 권한을 분조단위에 귀속시킴으로써 농민의 물질적인 욕구를 자극하여 농업생산 증대를 기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분조관리제의 개선도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분조단위가 상위 관리기구와 체결한 계약 생산량 달성조차도 어려운 실정이고, 나아가 농산품 자유거래시장도 발달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비정상적인 통로를 통한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농민의 생산증대 의욕 자극이나 토지의 효율적 사용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58

북한이 식량난을 겪고 있는 근본원인은 무엇이며 향후 식량문제의 해결전망은 어떠한가?

북한은 제2차 7개년 계획기간의 마지막 해인 1984년에 알곡, 1,000만톤을 생산한 것으로 대내·외에 발표했다. 그리고 제3차 7개년 계획기간(1987~1993년)에는 1,500만톤(미곡 700만톤, 기타 잡곡 800만톤)을 생산한다는 계획이었는데, 그 성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미발표 상태이다. 그러면서도 최근에 와서 극심한 식량난에 봉착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동안 북한의 각종 통계자료의 발표와 계획이 얼마나 허구였는가를 잘 나타내 주는 사례라고 하겠다.

북한의 총경지면적은 197.4만정보로 그 중 논은 31.1%인 61.4만정보, 밭은 68.7% 136만정보로 대체로 지세가 험준하고 평야지대가 협소할 뿐만 아니라 연평균기온도 남한지역보다 낮기 때문에 농업의 입지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식량부족문제는 이와는 다른 근본적인 원인에 기인하고 있다.

그 주요 원인으로서는 첫째, 공산주의 집단영농체제로부터 출발한다고 하겠다. 즉 북한의 주식인 벼, 옥수수의 육종수준이 세계적인 수준이면서 생산량이 그토록 낮은 것은 다름아닌 개인영농체제가 아닌 집단영농체제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비료, 농약, 농기계 등 농자재의 부족현상을 들 수 있다. 1970년대까지만 하여도 이들 물량이 그런대로 각 농장마다 공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1980년대에 진입하면서 전반적인 산업의 위축과 함께 유류 부족에 따라 관련 공장들의 가동률 하락으로 거의 생산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나아가 경화부족으로 외국으로부터 비료, 농약, 농기계 등을 수입도 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셋째, 소위 ‘주체농법’이 북한농업을 망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주체농법은 김일성 교시에 의한 교조주의적 생산방식으로 농촌현장지도에 대한 김일성의 훈시에 불과하다. 주체농법의 주요내용은 한정된 토지에 수확량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밀식재배와 다락밭 조성정책인데, 동정책으로 논밭 경작지에 토사가 유입되어 작물피해와 경작지 관리보수에 많은 노동력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주체농법이 북한의 농업을 망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의 곡물생산량은 1990년대 이전까지만 하여도 500만톤을 상회하였으나(1989년 548.2만톤), 1990년도 이후 계속 감소하여 1996년에는 369만톤에 불과하였다. 이는 북한의 1997년 곡물 총수요량을 673만톤으로 추정할 경우 북한이 그 동안 ‘하루 두끼먹기 운동’을 실천하여 약 100만톤 정도를 비축해 두었다고 할지라도 약 204만톤의 곡물이 부족하게됨을 의미한다.

특히 북한은 1990년대 이후 구소련의 해체와 공산권의 개혁·개방으로 사회주의권 시장의 상실과 기존의 식량공급의 대부분을 접하고 있던 러시아와 중국의 경화결제 요구로 인한

외화부족으로 저렴한 식량 공급체제가 붕괴됨으로써 식량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더욱이 1996년까지 2년간 연속된 대홍수 피해로 1997년의 식량사정은 최악의 상태에 직면하리라고 예상된다. 따라서 북한은 서방으로부터의 식량도입·원조에 의지하기보다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향에서 개혁·개방을 통해 식량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59

북한의 경제가 7년 연속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제난의 근본원인은 무엇이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북한의 경제정책은 무엇인가?

북한경제는 1990년도 이후 7년 동안 연속적인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어 빈사상태에 있다는 것이 북한경제 전문가들의 일치된 시각이라고 하겠다.

한국은행이 그 동안 추정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경제는 1990년대 이후 1995년까지 6년 연속 성장이 후퇴했다. 즉 북한경제는 지난 1980년대까지만 하여도 2~3%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해 왔으나, 1990년 이후 내리막길로 접어들기 시작했다. 즉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1990년 - 3.7%, 1991년 - 5.2%, 1992년 - 7.6%, 1993년 - 4.3%, 1994년 - 1.7%, 1995년 - 4.6%로 계속해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북한경제가 이와 같은 파탄상태에 이른 것은 여러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구조적 모순의 누적 때문이라고 하겠다. 즉 주체경제라는 미명 아래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체제를 지속시키는 등 많은 구조적인 문제들을 야기시켰다.

둘째, 무력증강을 위해 군수분야에 집중투자함으로써 경제전반에 걸쳐 심각한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였다.

셋째, 동구권과 소련의 붕괴 등 사회주의 경제권의 퇴조가

큰 영향을 미쳤다.

넷째, 폐쇄경제체제로 인한 기술의 낙후 및 생산설비의 노후 등을 들 수 있다.

북한은 이러한 심각한 경제난 타개를 위하여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의 창설 및 완충기 경제전략으로 농업·경공업·무역제일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개혁·개방 없이는 현재의 심각한 경제난을 타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60

북한의 경제개방과 관련 외자유치를 위한 조치는 어떤 것이 있으며 앞으로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 되리라고 보는가?

북한은 현재의 심각한 경제난을 타개하고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1991년 12월 28일 정무원 결정 제 74호로 나진·선봉지역 621km²일대를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설정하고 나진, 선봉, 청진 3개항을 자유무역항으로 지정·발표하였다. 그후 북한은 1993년 중국의 경신평원과 연결되는 원정리 일대 125km²를 추가 편입시킴으로써 동면적을 총 746km²로 확대하였다.

북한은 동계획의 적극적 추진을 위하여 정무원의 대외경제위원회 산하에 개발추진 창구로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위원장 김정우)를 신설하여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개발과 관련한 제반업무를 총괄케 하고 있다.

북한당국은 동계획을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하되 사회간접자본시설부문, 공업부문, 관광·서비스부문, 도시정비부문 등 4부문으로 구분하여 약 47억달러를 들여서 동지역을 국제화물의 중계기지, 가공수출 위주의 제조업기지, 국제적인 관광기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종합적인 기능을 갖춘 자유경제무역지대로 가꾼다는 구상이다.

북한은 동지역의 자본유입과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20여가지 이상의 외국인 투자유치관련법령 들을 제정 및 개정하였

는데, 북한의 외국투자유치관련 법체계는 ‘외국인 투자법’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북한이 지금까지 추진해 온 외자유치관련 법령의 대대적인 정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법령의 모호·경직성, 인프라 구조의 낙후 등 미흡한 부분들이 상존하고 있어 투자환경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당분간은 북한 내부의 정치적인 불안전성과 낮은 대외신용도, 투자여건의 미비 등으로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되기 위하여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61

북한이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설치하여 외국자본을 유치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북한의 투자유치 실적 및 전망은 어떠한가?

1993년 3월 북한의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 입안한 ‘나진·선봉지대 국토건설총계획’에 따르면 동지역을 3단계를 나누어 개발할 계획이다. 제1단계(1993~1995년)에서는 이 지역을 국제화물 중계기지로 육성하기 위한 인프라시설을 정비하고, 제2단계(1996~2000년)에서는 수출주도형 제조업에 외국인 투자를 본격 유치하고, 제3단계(2001~2010년)에서는 중계무역, 수출가공, 금융 등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국제교류의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나진·선봉지대와 청진항 개발을 위해 총투자규모 약 47억 달러의 사업을 외자유치를 통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나진·선봉지역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핵문제, 북한정세에 대한 불안감, 사회간접자본시설 미비, 각종 편의시설과 문화공간의 결여 등으로 매우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북한은 1996년 2월 일본에서 개최된 ‘96 니가다 동북아경제회의’에서 나진·선봉지역의 투자계약실적은 33건, 3억5천만 달러이며, 실제 투자금액은 2,000만 달러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1996년 11월의 ‘일본 동경투자설명회’에서는 계약실적 49건, 계약금액 3억5천만 달러, 실제이용액은 22개 투자사업에 3,400만 달러라고 주장하였다.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가 설정된 이래 계약된 금액과 실제이용액 모두 큰 성과라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실제 이용액이 계약액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어서 계약 이행률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투자계약이 실질적으로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가 내재되어 있었음을 의미한다. 1996년 9월의 나진·선봉 국제투자포럼에서는 6개 투자프로젝트가 체결되어 2억 8,600만 달러 규모가 계약되었는데, 지금까지의 선례로 본다면 이러한 계약실적의 실행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계약내용을 보면 투자계약의 2/3가 홍콩 앰페러집단의 오성호텔 건설 및 은행설립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투자의 실질적인 성공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제조업투자는 극히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62

북한은 대외무역 부진으로 외화난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북한의 대외 무역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무역제일주의'를 관철하기 위한 정책은 무엇인가?

북한은 지금까지 대외무역을 자급자족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간주해 왔다. 따라서 수입에 필요한 외화획득을 위해 수출을 추진하는 등 대외교역을 국가계획과 통제에 따라 소극적으로 임해 왔다. 그러나 1989년 이후 동구와 구소련의 붕괴에 따른 사회주의권 시장의 상실과 중국, 소련이 과거의 구상무역체계 대신에 현금, 즉 달러에 의한 경화결제를 요구함으로써 북한의 무역은 심각한 타격을 입기 시작하였다.

1995년 북한의 무역총액은 20억5천만 달러(수출 7억3천만 달러, 수입 13억1천만 달러)로 1990년 북한의 무역총액 46억4천만 달러에 비해 절반 이상이 감소하였다. 이러한 무역의 격감은 외채의 누증현상을 초래하여 1995년의 경우 북한의 외채총액은 118억3천만 달러로 1995년 경상 GNP 223억 달러의 약 48%를 접하게 되었다.

따라서 북한은 과거의 자력갱생의 보조수단으로서 무역 개념 대신 1992년 북한 사회주의헌법 개정시 대외경제 관련조직을 개편하면서 대외교역이 대외경제위원회를 비롯하여 기타 위원회와 부(部) 중심의 국가무역과 도행정경계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소위 '새로운 무역체계'를 수

립하는 것을 계기로 대외교역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방향전환을 모색하게 하였다.

새로운 무역체계는 생산을 담당한 위원회 및 부(部)와 도행정경제위원회들이 자체 무역관리부서와 무역회사를 두고, 자기부문, 자გი지방에서 생산한 수출품들을 직접 내다 팔고 필요한 제품들을 직접 사다 쓰게 하는 무역체계와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63

북한의 ‘농민시장’이란 어떤 것이며 배급체제인 북한에서 시장의 등장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북한의 농민시장이란 국영농장이나 협동농장 이외의 개인의 텃밭(통상 30~50평 내외)에서 생산하는 농작물이나 부업 경리의 생산물을 매매·교환하는 농촌의 시장터로, 통상 10일 정도마다 협동농장이 쉬는 날에 주민들이 모여서 이루어진다.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농민시장이 1980년대부터는 중소도시지역까지 확대되고 있는데 이를 통상 ‘장마당’이라고도 부르며 주민들이 가정부업으로 생산한 물품(뜨개제품, 달걀 등) 등이 거래됨으로써 주민들의 생필품 문제를 간접적으로나마 해소하고 있다고 한다. 1990년대 들어오면서 농산물 배급의 절대부족으로 장마당거래가 일상화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계획경제체제는 배급제도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농민시장이 존재한다는 것이 이율배반적으로 느껴질지 모르지만 완전한 배급제도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농민시장이 이의 보완적 기능을 수행해 주고 있다고 보면 된다. 즉 북한의 농민시장 또는 장마당은 국영상업망이나 협동단체의 상업망과 함께 상품유통체계의 하나이며, 그 중 국영상업망은 도매소와 소매소로 구분되며, 도매소는 중앙에 ‘중앙도매소’ 각 도에 ‘도도매소’, 시·군에 ‘지역도매소’로 나뉘어지며, 소매소로는

대도시의 백화점, 지방의 종합상점·직매점, 리·동 소매점 등이 있다.

협동단체상업망은 최근 농민시장에 의하여 그 기능이 약화되었으며, 농민시장은 군단위로 대략 2~3개소가 지정되어 있는데 식량, 담배, 술 등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극심한 식량난으로 인해 금지된 물품도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의 암시장 등 비공식 경제의 실태는?

현재 북한은 경제난으로 인하여 암시장 등 비공식적인 상품거래 통로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특히 식량과 기초 생필품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품과 관련된 비공식 거래 통로가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북한의 비공식 상품거래 통로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원인에 근거하고 있다. 하나는 계획경제체제의 기능마비 내지 효율성 저하를 들 수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실시해 오고 있기 때문에 모든 물자나 생필품을 계획적으로 분배하는 체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식량과 같은 기초생필품 생산이 크게 감소하게 되자 북한의 배급체제나 물자공급체계가 본래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되었다. 다른 하나는 북한 사회주의 계획경제 하에서 누적되어 온 만성적인 물자부족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들은 계획경제의 구조적인 비효율성과 경쟁부재로 인하여 물자부족을 경험해 왔다. 따라서 계획경제 하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부족한 물자를 해결하기 위하여 음성적인 상품거래 통로를 이용해 왔다. 모든 사회주의 국가 내에 암시장이 발달되어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현재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으로 인하여 2차경제 영역을 허

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쌀, 고기, 두부와 같은 식료품이나 신발, 양말과 같은 일용품의 2차 거래시장은 크게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즉 북한 주민이 소비하는 식량 및 생필품의 약 60~80%가 이러한 비공식적 거래 루트를 통하여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비공식 상품거래 통로로서의 계획 외 부문의 상품거래 시장은 북한 당국도 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상당히 묵인하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공산품이나 외환이 거래되는 암시장도 상당히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 등지로부터 밀무역되어 들어 온 컬러TV나 라디오, 카메라 등을 거래하는 암시장도 상당히 형성되어 있는데, 이곳에서의 거래가격은 계획가격의 5~10배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심지어 북한 인민원의 무역환율은 1달러 당 2.16원 수준인 반면, 암시장에서는 1달러 당 100원 이상에 교환되고 있다.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들의 화폐가 미국 달러화에 대하여 2~10배 수준으로 과대평가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해 볼 때 북한 인민원의 과대평가 수준은 심각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그만큼 북한 경제가 어렵고 미국 달러와 같은 경화가 부족하다는 것을 역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65

북한의 노동당 당원(간부 및 일반당원)과 일반주민들의 생활수준을 비교하면 어떠한가?

북한의 주민들은 모든 분야에서 당중앙의 계획과 통제 하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같은 중앙의 계획과 통제는 노동당의 방침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노동당원에게는 모든 생활의 우선권이 부여될 수밖에 없고 일반주민, 특히 하층 노동자들의 생활은 당원이나 지도간부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할 수밖에 없다.

특히 노동당원이나 간부들은 그들 나름대로 혁명사상과 신분에 따라 고위직급이나 관리·감독직을 독점하게 된다. 이로 인해 사회생활의 모든 면에서 유리하며 사회주의적 혜택이 모든 면에서 우선적으로 보장되고 이같은 우선권은 일평생 보장된다.

그리고 사회주의적 혜택측면에서 보면 식량배급, 주택배정 등에서 당간부와 일반주민들은 제도적으로 차등화되어 있다.

식량배급의 경우, 당간부들에게는 규정된 배급량을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일반주민들에게는 형편에 따라 공급하며 공급량이 적든 많은 불평할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북한의 식량사정이 매우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은 배급량이 부족하여 굶주림을 면치 못한다. 그런데 텔레비전 화면에 비치는 당간부들의 모습에서는 이같은 빈곤의 그림자를

찾아 보기 어렵다. 이처럼 당간부들과 일반주민들의 생활의 차이는 심각하다.

주택의 경우, 북한의 주택정책은 간부들이 거주하는 도시 중심으로 전개되며, 주택 배정에서도 당간부와 일반주민들에게 차등화하고 있다. 즉 당간부에게는 특호(독립식 단독, 수세식 변소, 냉·난방시설 등)나 고급아파트(수세식 변소, 냉·난방 시설 등)가 지급되지만 일반주민들에게는 개량형 주택(방 1~2칸, 공동변소 등) 또는 소형 연립식 주택(방 1~2칸, 공동변소 등)이 배정된다. 이것도 운이 좋아야 배정받을 수 있다. 일반주민에 속하는 신혼부부 중에는 수년간 방 한칸도 얻지 못해서 각기 헤어져 생활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한다.

그리고 생필품도 당간부는 우대받는다. 당간부를 위해서 별도의 공급소를 두고 질적·양적으로 우선 공급하지만 일반주민들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자녀교육에 있어서도 진학의 정보와 추천권이 당간부에게 있기 때문에 당간부의 자녀에게는 특수학교에 입학하거나 진학의 기회가 우선 주어진다.

이처럼 당간부들과 하층주민들간의 생활형편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더욱이 주민들을 사상적으로 구분하여 차등화시켜 놓았기 때문에 한번 소속된 계층을 초월하기도 어렵고, 한 평생 규정된 신분에 따라 제한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66

북한주민들의 관혼상제 실태는 어떠한가?

북한은 가족법 제1조에서 ‘가족’을 “사회주의 혁명리론의 실습장이며 생산의 최저단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주의 가족관에 따라 북한의 관혼상제의식은 오늘날 남쪽의 의례와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혼인 및 장례 등의 대사를 치를 때 이웃, 친척이 상부상조하는 전통이라든가 장례의식으로 화장보다 매장울 선호하는 풍습 등은 남과 북에 공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결혼’에 관해 1990년 10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에서 채택된 가족법 제29조는 결혼연령을 남자 18세, 여자 17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는 청년들이 조국과 인민을, 사회와 집단을 위해 보람있게 일한 다음 결혼하는 사회적 기풍을 장려한다”는 규정에 따라 일반적으로는 남자 30~31세, 여자 28~29세에 결혼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등 만혼의 이중 기준이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김일성이 1971년 6월 21일 사로청 6차대회 연설에서 청년 남녀들이 한창 일할 수 있는 나이에 결혼을 하면 혁명과업수행에 지장을 준다고 지적하면서 “남자는 30세, 여자는 28세가 된 다음에 결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언급한 데서 비롯된다.

둘째, 대개 3일장인 ‘장례’는 사회주의 생활방식에 따라 지극히 간소화되어 있다. 김일성의 경우는 예외로 12일장이었

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일반가정에서는 생활고로 인해 장례도 1일장으로 치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귀순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당국은 경제난 때문에 주민들에게 집안 대소사를 간소하게 치를 것을 지시해 오고 있다. 특히 북한에는 장의사가 없다. 그리고 사망신고는 사회안전부에 한다. 매장은 해당 지역 행정경제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장례식과 매장은 도시의 경우 녹화사업소나 편의협동조합에서 맡아 처리해 주며 농촌에서는 협동농장에서 함께 치러준다. 특권층 간부가 사망했을 때는 장의위원회가 조직되며 수많은 주민들과 학생들이 동원되어 성대한 장례식이 치러지고 비석도 세워진다. 그러나 묘지는 지정된 공동묘지만 사용할 수 있고 개인이나 문중묘지 등은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

셋째, ‘제사’는 휴전 이후 금지되었다가 '60년대 말부터 부분적으로 허용되었지만 제사방식이 ‘사회주의적 제사’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바뀌었다. 그것은 김일성이 1974년 1월 13일 전국농업대회에서 “제사지내는 것은 죽은 사람을 잊지 않기 위한 것이므로 제삿날에 무덤에다 꽃을 가져다 놓든가 - 그가 다하지 못한 일을 살아있는 사람들이 마저 하기 위하여 노력하자는 결의를 다지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강조한 이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사상교양의 한 방편으로 허용되어 왔다. 각 가정에서는 한식이나 추석에 제사를 지낼 때 돌아가신 부모님의 사진을 걸 수 있지만 반드시 김일성 - 김정일 초상화보다 아래에 걸어야 한다. 한편, '80년대 이후에는 추석에 한해서 풍행증 없이도 지방에 갈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추석 성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67

북한 젊은이들의 결혼관은 어떠한가?

북한 젊은이들은 1970년대 말까지만 해도 중매결혼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1980년대부터는 점차 연애결혼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왔으며, 최근에는 이같은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북한 가족법 제8조 : 공민은 자유결혼의 권리를 가진다).

실제로 최근 평양, 청진 등 대도시에서는 젊은 남녀들의 데이트 장면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그리고 결혼 연령도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의 가족법(1990년 제정) 제9조는 혼인적령기를 남자 18세, 여자 17세로 규정하고 있다. 과거에는 남자 32세, 여자 28세 이상이 되어야 결혼하는 것이 상례였으나, 최근에는 남자 27~28세, 여자 23~24세 정도로 낮아지고 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남자 24~25세, 여자 20~21세에 결혼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배우자 선택의 기준도 많이 바뀌었다. 종래에는 배우자 선택에 있어 당원이나 권력기관(국가안전보위부, 사회안전부 등)에 종사하는 배우자나 또는 그런 집안이 인기였으나 최근에는 물질주의와 개인주의 풍조의 확대로 젊은 여성들의 경우 해외에 자주 드나드는 외교관이나 무역회사 직원, 선원 같은 직업을 가진 남자들을 선호하고 있으며 또한 운전자, 요

리사 등 서비스업종 종사자들도 인기라고 한다.

그리고 월남자가족의 경우 종래에는 결혼상대자로 기피하는 현상이었으나 최근에는 그들 중 해외(미국, 캐나다 등)에서 경제적 여유가 있고, 재북가족에게 경제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가정을 택하여 결혼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결혼날짜도 종래의 길흉을 가리는 풍습은 사라졌고, 주로 생산에 지장이 없는 공휴일이나 일요일을 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 주민들의 여가생활의 형태와 실상은 어떠한가?

북한 주민들은 남한과 같은 여가문화가 존재하지 않는다. 스포츠나 오락을 개인의 휴식이나 체력증진, 여가선용 등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집단 전체를 위한 공동목적의 달성수단으로 인식한다.

북한에서는 공장, 기업소와 협동농장 등 모든 일터와 직장에 종사하는 사무원, 근로자들은 계획된 일과표에 의해 생활하게 된다. 특히 노동과 생산분야의 종사자는 매일 완수해야 할 작업책임량이 책정되어 있고, 휴일이나 휴가기간에도 각종 회의, 학습, 근로봉사, 군사훈련 등 사회정치활동에 동원되는 예가 허다하므로 여가시간을 개인이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상태이다. 그리고 일과 후 휴식은 대부분은 텔레비전이 있는 집에서 텔레비전방송을 시청하거나 잡담을 하는 것이 고작이다.

간혹 직장에서 휴가를 얻지만 이를 여가생활로 활용하기는 어렵다. 또한 여가의 수단이 다양화되어 있지 못할 뿐 아니라 여행의 자유가 없고, 한 가족의 휴가 및 방학일정이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한가족이 함께 휴가여행을 떠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일반 노동자나 사무원들은 분기당 배당되는 휴양권을 타기

위해 모범노동자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한다. 이렇게 하여 얻은 휴양권은 금강산, 송도원 등 경치 좋은 곳과 주을, 신천 등 온천지역에 위치한 휴양소를 찾는 데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100명의 종업원을 가진 공장에 분기당 2~3명분의 휴양권이 할당되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휴양소에 가 볼 기회란 사실상 그만큼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 주민들은 휴가를 받으면 고된 직장생활과 긴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집에서 편히 쉬고 싶어한다. 그리고 집수리 등 가사잡무를 휴가기간에 한다. 평양시에서는 휴가기간에 어린이를 데리고 지하철로 대성산 유희장으로 나들이를 하는 등 어린이를 위해 하루를 보낸다. 지방에서는 오락시설이 없기 때문에 직장사람들이나 동네 사람들끼리 각자 먹을 것을 장만하여 인근 산이나 강가를 찾아 휴식을 취한다.

취미생활이나 오락수단으로 영화관람이나 음악감상 등이 있으나 이것마저도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등에서 매주 ‘문화의 날’로 정해진 수요일에 단체로 ‘영화실효투쟁’이란 명목을 붙여 의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북한에서 일반인들이 가장 손쉽게 즐길 수 있는 오락수단으로서는 장기놀이와 주패놀이(서양식 카드놀이)가 가장 널리 보급되어 있다.

북한의 보건의료정책의 실상은 어떠한가?

북한헌법 제56조에는 “국가는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공고발전시키며 의사담당구역제를 강화하고 예방의학적 방침을 관철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에서 무상치료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것은 최고인민회의 제2기 7차회의(1960. 2. 27)에서 ‘보건사업강화에 관한 결정’이 채택된 이후부터이다(그 이전에는 특정대상에게만 선별적으로 실시).

이에 따라 치료비와 수술비를 비롯하여 입원비, 요양비, 건강검진비, 예방접종비, 분만비, 불구자를 위한 교정기구비, 보철기 등 의료경비 일체를 개인이 부담하지 않고 치료받게 되었다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무상치료제는 그들의 선전과는 달리 의료요원의 부족과 시설의 미비, 의료수준의 낙후성, 계층간의 의료시혜차별 등으로 인해 초보적인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주민들은 매달받는 임금(생계비)에서 사회보장비 명목으로 1%, 복지후생비라는 명목으로 10%씩 공제받기 때문에 유료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북한의 모든 의료시설은 국가소유로 국가가 관리하는데, 중앙에 특권층을 대상으로 하는 봉화진료소와 남산병원이 있고, 그 외에는 적십자중앙병원, 평양의대부속병원, 김만유병

원, 동의중앙병원, 산업병원, 평양산원 등이 있으며, 시(구역)·군 단위에 병원 1~2개씩 리·동에는 2~3개단위로 진료소, 인민병원 등이 있는데, 준의사 1~2명이 가벼운 외상치료를 비롯한 초보수준의 의료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의사담당구역제라는 의료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것은 1명의 의사가 4~5개 작업반 규모(2~3백명)의 구역을 맡는 일종의 순환진료제 방식이다. 평소에는 소속병원에서 근무하다가 일정한 날을 잡아 한꺼번에 보건의료사업을 펼치므로 정상적인 진료가 불가능하다. 도시지역의 경우 주민 4,000여명을 기준으로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의 전문의들이 조를 짜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형식적인 진료에 지나지 않는다.

한편, 북한은 최근 극심한 경제난으로 의약품 생산이 어려워지자 약을 전혀 쓰지 않고도 각종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고려치료법’이라는 일종의 민간요법도 권장하고 있으며, 실제 일반 주민들은 이에 의존하여 각종의 질병을 자가진단하고 치료하고 있는 실정이다.

70

남녀평등권이 보장된다는 북한에서 여성들이 가정과 사회에서 누리는 지위와 역할은 어떠한가?

북한은 마치 여성의 지위가 신장되어 남녀가 평등한 것으로 선전한다. 그리고 이같은 선전은 사회주의라는 막연한 이상론 때문에 사실이 호도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여성정책을 정확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북한의 여성정책은 역사적으로 다음과 같이 전개되었다.

1946년 2월 북한에 공산정권이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전통적인 사회질서가 파괴되었다. 토지개혁, 산업의 국유화 등으로 사회적 생활구조가 전면 바뀌어졌다. 북한은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을 제정(1946. 6)하여 여성의 지위를 법적으로 변화시켰다. 북한은 여성에게 선거권, 피선거권 등 참정권을 주었고, 남성의 축첩행위를 불법화하여 여성의 지위를 강화시켰다고 한다. 그리고 강제결혼을 불법화하여 여성의 결혼권을 확립시켰으며, 사회적으로도 동등한 노동과 보수를 받도록 하는 등 여성의 지위와 역할에서 변화가 있었다고 한다. 이뿐만 아니라 어린이 양육면에서도 탁아소를 두어 여성에게 편리하도록 했고, 밥공장을 설치하여 부엌일을 줄여주는 등 여성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법적·제도적 조치들을 마련하였다고 선전한다.

이는 분명히 여성의 권리를 신장했다는 선전이고, 그 이면

에는 여성의 피해가 오히려 많았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즉 여성은 노동분야에서 남성과 동등한 의무를 부담해야 했고, 여성 고유의 특성(아름다움, 모성애 등)은 정책적으로 보호받지 못함으로써 여성의 본질적인 권리면에서 부작용이 나타났는가 하면, 제도와 현실의 괴리로 인해 육체적 의무만 증폭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정치적 권리에서 보면, 북한의 당·정·군의 군력중추에는 여성이 진출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 최고 권력기관인 노동당 정치국(정위원 10명, 후보위원 8명 내외)에는 여성이 1명(이선실) 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도 엄격한 의미에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형편이며, 노동당 핵심권력기구인 비서국(비서 10명)에는 아예 여성이 한명도 없다. 지방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평양을 비롯하여 9도, 2직할시의 당·정·책임자는 전부 남성이다. 군부세력에도 여성의 장성급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사회적인 측면에서 여성의 진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적 진출 또한 노동현장에서 남성들과 함께 일하는 실무급 정도에 불과하다. 여성은 노동현장에서 남성에게 비하여 특별한 보호를 받는 것도 아니며, 힘들고 험한 조건에서도 남성들과 같이 노동할 뿐이다. 더구나 가정에서도 아이를 기르며 가사노동을 해야하는 등 여성에게는 직장과 가정에서 책임이 많은 이중고통을 겪어야 한다.

또한, 폐쇄된 사회, 충성만이 강요된 엄격한 북한식 정치풍토는 가정에서 가장의 지위를 오히려 완고하게 만들었고, 여성의 종속성은 그대로 남아있게 했다. 이러한 여성의 불리한

지위는 사회생활에서도 남성에 비하여 뒷전으로 밀리게 되었다. 따라서 북한의 남녀평등이라는 선전은 여성의 권리신장이라기 보다는 여성들에게 노동의 의무만을 부과한 것으로서 여권을 위축시켰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입장이다.

71

북한 농촌자녀들의 도시진출은 가능한가? 농촌의 부모를 도시로 이주, 부양이 가능한가?

북한에서는 헌법 등 어느 법령에서도 거주·이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 다만, 1947년 3월 7일에 선포된 북조선인민위원회 결정 제57호 「공민증 교부 사무규칙」 중의 여행자 취급에 관한 규제조항만을 찾아볼 수 있을 뿐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북한주민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여행하려고 할 경우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만일 이것을 어기고 허가없이 여행할 경우 경범죄 수용소인 ‘집결소’에 수용되어 30일간의 무보수노동형을 받게 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극심한 식량난으로 이러한 이동의 제약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식량을 구하기 위한 타지역으로의 이동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한 사람의 여행증명서에 여러 사람들이 부표를 붙이거나 또는 아예 여행증명서가 없어도 묵인해 주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북한에서 주거지 이동은 오직 직장이동과 관련해서만 가능한데, 그나마도 농촌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의 주거지 이동은 정책적으로 규제되어 거의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도 경제건설 과정에서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 농촌노동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북한이 발표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1959년 총인구 중 도시인구

는 38%이고 농촌거주인구가 62%였지만, 1987년에는 총인구의 60%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총근로자 중 공장·기업소 근로자가 57%인데 반해 협동농장원의 비중은 25.3%에 불과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북한은 농촌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의 사무원, 제대군인 등을 농촌으로 집단배치하는 조치를 취하고 농번기 때면 학생, 군인, 사무직 노동자, 심지어 당간부들까지 ‘노력봉사’라는 이름하에 동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협동농장 농민의 자녀가 도시로 진출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이나 가능하다고 하겠다. 즉 아주 공부를 잘하여 대학에 진학하고 신영희씨처럼 예술 및 체육특기생으로 차출되거나, 능력을 인정받아서이든 당의 배려를 받아서이든 아니면 뇌물을 썼든 간에 직장배치를 도시로 받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밖에 결혼에 의해서도 가능하기도 한데, 그것도 농촌 여성이 도시의 남성과 결혼했을 경우이고 농촌의 남성이 도시의 여성과 결혼했을 경우에는 도시로의 이주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80년대 말부터는 농촌여성도 도시남성과 결혼하여 도시로 이주하는 것도 사실상은 아주 힘겹게 허가를 얻어낼 수 있으나 거의 대부분은 허가하지 않고 있다.

한편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녀가 농촌의 부모를 부양하고자 도시로 이주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를 해준다고 한다. 왜냐하면 북한은 기본적으로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고 3대가 거주하는 형태의 가족형태를 ‘조선의 미덕’이라하여 장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72

최근 북한 주민들의 사회일탈행위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원인과 실태는 어떠한가?

북한의 선전자료에 의하면 북한사회는 모든 주민들이 지상 낙원에서 물질적, 정신적 풍요를 누리고 부러움없이 살고 있기 때문에 부정과 부조리, 범죄 등 부정적인 사회현상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에 오랫동안 상주한 외교관 그리고 북한을 다녀온 여행자(미국·조선족 동포 등), 탈북귀순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절도, 강도, 폭력 등 온갖 사회병리적 사건들이 끊임없이 빈발하고 있다 한다.

또한 당·정간부의 ‘사업작풍’을 비판하는 북한의 신문, 방송을 분석해보면 반사회적, 반체제적 일탈행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공산권의 붕괴가 시작된 1990년 이후부터는 경제난으로 인한 생활고 등으로 경제관련 일탈행위가 크게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최근에는 극심한 식량난과 생필품 부족 때문에 생존수단의 일환으로 ‘민생형’ 절도행각이 일상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당·정·군 간부들 및 관료들에 의한 부정부패도 극심하여 아예 뇌물수수행위가 모든 행정업무 영역에 걸쳐 일상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예컨대 여행증명서 발급은 1장당 3백원, 직장이동을 위한 뇌물액은 2백~4백원, 해외벌목공으로 나가기 위한 뇌물액은 1천원, 해외공관으로 나가기 위해 외교관

들이 상납하는 뇌물액은 최고 2만원 등등이라 하는데, 주민들은 그밖에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관료들에게 수시로 술, 담배, 음식물, 양복지, 운동화 등등을 상납해야 생활에 곤란을 겪지 않을 정도라고 한다. 그래서 탈북자들에 의하면, 북한주민들이 가장 스트레스 쌓일 때는 갖다바칠 뇌물이 없을 때라는 것이다.

한편 청소년들의 사회일탈현상도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다. 청소년 범죄는 전체범죄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50% 이상이 22~25세의 청년 등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 청소년들은 주로 평양역, 개천역, 신천역 등지를 중심으로 3~4명씩 짝을 지어 배회하면서 소매치기, 빈집털이, 상점약탈, 여행자를 상대로 한 절도 등의 범죄활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 청소년들의 범죄형태는 날이 갈수록 조직화, 횡포화 양상을 띠어가고 있는데, 최근에는 ‘패거리’라고 불리는 조직 폭력배까지 출현하여 일반가정과 상점, 물자창고 등을 습격하여 물건을 약탈하고 부녀자까지 성폭행하는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 ‘패거리’들은 최근에는 주로 ‘장마당’ 등 물자거래가 활발한 곳을 활동지역으로 삼고 있는데, 안주의 경우에는 두목 밑에 소두목이 12명이 되고 조직원도 300명이나 되는 거대 조직폭력배가 있다고 한다.

이처럼 북한에서 각종 유형의 일탈행위가 만연한 것은 악화된 생활고와 기강해이 등으로 인한 사회불안정성이 표출된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73

최근 북한 주민들 사이에 자본주의적 가치관이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며,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가 북한체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최근 탈북자들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북한사회의 구석구석에서 자본주의적 가치관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현상은 공산권 붕괴 등 국제적인 환경 변화와 북한식 사회주의의 한계, 주민들의 삶의 가치의식이 깨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사회주의·공산주의는 허황되고 자본주의가 인간의 기본적 생존을 보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북한 주민들이 인식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북한주민들은 북한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50년간 지속되었으나 자신들의 생활형편은 나아지지 못하고 있으나 자본주의로 살아온 남한이 오히려 경제적으로 고도성장하여 선진국의 대열에 진입했다는 성공사실이 북한사회에 전파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김정일 중심의 북한식 사회주의 고수가 ‘인민을 위한 정치’라고 선전하지만 실제로는 인민들의 먹는 문제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참고 견디기만 하라는 식의 “자력갱생 간고분투”만을 강요한다. 따라서 주민들은 당이나 행정당국을 의지할 수 없고 저마다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는 온갖 수단방법을 동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중국의 조선족 등 해외동포들에 의해 자본주의적 사조가 날로 확산되고 있다.

북한사회에 날로 확산되는 자본주의적 가치관은 결국 북한

의 정치체제의 변화를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될 것이다. 주민들의 생활속에 자본주의적 사조가 확산되면 될수록 주민들의 물질적 수요는 그만큼 팽배해지고, 또 체제불만요인도 증폭될 수 있고, 주민들의 생활습관에서도 통제와 폐쇄된 사회주의적 의식주생활 패턴은 파괴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정치지도층에도 그 영향이 확산될 수 있고, 또 주민들의 욕구충족을 위해서는 정책상 변화가 불가피하며, 결국에는 개혁개방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74

자본주의적 가치관이 확산되면서 북한 주민들의 직업관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최근 북한을 탈출하여 남으로 온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 사람들의 직업관은 크게 변하고 있는 듯하다. 즉 과거 북한주민들의 직업관이라면 무엇보다도 당원이 되고 당간부로 진출하여 이른바 혁명의 영웅칭호를 받는 것을 선호했으나, 최근 주민들은 개인의 의식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직종을 선호하는 경향이다. 다시 말해서 생활필수품을 생산하는 경공업 분야나, 이를 판매·공급하는 편의봉사분야를 선호하며, 외국산 물품을 쉽게 확보하여 이를 암거래함으로써 외화 등 돈을 모을 수 있는 무역상사나 외교관 등이 선호대상 직종이라고 한다.

이러한 경향은 북한 청소년들의 진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바, 북한의 고등중학교 6년생들의 대학진학에서 잘 나타난다. 즉 북한의 많은 고등중학교 학생들 가운데는 장래 상업 분야로 진출하기 위해서 평양상업대학(1990. 10 장철구 대학으로 개칭)에 입학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전공과목 역시 대외봉사학부, 고려의학부(의약품 취급)가 인기학과이다. 특히 이 대학의 대외봉사학부는 졸업 후 호텔종업원이 되며, 월급 여액의 5% 정도는 외화로 지급받는 특혜가 있다. 그리고 평양 상업대학 이외에 국제관계대학, 경공업대학, 외국어대학 등도

인기대학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이들 학교를 나오면 무역상사나 외교관, 통역 등으로 진출할 수 있으며 외국의 문물, 외화 벌이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한편 북한 주민들이 싫어하는 직종은 광산, 어장, 농장, 토목 공사장 등 힘든 노동을 해야 하는 직업이다. 북한 관계 소식통에 의하면 1980년대 중반부터 농어촌의 청년들이 힘든 일을 싫어하여 도시로 진출하려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북한 당국은 도시의 대학생들로 구성된 3대혁명소조를 농어촌에 파견하여 농촌 청년들의 이농현상을 막으려 했으며, 도시의 처녀들을 집단으로 농어촌 등지에 무리배치(집단배치)하거나 농촌청년과의 결혼을 권장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 주민들의 직업관이 변하고 있는 원인은 물론 서구 자본주의·개인주의 의식이 북한사회에 전파된 때문일 수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정책의 실패와 이로 인해 당국이 주민들의 의식주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한 데 기인된 것이며, 여기에 당·정지도책임자나 그 하부관료들이 부패하여 뇌물과 정실이 만연한 데에도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75

북한 청소년문화에 서구식 문화가 유입된 실태와 이에 대한 북한당국의 대책은 어떠한가?

1980년대 이후 북한 주민들의 생활속에 서구식 문화가 확산되기 시작하였고,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층에서 이같은 현상은 더욱 두드러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오늘의 북한 청소년 문화 속에는 북한식 혁명적 문화와 함께 서구식 개인주의 자유화 바람이 공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북한 청소년들의 생활에서 나타나는 서구적 문화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청소년들의 평상시 복장은 남녀구분 없이 양복과 양장차림이 예사이며, 사회주의적 복장인 ‘인민복’ (노동복)을 입은 모습은 특별한 정치집회나 노동현장에서나 보이는 정도이다. 더욱이 평양 등 대도시의 청소년 가운데는 청바지에 T셔츠를 입고 운동화(농구화형) 대신 구두(비날론)를 착용한 모습도 나타난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두발 역시 장발하는 모습이 흔히 확인되는 등 개인주의 자유화 바람이 청소년의 문화 속에 확산되고 있는 느낌을 준다. 이뿐 아니라 북한 청소년들은 애정문제, 결혼문제에서도 자유로운 남녀교제나 연애결혼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결혼하여 주택사정이 허락하면 가급적 부모와 떨어져서 독립가정을 이루는 등 핵가족화하는 풍조, 직장에서의 혁명투쟁보다는 가정에서 가족들간의 화목

한 생활을 선호하는 가족주의 개인주의적 사조가 널리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북한 당국은 청소년 등 주민들의 생활공간에 서구화 바람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당·정·군의 모든 조직력을 통하여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우선 청소년들이 소속되어 있는 김일성사회주의 청년동맹(구사로청)을 통하여 집체교육, 집단훈련을 강화하고 김정일을 옹호·보위하고, 사회주의 우월성을 신봉하게 하며, 혁명투쟁에서 선봉대가 된다는 맹세를 거듭 다짐하게 하는 등 정치사상교양을 집중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76

북한 주민들이 남한의 대중가요를 부르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의 대중문화가 북한에 유입되는 경로와 실태는 어떠한가?

북한 주민들 사이에 우리의 대중가요가 불리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탈북자들이나 북한을 다녀온 해외동포들에 의해 전해지고 있다. 북한 주민들에 전해졌다는 우리의 대중가요로는 ‘노란 셔츠입은 사나이’, ‘돌아와요 부산항’, ‘바람 바람 바람’, ‘사랑의 미로’, ‘우리의 소원은 통일’ 등이며, 이외에도 분단 이전에 유행했던 ‘황성옛터’, ‘봉선화’ 등도 불리어진다고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대중가요들은 대체로 가사의 일부가 변조되어 불리어지고 있으며, 이들 가요가 해외동포의 대중가요라고 왜곡되고 있는 듯하다. 어쨌든 북한에서 남한의 대중가요들이 불리어진다는 사실에서 우리의 대중문화가 북한사회에 침투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며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북한사회에 남한의 대중가요 등이 전파되는 경로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대체로 해외동포들의 방북시 가요를 불러주는 경우도 있으나, 더 많은 영향을 준 것은 중국 연변의 동포들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을 왕래하면서 생필품을 사고 파는 행상인들이 우리의 가요를 배워서 북한 주민들에게 쉽게 전파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 북한 주민

들은 중국 조선족들의 가요로 믿고 부담없이 배우게 된 듯하며 주민들 상호간에도 전파시킨 것으로 보인다.

북한당국과 북한주민들의 남한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북한의 대남인식은 분단 이후 지금까지 “조선은 하나다”라는 논리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만이 존재하고 있으며 휴전선 이남의 “남조선은 미제의 완전한 식민지이며 침략적 군사기지”이고 “미제는 남조선을 정치·경제·군사적으로 완전히 예속시켰다”고 선전해 왔다. 그러기에 북한은 대한민국을 그들의 체제에 흡수되어야 할 미군점령의 미수복지구 내의 한 ‘사회단체’ 정도로만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우리 정부를 가리켜 “남조선에 수립된 력대통치기구”는 미제의 식민주의 통치를 가리우기 위한 병풍에 지나지 않는다. 력대 괴뢰정권은 모두 그 어떤 자주권도 행사하지 못하는 허수아비 정권이었으며 식민지적이고 예속적이며 지주·매관자본가들과 반동관료배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반인민적 반동정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북한의 시각이 ‘하나의 조선’으로 귀결됨을 알 수 있다.

또한 북한은 남한사회의 모순을 민족적 모순과 계급적 모순으로 분류하여 설명하면서 사회계층간의 관계를 적대적 대립과 갈등의 구조로 규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시각에서 보면 결국 남한은 “미제의 예속으로부터 벗어나야 할 민족해방

의 공간"이자 "인민민주주의화 해야 할 공간"이며 남한정부는 "혁명을 위한 타도의 대상"일 뿐이다. 이러한 대남인식은 민족공동체의 건설을 전제로 북한을 '공존공영의 대상'으로 보는 우리의 시각과는 커다란 격차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적대적 대남인식으로 가득찬 '하나의 조선' 논리와 주체사상으로 정치교화된 북한 주민은 대략 다음과 같은 의식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즉 우상화교육의 결과로서 '아버지 수령'을 절대적 존재로 숭앙하면서, 그에 대한 무조건적 지지와 충성을 맹세한다. 그리고 남한에 대한 인식은 '하나의 조선' 논리에 따른 증오교육의 결과로서 "미제에 착취당하고 헐 벗고 굶주리고 있어 하루빨리 해방시켜 주어야 한다"는 기본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분석된 '북한주민의 對남한관'에 의하면 남한에 대한 인식이 계층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핵심 집권층의 경우 남한이 대미관계개선을 방해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증오심이 극에 달해 있다. 동시에 체제경쟁의 패배로 인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지식인층의 경우는 한국의 경제적 우위를 인정하고 북한의 경제정책에 대해 비판하면서도 그것을 문제화하지는 않고 있다. 그리고 서민층의 경우는 생활난 해소를 위해 상업활동에 치우치면서 당국이 선전해온 그릇된 대남인식을 재정립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78

북한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할 때 선발기준은 무엇이며, 학생들은 어떤 학과를 선호하는가?

현재 북한에서 대학에 입학하려면 통상 2차에 거쳐 추천을 받아야 하고, 두 차례의 시험을 치뤄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80년부터 대학입학 대상자는 교육위원회의 고등교육부 학생소집국이 주관하는 대학입학 자격고사인 국가판정시험을 3월에 치른다.

대학입학 자격고사제는 대학입학 추천이 학력보다는 출신 성분 위주로 이루어진다는 일반주민의 불만과 인력관리상 모순이 있다는 비난이 일자 시행된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대학 진학은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2~5년간 직장생활을 하거나 7년 이상의 군복무를 마치고 난 후에 이루어진다. 그러나 특권층 자녀들은 고등중학교 졸업과 동시에 대학진학의 특권이 주어진다.

대학생 선발 약 2개월 전에 각 고등중학교나 직장 등에 대학입학 인원수가 할당되며, 이곳의 대학추천위원회가 출신성분, 당성, 정치조직생활, 성적 등을 종합평가하여 1차 추천하면, 다시 시·군과 도·직할시 대학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서 해당 지방대학에서 치르는 입학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각 대학의 학생선발기준은 당성을 고려한 출신성분 1/3, 정

치조직생활의 평점 1/3, 시험성적 1/3의 비율로 평가한다. 여기에서 당의 추천이 결정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정 간부 등 권력층의 자녀들에게 대학진학의 기회가 넓기 마련이다. 결국 대학진학은 고등중학교의 학업성적이나 국가판정시험 성적보다는 출신성분이나 당에 대한 충성도에 의해서 결정된다. 고등중학교 졸업과 동시에 대학에 진학하는 소수의 특권층 자녀들을 제외하면 군이나 직장에서 충성도가 인정되어야 대학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학에 진학하게 된다. 대학이나 전공학과의 선택도 입학 당사자의 희망에 따르기보다는 당의 인력양성계획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결정된다.

북한 학생들의 정규학과 이외의 활동은 어떠한가?

우선 과외활동의 개념이 남북간에 차이가 있다. 우리가 사용하는 과외활동은 학교교육과정의 일환으로서 학생 개개인의 잠재능력개발이 일차적인 목표이고, 그 다음에 사회활동으로 확대된다. 이와는 달리 북한의 과외활동은 혁명인재의 양성과 노력동원을 위한 철저한 조직활동이다. 따라서 과외활동의 내용도 우리와 판이하게 다르다.

북한의 사회주의교육이 육성해야 할 혁명인재는 노동계급으로서의 혁명사상과 현대과학기술로 무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사상이 조직적으로 단련된 견결한 혁명투사이며 산정치활동가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청소년들을 백절불굴의 혁명투사, 정치활동가로 키우기 위한 방도로서 학교교육은 교육사업과 조직생활을 밀접히 결합시키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학생들은 처음에 소년단원으로서 조직생활을 시작하고 소년단 조직생활을 끝마치면 김일성 사회주의청년동맹에 가입, 조직생활을 계속하며 그 다음에는 당 조직생활을 하든지 다른 근로단체생활을 하게 된다.

‘소년단’은 해당 연령이 9세부터 13세까지의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 학생이 가입·활동한다. 주요활동은 ‘꼬마 5개년 계획’, ‘소년호 열차’, ‘소년호 비행기’ 등의 무기를 만드는

데 노력봉사를 해야 한다. 그리고 녹화 근위대, 모범위생 근위대, 소년단립의 조성, 토끼사육, 방학중에 소년선전대를 조직하여 당의 정책과 해설 등의 활동을 한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1996. 1. 17일 ‘사로청’을 개칭)은 “혁명과업을 직접 계승하는 청년들의 혁명적 조직이며 로동당의 전투적 수비대”이다. 만 14세부터 30세까지의 청년, 학생, 군인, 직장인 등, 모든 청년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되어 있고 그 구성은 5백만에 이른다. ‘청년동맹’은 북한 최대의 사회조직이다.

주요 과업으로는 ①청년들을 당의 사상으로 무장시켜 당의 노선을 관철토록 할 것, ②공산사회를 더 빨리 잘 건설하도록 할 것, ③ 당의 혁명전통을 교양할 것 등이다.

‘청년동맹’은 청소년 문화를 선도하기도 한다. 그 형태는 4가지로서 김일성, 김정일 찬양, 공산체제의 보위, 노동의욕고취, 반한·반미의식 함양활동이다.

북한의 각급 학교 학생들은 ‘혁명소조’라는 이름 아래 사회의 생산활동과 사상선전에 동원되고 있다. 인민학교 학생들로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의 명목으로 각 분야의 생산현장이나 교육장에 파견되어 노동자와 농민을 격려한다.

이상의 조직단체 이외에도 1968년에 시작된 ‘붉은청년근위대’가 있다. ‘붉은청년근위대’의 주요과업은 학생들 사이의 반항요소를 색출하여 자아비판과 사상교육 등을 강화하는 데 있다.

북한의 교원 양성제도 및 교원에 대한 처우는 어떠한가?

북한에서는 교육자를 인민학교에서 대학까지 모두 ‘교원’이라고 부른다. 이 교원을 양성하는 기관으로는 각 도와 시(직할시)마다 2개의 4년제 사범대학과 2개의 3년제 교원대학이 설치되어 있다. ‘제1사범대학’에서는 고등중학교 고등반 교원을, ‘제2사범대학’에서는 중등반 교원을 양성하고, ‘제1·2교원대학’에서는 인민학교 교원과 유치원 교양원을 양성하고 있다. 단 김형직 사범대학은 종전의 평양 제1사범대학을 김일성의 망부의 이름을 따 1975년에 개칭한 것으로 북한의 유일한 5년제 사범대학이다. 이외에 주요 교원양성기관으로 김정숙 사범대학, 삼흥대학이 있다.

한편 대학교원은 교수, 부교수, 상급교원, 교원 및 조교원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들은 3~4년제 과정의 연구원을 거쳐 2년제의 박사원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다. 상급교원까지는 ‘대학평의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위원회 고등교육부장의 내신, 인준을 받으면 승진된다. 그러나 부교수와 교수는 석사학위(연구원 수료)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전공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후, 정무원 직속의 ‘학위학직 수여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심사기준은 출신 및 정치적 성분이 가장 중요시된다.

북한에서 교원에 대한 물질적 처우는 다른 사무직종보다 좋은 것으로 보인다. 교원들이 수행하는 혁명가 양성사업의 중요성에 비추어 보아, 교원들이 맡은 바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책무성과 충성심을 유발하고, 그들의 사회적인 위신과 지위를 높여줌으로써 교육성과를 높이려는 까닭이다.

북한은 해방 직후에 교원양성기관 학생들에게 국가장학제도를 실시하였으며(교원대학 학생의 50%, 사범전문대학 학생 전원), 현직 교원에 대해서는 식량배급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등 교원에 대한 처우를 높여 주고 있다.

북한의 특수교육 및 외국어교육 실태는 어떠한가?

북한의 특수교육 및 외국어교육기관으로는 과학영재교육을 위해 각 도에 설립된 ‘제1고등중학교’, 혁명유족 및 특권층 자제의 교육을 위한 ‘만경대혁명학원’과 ‘강반석혁명학원’, 무용·음악·조형예술·교예 등의 특기자를 위한 예체능전문학교, 외국어를 중점교육하기 위한 ‘평양외국어학원’ 등이 있다.

각 도(직할시)에 설립되어 있는 ‘제1고등중학교’는 정규 고등중학교과정으로서 1983년 9월 평양제1고등중학교 설립을 시발로 하여 전국에 12개가 설립되어 있고 주로 과학, 수학, 물리 분야의 과학자 양성을 위한 교육이 중점 실시되고 있다.

‘만경대혁명학원’은 7년제로서 1947년 10월 12일 인민무력부 산하 교육기관으로서 설립, 인민학교 졸업 후 입학할 수 있고 입학자격은 혁명유가족 및 당·정 고위간부의 자녀들로서 이들은 입학과 동시에 기숙사에 집단 수용되어 군사조직 하에서 교육을 받는다.

‘평양외국어학원’은 6년제 고등중학교 과정으로서 노어, 중국어, 일어, 영어 등 8개 외국어를 중점 교육시키고 있다. 기타 각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외국어학원은 9년제로 운영되고 있다.

북한은 1980년 이후 과학기술교육과 함께 외국어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김일성은 과학원 과학자들에게 한 연설(1983. 2. 23) 가운데 외국어 학습을 강조하면서 “당 7차대회가 열릴 때까지 한 가지 이상의 외국어를 완전히 소유할 것”을 과업으로 제시한 바 있다. 또한 김정일도 1984년 7월 전국 교육일꾼 열성자회의에 보낸 서한을 통해 “세계 선진 과학기술을 널리 받아들이고 과학문화 분야에서 국제적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켜 나가자면 중등일반 교육단계에서 외국어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김일성과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현재 북한에서는 외국어 실력 향상 캠페인이 두드러지게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북한 언어이질화 실태와 극복방안은 무엇인가?

분단 50년은 우리에게 언어이질화 50년을 의미하고 있다. 그 동안 남북한은 사회 곳곳에서 적지 않은 이질화를 보이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남북언어의 이질화는 점점 심화되고 있어 이 부분의 동질성 회복이 시급한 실정이다.

남북한 언어이질화의 근본적 원인은 북한이 평양말을 중심으로 함경도 사투리를 가미한 ‘문화어’를 새로 만든 데 있다. 문화어는 1966년 5월 14일 김일성 교시로 정립되었다. 즉 문화어는 “사회주의 사회 언어발전의 합법칙성에 맞게 건설된 사회주의적 민족어이며, 자연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근로 인민 대중이 목적의식적으로 건설한 세련된 언어”라는 것이다. 우리가 언어를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 그리고 사고의 바탕이며 인품을 가늠하는 척도로 보는 것과 달리 북한은 언어를 공산혁명과 주민동원 및 통치수단으로 간주한다. 이처럼 이질화는 본질적으로 언어관이 다른 데서 비롯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언어정책의 차이도 이질화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북한의 언어정책은 한자 폐지, 한글 전용과 ‘말다듬기 운동’이라는 어휘정화작업에 역점을 두었다. 그 결과로서의 언어이질화는 어휘분야에서 가장 심각하게 나타난다. 물론 우리 사회의 외래어 남용도 남북 언어이질화에 한 몫을 하고 있다.

언어가 인간의 사고와 행동양식 및 의식구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한간의 언어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마련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언어이질화의 극복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한 교류확대를 통해 이질화의 심각성을 체감하도록 한다.

둘째, 남북한 언어학자들의 공동연구의 기회를 확대시켜 나가는 것도 하나의 극복방안이 될 것이다.

셋째, 남북간 언어동질화를 위해서 북한은 언어관과 언어정책에 정치적 의도를 포함시키지 않고, 남한은 무분별한 외래어 남용을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언어정책에 있어서 주목할만한 변화가 있다면 최근 서양외래어, 특히 영어에서 온 외래어를 체육·학술분야에서 그대로 인정하여 사용하도록 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북한의 생존전략 차원에서의 준비조치일 수도 있다.

어쨌든, 이러한 북한의 언어정책변화가 다소나마 남북한간의 언어이질화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은 분명하다고 하겠다.

북한의 언론실태와 그 기능은 무엇인가?

북한에도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들은 존재한다. 그런데 이들 매체들은 노동당의 혁명노선과 방침을 단순히 해설·선전하고, 체제의 정당성을 선전하며, 남한을 비판하는 일을 주된 임무로 삼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언론을 ‘선전선동’의 유력한 무기로 보고 있다.

북한 사회과학원이 발간한 ‘백과사전’(6권)에서 북한 언론매체들의 임무는 “김일성 교시와 김정일의 방침을 해설 선전하고 그의 명령과 지시를 옹호 관철하며 프롤레타리아독재를 가일층 강화하고 인민들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는데 복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1995년 11월 각급 선전매체들에게 보낸 ‘김정일의 친필 서한’에서도 이들 매체들이 사상교양과 통제기능을 강화하여 체제결속을 다지는 데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북한의 언론매체는 정치선전의 도구일 뿐, 주민들의 어려운 고충이나 사회 각 분야의 문제들을 지적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사회에서 말하는 언론기관의 기능과는 전혀 다르다.

〈신문〉

북한에는 노동당 기관지 ‘로동신문’을 비롯하여 중앙과 지

방에 30여종의 신문이 발행 보급되고 있다. 이들 신문들은 모두 당과 정무원, 그리고 당 산하의 정치선동단체나 문학·예술 선전조직 등이 발간하는 공식매체들이다.

중앙에는 로동신문(노동당 기관지), 민주조선(정무원 기관지), 평양신문(평양시 인민위원회 기관지), 로동청년(사로청 기관지) 등 9개 일간지와 2종의 주간지가 발행되고 있다. 지방에는 각 도별로 당·정(도행정경제위원회) 기관지가 12종 있으며, 영자신문으로는 매주 토요일마다 발행되는 ‘The Pyongyang Times’가 있다.

〈방송·통신사〉

북한의 방송선전사업을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은 조선중앙방송위원회이며, 그 산하에 3개의 텔레비전방송과 라디오 방송이 송출되고 있다. 조선중앙방송위원회는 편제상 정무원에 소속되어 있으나, 그 역할은 당의 선전선동담당비서(비서국)의 지휘 아래 각 방송매체의 프로그램 제작, 방송을 지도·감독하는 일 등이다. 또한 동 위원회는 각 도의 방송위원회와 군의 방송위원회, 유선방송중계소를 관리·감독한다.

텔레비전방송으로는 조선중앙텔레비전방송국과 오락을 가미한 평양 만수대텔레비전방송국, 대남선전용 개성텔레비전방송국이 있다.

라디오 방송국으로는 중앙에 2개국, 특수방송 2개국, 그리고 11개의 지방방송국 등이 있는데, 이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 평양 FM방송, 그리고 남한사회를 왜곡하고 북한의 대남정치선전을 앞장서서 담당하는 ‘구국의

소리방송' 등이 있다.

통신사로는 조선중앙통신사가 있는데, 여기서는 외국의 통신들을 독점 수신하여 북한에 불리한 자료를 골라내고, 정치 선전에 필요한 부분을 각색하여 각 선전매체에 전파하며, 노동당이 정치적으로 대외에 선전할 보도자료를 전송하는 대외 창구 역할을 한다.

북한의 반종교정책은 과연 변하고 있으며, 진정한 의미의 신앙의 자유는 허용되고 있는가?

북한은 해방 이후 “종교는 미신이고 아편이다”라는 극단적인 종교부정을 통해 지상에서 유일하게 종교가 없는 나라로 만들었다. 그런데 1980년대 초부터 조선불교도연맹, 조선기독교도연맹 등이 활발한 활동을 통해 마치 북한에 종교가 있는 양 대외적으로 환동을 하고 있는데, 이는 한마디로 말해 그들의 체제선전과 남한 내의 종교단체들과의 통일전선 형성을 목적으로 위장 종교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필요시 국제사회에 대한 정치적 성명발표에 이들 단체를 활용하고 있으며, 반한·친북성향의 해외기독교인들이 북한의 통일정책을 지지하는 집회를 가지면서부터 조선기독교도연맹의 정치적 활동이 유난히 활발해지고 있다.

그리고 공산권의 몰락이 구체화된 1980년대 말부터 평양에 봉수교회, 칠골교회, 장충성당을 신설하고 사찰을 복원하는 등 종교시설을 확대하고 있으며, 비록 형식적이지만 1991년 3월 부활절 예배, 1992년 5월 석탄절 기념법회 등의 종교의식을 거행한 바 있다.

1992년 4월에 개정된 북한헌법 제68조에는 ‘반종교 선전의 자유’ 조항(구헌법 제54조)을 삭제하고,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종래의 원칙적 부정태도에서

종교의 존재를 일정하는 변화된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누구든지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 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아직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와 같은 진정한 신앙의 자유가 허용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관제 종교활동이라고 하더라도 종교가 기능할 수 있는 싹이 움트기 시작했다는 데에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 왜냐하면 북한당국자들의 의도대로 종교가 이용 대상으로만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종교가 정치적으로 이용되기도 하지만 역으로 정치가 종교에 예속되거나 종교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북한 주민들의 종교생활 실태는 어떠한가, 북한 내에 지하종교는 존재하고 있는가?

오늘날 북한에서 과연 진정한 신앙, 종교생활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다. 그러나 아직 북한에는 분명하게 진정한 의미의 종교생활이 불가능하며, 단지 명목상 종교단체와 교회, 사찰, 성당이 존재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해방 이후 북한은 ‘반종교선전의 자유’를 내걸고 종교탄압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가 1970년대 초부터 종교단체들의 명칭이 다시 나타나고 국제종교행사에 종교단체 대표가 참가하기 시작했으며,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종교단체들의 활동이 빈번해지기 시작했고, 이를 계기로 북한 당국은 북한에도 종교가 있으며, 종교인들이 종교집회를 갖는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선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92년에 새로 개정된 조선말대사전에서 종교에 대한 비난과 비판을 모두 삭제하고, 최근의 문헌이나 언론에서도 종교 자체를 비판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변화를 보면서 진정한 의미의 종교생활이 가능해지고 있는 것처럼 보는 견해도 있으나 아직은 속단하기 어렵다. 북한의 종교단체들이나 종교인들의 활동을 보면 주로 북한의 정책이나 입장을 지지하고, 대남비방 성명서를 발표하는 데 그

치고 있으며, 순수한 종교활동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종교단체와 종교인들의 활동을 종교별로 살펴보면, 천도교의 경우가 북한에서 가장 많은 신도(15,000여명)를 갖고 있으며, 가장 활동이 활발하고 그 위상도 높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유미영 위원장이 김일성 사망시 장의위원 273명 중 39위로 되어 있었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 선출된 천도교 청우당원이 22명이나 되고, 지방인민회의에도 300명의 대의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북한의 모든 종교단체가 참여한 종교인협의회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것이 조선천도교중앙위원회이며, 그 협회장도 천도교중앙위원장이 맡고 있는 것이다.

불교의 활동은 1980년대 중반부터 사찰을 복원하면서 본격화되었다. 1991년 2월에는 김일성이 평양 근교의 대성산 광범사를 들러 복원현장을 시찰하기도 했으며, 그 후 많은 사찰이 복원되어 현재 60여 개의 사찰이 복원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신도수도 10,000여명에 달한다고 한다. 그리고 300여명의 승려들이 사찰에 상주하지는 않지만 석탄절, 열반절, 성도절 예불을 집전하고 있으며, 불교학원을 설립해 승려를 양성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종교인들 중 가장 활발한 국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기독교인들이다. ‘조선기독교도연맹’은 1974년 세계교회협의회(WCC)에 가입하려 했으나 거부당했다. 그 이후에도 WCC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꾸준히 접촉을 시도했고, 1986년 9월 스위스에서 남한의 기독교 교회협의회(KNCC) 대표들과 만난 이래 미국이나 일본 등지에서 여러번 회합을 갖기도 했

다.

평양에 봉수교회(1988년 건립)와 칠골교회(반석교회, 1989년 건립) 등 2개의 교회가 있고, 최근 또 하나의 교회를 신축중에 있으며, 앞으로 몇개의 교회를 더 건립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500여개의 가정교회가 있으며, 목사 30여명에 신도 수도 10,000여명에 이른다고 한다.

천주교는 개신교나 불교, 천도교에 비해 교인수(1,200여명)도 매우 적고, 신부가 1명도 없고, 조선천주교인협회도 1988년에야 결성되는 등 비교적 늦게 활동을 재개했다. 1988년에 건립된 장충성당에서는 매주 100~200여명의 신도가 모여 약식으로 미사를 올린다고 한다.

이렇게 북한의 종교교세나 종교에 대한 당국의 태도는 과거에 비해 크게 달라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김일성주의의 이념적 성향 때문에 주민 개개인의 진정한 종교생활은 거의 제한되어 있으며,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음성적으로 신앙을 지키고 있는 실정이다. 조선족 보따리 장사꾼들이나 연변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들에 의하면 외딴 집이나 산속, 논두렁 밑 등에서 서너명씩 비밀리에 예배를 보며 신앙을 지키려는 기독교 신자들의 비밀예배집단이 100여개 된다고 한다.

86 북한의 문학과 예술의 특징은?

북한의 문학과 예술의 특징을 알아보기 전에 이의 상위개념인 문화의 특성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문화는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하여 온 사회를 혁명화, 노동계급화하는 데 복무하는 수단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모든 문화활동은 공산주의적 인간개조, 노동의욕 제고 등 당정책을 구현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3대혁명의 하나인 문화혁명은 사회주의 국가가 수행해야 할 기본적인 혁명과업으로서 사상혁명과 함께 인간을 개조하여 공산주의 사회의 주체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다. 결국 북한의 문화는 당정책을 정당화, 합리화하는 도구로서 ‘이념문화’나 ‘목적문화’ 또는 ‘우상화문화’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혁명투쟁을 위한 무기로서의 북한의 문화는 정치로부터 미분화된 상태로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창작활동으로서의 문화활동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북한의 문예는 “당의 정책을 구현하여 근로대중을 공산주의적 혁명정신으로 교양하는 당의 힘 있는 무기”로서, 공산주의적 당성, 노동계급성, 인민성은 가장 본질적인 특성이다. 북한의 문예는 인민대중에 대한 정치사상적 세뇌의 수단이기 때문에 문예정책은 수령과 당의 통치정책에 예속되어 있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의 문예는 문예의 본질인 창조적 미의 추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혁명의 전파와 사상의 전달이란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주체문예 이론에 의한 문예창작에서는 세 가지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는 모든 문예작품과 이론에 김일성 부자의 주장이나 모습을 어떤 형태로든지 다루지 않으면 안 되고, 둘째는 김일성 부자의 절대화·우상화에 따라 그들의 가계도 신성한 차원에서 묘사되어야 하고, 셋째로는 김일성 부자에 철저히 귀의, 순응, 복종, 실천하는 인간상의 구현이다.

북한의 대중·러 군사동맹관계의 현황과 변화전망은 어떠한가?

북한의 대중·러 군사동맹관계는 기본적으로 1961년 7월 6일과 7월 11일 각기 체결된 ‘조·소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조약’과 ‘조·중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조약’에 기초하고 있다.

우선 북·러관계는 구 소연방이 해체된 이후 러시아가 대외관계에서 구소련을 승계함으로써 ‘조·소우호조약’을 계승하였다. 동조약은 10년 유효시한을 두고 계약 일방이 시한만료 1년 전에 해약희망을 표시하지 않으면 5년간 효력이 지속되어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1990년 9월 한·소 수교 이후 1995년 8월 7일 러시아 외무부는 북한측에 새로운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초안을 전달했으며 동년 9월 7일에는 동조약을 더이상 연장하지 않는다고 공식 발표함으로써 기존 ‘조·소조약’에 의거한 군사동맹관계는 1996년 9월 10일부로 완전 해체되었다.

한편 ‘조·중우호조약’도 유효시한이 10년으로 되어 있으며, 계약일방이 시한만료 1년 전에 해약희망을 표시하지 않는 한 5년간 효력이 자동적으로 연장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중국은 러시아와는 달리 사회주의 이념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과의 이념적 결속관계를 유지시켜 나갈 필요뿐만 아니라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지렛대로서도 이 조약

의 지속성을 외면할 수 없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으로서도 한·중수교 이후 가속화될 외교적 고립과 개방 압력 등에 대한 대처는 물론 대미·일 관계개선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도 중국의 협조가 절실한 입장이다.

이러한 북한과 중국의 입장은 한·중수교 후 양국 관계자들의 첫 공식반응에서도 잘 나타나는 바, 한·중 수교일인 1992년 8월 24일 오건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중수교 후에도 북한과의 선린우호관계는 지속될 것이며 북한과 맺은 상호원조 조약 등 이미 체결된 모든 조약과 협정은 앞으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으며, 동년 9월 11일 북한의 뉴욕주재 유엔대표부 허종 차석대사는 요미우리신문과의 회견에서 한국과 중국간의 경제·무역 관계가 외교관계로까지 발전했다고 하여 북한과 중국간의 전통적 관계가 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과거 조·소우호조약에 비해 조·중우호조약은 쌍방이 합의해야만 개·폐할 수 있고 효력은 무기한으로 되어 있어 앞으로의 조·중관계와 한·중관계 발전에 있어 동 조약이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비록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도 과거의 군사적 동맹관계보다 실제에 있어서는 통상적 외교관계의 비중이 커지는 변화과정에서 있다고 하더라도 한·중 양국간의 수교와 관련한 공동코뮤니케 작성 실무협의 과정에서 중국이 북한과 맺은 협정들이 한·중관계를 적국관계로 규정할 위험성이 높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북한과 중국간의 군사동맹관계 역시 재해석과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88

김일성 사후 북한에서 군의 위상과 역할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북한군부의 위상이 김일성 사망과 더불어 두드러지게 부각되고 있다. 그러한 조짐으로 우선 1994년 7월 19일 금수산의사당에서 진행된 발인식 때까지만 해도 장례의식에 참석한 국가장의위원회 위원의 서열은 최초 장의위원 발표시(1994. 7. 9)의 서열과 대동소이 하였으나, 그 다음날 김일성광장에서 치러진 추도대회에서는 그 서열에 변화를 보였다. 즉 장례식의 경우 연형묵(21번째) 다음에 김기남이 거명되었으나 추도대회 때에는 연형묵 다음에 인민군 차수 6명이 들어가고 그 다음 김기남(28번째)이 거명되는 등의 변화를 보였다. 그리고 1994년 9월 8일 만수대 김일성동상 앞에서 거행된 김일성 사망 두달맞이 화환증정식에서는 백학립, 김봉률, 김광진, 김익현 등 인민군 차수들이 15~18위의 상위서열을 차지함으로써 북한군부의 위상이 크게 부상되고 있음을 직감케 하였다.

북한군부의 이러한 위상강화는 김정일이 1995년 새해 첫 행사를 군부대 방문으로 시작하여 연중 여타 부문에 비해 유독 군사부문에 대한 집중적인 방문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1995년도 이래 신년사를 대체한 ‘공동사설’에 군보(軍報)인 ‘조선인민군’ 명의를 들어간 사실에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북한의 주요신문은 노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 정무원 기관지인 ‘민주조선’, 사로청 기관지인 ‘로동청년’ 순이다. 그런데 신년사를 대신한 ‘공동사설’에 ‘민주조선’이 제외되고 군보(軍報)인 ‘조선인민군’이 들어간 것이다. 또한 1996년 50여회 공식 등장사례 중 70% 이상이 군 관련 행사나 부대방문으로 이어져 왔다. 이는 북한에서 군의 위상과 역할이 얼마나 중시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반증해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공동사설’ 내용에서도 개방보다는 ‘우리식 사회주의 고수’ 등 보수적 입장을 주장하면서 ‘온 사회에 군사를 중시하는 기풍’, ‘군민일치의 미풍’ 등을 강조하고 있어 군부의 위세를 감지케 할 뿐 아니라, 특히 주목되는 것은 북한의 행정 전반에 걸친 김정일의 각종 지시와 명령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의로 발하여지고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1994년 8월 9일 청류다리 건설명령도 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으로 정무원을 포함한 북한 전체에 미치는 내용을 지시한 것으로 북한의 주요 경제·건설실적이 군 노동력의 동원으로 거의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현 북한에서의 군의 위상은 바로 북한체제 유지의 마지막 보루역할을 감내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한편 1980년대 권력세습체제 구축 과정에서 발표한 김정일의 주요논문들을 분석해 보면, 김정일은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입각한 이른바 ‘계급전쟁 불가피론’, ‘혁명전쟁론’ 등을 기반으로 한 군사우선주의에 집착하고 있다. 이는 김정일이 사회주의체제 하에서 군부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강하게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는 추론을 가능케 하는 바, 이러한 김정일의

군부중시 인식과 함께 북한군부의 위상과 역할의 실질적인 강화는 북한의 외교, 경제 등 각종 대내외 정책에 영향을 끼치고 있어 남북관계에도 영향력을 상당히 끼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주목시 된다.

북한의 전쟁 수행능력은 어느 정도인가?

북한은 1990년 이후 지속적인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보이는 등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으면서도 매년 GNP의 20~25%를 군사비에 투입, 교전상태(交戰狀態)에 있지 않는 국가로서는 ‘군사비/예산’ 비율이 세계 최고를 차지하고 있으며, 양적인 군사력면에서도 1996년 말 현재 병력이 105.5만여명으로 한 국에 비해 약 1.5배이고, 장비의 수량면에서는 2배 정도의 우 세한 군사력을 확보하고 있다.

물론 북한의 군사력은 계속되는 경제침체와 정밀기술과학 의 후진성으로 인해 전투장비의 노후화 및 성능의 열세 그리 고 에너지난으로 인한 훈련부족 등으로 전투능력 발휘에 비 효율적인 요인을 안고 있으며, 특히 총인구, GNP, 총예산, 군 사비 등 전쟁 잠재역량면에서 남한에 비해 열세인 것이 사실 이다.

그러나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점은 북한의 군사정책과 전략 이 1960년대 이래 공세적 전력구조 구축에 초점이 맞추어져 최우선적으로 추진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즉 북한은 전민무장 화, 전국요새화,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라는 ‘4대군사노선’을 실천지침으로 하는 군사정책 추진과 ‘3대혁명역량 강화’에 기초한 ‘결정적 시기 조성’을 위해 40년 가까이 막대한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자해 왔으며, 군사전략면에서도 한반도지형을 감안한 선제기습전략, 속전속결전략, 정규전과 비정규전의 배합전략을 기본으로 한 기존의 대남무력적화통일 전략을 일관성 있게 추구하여 왔다.

북한은 이러한 군사정책 및 전략에 입각한 군사적 중점추진 과업으로 ① 지상군의 기갑·기계화, 경량화, 기동화를 달성함으로써 ‘속도전’ 및 ‘선제기습’ 능력을 높였고, ② 유사시 배합전으로 남한의 전·후방 전역을 동시에 전장화할 수 있을 정도의 대규모 특수부대(10만여명)를 보유하고 있는가 하면, ③ 전투장비면에서 T-62와 같은 경전차와 수륙양용경전차의 다량 확보, MIG-29기와 장거리 미사일 등 신예무기의 증강 및 화학무기와 같은 대량살상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④ 부대 배치면에서도 대부분의 전력을 평양과 원산을 잇는 평원선(平元線) 이남으로 전진배치(병력 65%, 함정 60%, 항공기 50%)해 놓음으로써 부대의 조정이나 재배치 없이 현위치에서 즉각 공격이 가능하도록 준비해 놓고 있다.

또한 여기에다 현역에 준하는 훈련과 부대편성,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교도대를 비롯한 예비병력까지 고려한다면 북한은 이미 ‘동원된 상태’로 간주되고 있으며, 외부의 지원 없이 일정기간 단기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독자적 전쟁수행 능력을 구비한 것으로 평가된다.

90

북한의 준군사조직의 종류와 규모는 어떠한가?

북한은 4대군사노선의 하나인 ‘전민무장화’에 따라 14세부터 60세까지 인구의 약 30%를 동원대상으로 한 준군사조직을 구축해 놓고 있는 바, 그 종류로는 교도대, 노농적위대, 붉은청년근위대, 인민경비대가 있다.

‘교도대’는 우리의 예비군에 해당하는 북한의 가장 핵심적인 민간군사조직이다. 만 17세 이상 45세까지의 주민(여자: 17~30세)을 대상으로 행정단위와 직장규모에 따라 사단과 여단으로 편성되어 연 320시간 훈련을 받으며 총 병력은 약 16.4만명이다.

‘노농적위대’는 우리의 민방위에 해당하는 준군사조직으로 46세 이상 60세까지의 주민을 대상으로 직장 및 행정단위별 제대로 편성되어 있으며, 연 240시간 훈련을 받으며, 대원수는 약 395만명이다.

‘붉은청년근위대’는 고등중학교 5~6학년 남녀학생(15~16세)으로 조직되어 학교단위별로 중대 또는 대대급으로 편성되어 연 160시간 교육·훈련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들은 방학을 이용하여 7일간 붉은청년근위대 야영훈련소에 입영하여 훈련을 받는데, 주요임무는 ‘반혁명적 요소’를 제거하여 북한 체제를 사수하는 친위대로서 유사시에는 군 하급간부 보완을

위한 후비대·결사대로서의 임무를 수행한다. 현재 약 84만명의 대원으로 조직되어 있다.

‘인민경비대’는 하전사의 경우 정규군 초모대상자 중에서 선발되어 사회안전부 신병훈련소에서 3~4개월간의 기초군사 훈련을 받아야 하고, 군관의 경우 경비대 하사관 중에서 선발되어 인민경비대 군관학교 정규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주요 임무는 중요지역 및 철도, 해안의 경비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며, 규모는 약 14만명으로 조직되어 있다.

91

남한에서 군사비가 더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북한 군사력 비교에서 아직도 남한이 북한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의 군사비가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북한에 비해 증가된 것은 사실이나 군사력 규모에 있어서는 예산 증액만큼 증가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첫째, 한국의 군사비에서는 인력운영비가 47%에 이르나 방위력 개선을 위한 투자비는 28.3%에 불과하고 있음에 비해 북한의 경우는 거의 인건비가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대료 등 부대경비도 부담되지 않는 가운데 53% 이상을 순수 투자비로 사용하고 있다.

둘째, 북한은 무기생산비가 훨씬 저렴하게 소요된다. 과거 공산주의 국가간의 우호가격에 의한 무기거래나 군사동맹 차원의 기술이전으로 적은 투자비로 다량의 무기를 생산,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T-62탱크는 1억5천만원에 생산할 수 있으나 한국 M-1 전차는 23억원이 소요되고 MIG-29기 1대는 2,200만 달러임에 비해 F-16기 1대는 4,300만달러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북한의 공격형 무기체계에 비해 한국의 방어형 무기체계를 운영하는 데 훨씬 더 비싼 장비가 필요하다.

북한의 AN-2기 1대는 10만달러 정도에 생산할 수 있으나

이를 방어하기 위한 스팅거 미사일은 1기에 30만달러로 완전한 격추를 위해 1세트 3발 구입시 90만달러가 소요된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북한은 우리들에 비해 2배 이상의 전투력이 유지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92

북한체제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는 무엇이며, 붕괴가능성과 그 생존 전략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위기’는 유동적인 제요인이 체제존속에 착란을 가져오거나 또는 체제에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도전적 원인이 나타날 때 인식되어지는 상황의식과 관련된다. 현재 북한의 상황을 위기로 인식케 하는 제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체제 내적으로는 식량난과 함께 경제적 어려움, 대홍수의 피해 그리고 김일성 사망 등이다. 전자는 경제적 문제이고, 후자는 정치·사회적 문제이다.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구조적 결함과 동구 사회주의국가와의 교역단절 그리고 군사비 과다지출 등으로 만성적 경제난과 식량난을 겪고 있으며, 1995년부터는 식량부족이 누적되어 적대국에게까지 쌀지원을 호소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였다. 더욱이 옆친 데 덮친 격으로 1995년의 1백년 만의 큰 수해와 1996년의 수해로 북한은 민심까지 뒤숭숭할 정도로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북한은 경제난·식량난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일부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개방하고, 미·일과의 경제협력의 길을 트기위해 부심하고 있다.

김일성의 뜻밖의 사망은 북한체제에 어떤 것보다도 큰 충격과 위기감을 주었으리라고 본다. 김일성 사망 이후 2년 8개

월이 경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김일성 유혼통치를 지속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북한 전체에 미친 김일성의 영향력을 짐작케 한다.

북한은 김일성 사망의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김일성은 영원히 살아 있다”는 구호를 만들어 주민들을 선동하고 있다. 그렇지만 김일성의 사망이 북한체제의 전망을 어둡게 하는 위기의 원인임은 틀림없다.

대외적으로는 구소련의 붕괴와 동구 사회주의국가의 개혁·개방이 북한에 위기의식과 고립감을 갖게 했다. 즉, 동구의 개혁·개방으로 북한은 사회주의국가의 시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소련과 동구의 체제붕괴는 북한의 대외환경구조에서 위기의 핵심이다.

또한 생존전략의 차원에서 추진된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관련한 미국과의 갈등이다. 미국과 주변강대국들은 북한의 핵개발 저지를 위해 압력을 가했으며, 이러한 갈등상황은 북한의 경제·외교관계를 더욱 어렵게 했다. 이것은 위기의식을 격화하게 되었다. 결국 1994년 10월의 제네바협상을 통해 미·북관계의 극단적 상황은 해소했으나 북한의 핵의혹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 북한은 대내외적으로 외교·경제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위기관리 군사정권을 강화하며, 한편 핵개발 중단, 경제적 대외개방 등을 통해 미·일과 국제적 협력을 유도하면서 극복하고 있으나 현정권의 당면한 위기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본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의 붕괴가능성 여부는 북한지도부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최근 황장엽의

망명과 군부고위층의 연속 사망은 북한 내부의 심상치 않은 사태를 짐작케 하는 만큼 졸지붕괴는 아니라도 점진붕괴는 시작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현재 미국의 국무성도 과거에는 북한붕괴를 당분간은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상기의 사태로 붕괴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어쨌든 북한은 개혁·개방 없이는 오래 지탱할 수 없다고 본다.

김정일 집권시 북한의 대내외 정책변화 전망은 어떠한가?

북한은 김일성 사망 3주기인 1997년 7월 이후에나 김정일의 권력승계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공식적 권력승계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현재 북한이 위기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데 기인한다. 특히, 1990년 이래 계속된 경제침체는 1994년부터 1996년까지 총력을 기울인 ‘완충기’를 거치면서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된 정책변화 전망은 어떠한가.

① 대내정책 방향

1997년 공동사설에 나타난 내용을 살펴보면 대체로 대내외 정책변화를 시사하는 새로운 정책대안의 제시없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북한은 김일성의 유훈통치와 우리식 사회주의의 총진군을 기본과업으로 ‘고난의 행군을 승리로 마무리함으로써 붉은기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는데 최대 역점을 두면서, 김정일시대의 공식적 선포를 의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1996년 ‘공동사설’에서 정치사상·경제·군사부문의 3대 진지를 불패의 보루로 다지기 위한 투쟁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북한은 체제유지와 관련 주민들을 상대로 한 사상교육 강화와 김정일에 대한 군

의 지지와 충성을 바탕으로 하는 통치방식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경제진지를 언급하는 것을 보면 경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있는 것 같다. 1997년 공동사설에서 먹는 문제의 결정적 해결, 인민생활의 절대적 향상을 경제건설의 중심과업으로 제시하는 데서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체제내적 개혁이 없는 한 큰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폐쇄된 사회체제에서 권력을 효과적으로 유지해 왔던 북한체제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개방을 제한시켜 왔다. 따라서 김정일의 앞으로 과제는 정치의 통제성과 경제의 개방성이라는 배타적 관계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이다. 즉 두마리 토끼를 잡느냐 못잡느냐이다. 요컨대, 북한은 개방에 따른 사상오염 등의 후유증을 우려하여 사회통제 및 사상강화에 주력하면서 제한적 개방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지만 개혁 없는 개방정책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② 대외정책 방향

북한은 남한과는 적대적 관계를 견지하면서 서방국가와의 관계개선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국제적 고립을 탈피함과 동시에 경제난을 해소해 나갈 것으로 체제의 공고화를 추구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어느 서방국가보다 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데 예를 들면 1996년 1월 10일부터 하와이에서 미국 유해 송환협상을 이유로 미·북 군사접촉을 하는가 하면, 미국과 약속했던 북의 핵연료봉 건식보관작업을 미국의 기술지원으로 착수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북한은 일본과 역사적, 정치적으로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으나, 일본과도 국교정상화를 통하여 ‘배상금’ 등 경제원조를 획득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북한은 대외관계에 있어서는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는 실용주의 노선으로 이행할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북한은 김정일이 공식적으로 권력을 승계하더라도 대내적인 측면에서는 김일성 유혼 관철을 강조하는 한 큰 변화가 없으리라고 보이며, 대외정책에서는 체제유지와 경제난 해결을 위해 실리외교를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VI. 북한의 대남전략

94

북한에서 대남전략을 담당하는 기구는 어떤 것이 있으며 또한 주요 임무는?

북한은 ‘하나의 조선’ 논리에 입각하여 남한을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의 혁명’의 대상으로 접근하고 있다.

북한은 남조선혁명 강화책으로 남한에 전술참모부역할을 담당할 지하당을 구축하고, 통일전선전술 구사로 ‘남한민중’을 의식화하여 혁명주력군과 보조군으로 조직·편성 및 배치하며, 남한의 민중봉기에 장애가 되는 반혁명역량제거 등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한 북한의 대남공작체계를 살펴보면, 북한은 노동당 비서국에 대남전술공작을 총괄하는 대남사업담당비서를 두고 그 휘하에 사회문화부, 통일전선부, 대외정보조사부, 작전부 및 특수조직체계로서의 인민무력부 정찰국 등을 두고 있다.

이들 대남전술 공작부서는 각자 독립성을 유지한 채 독자적인 대남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중요 공작사안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특급 공작요원을 차출하여 특별팀을 구성하고 있다.

또한 이들 5개부서 외에도 국가안전보위부에 반탐국, 대외정보국이 있으며 사회안전부에도 남조선국이 조직되어 있는 등 자체 대남공작 전담조직이 편성되어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지난 1974년부터는 김정일이 대남공작의

총사령탑이 되어 막대한 예산을 탕진하며 대남전술공작을 진두지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 주요부서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사회문화부는 예전의 연락부를 확대개편한 대남전술공작의 주요부서로 간첩밀봉교육과 남한 내 지하당 구축 및 해외공작을 주임무로 하고 있다. 특히 사회문화부는 남조선혁명의 주력군을 포섭하기 위한 공작에 몰두한다.

통일전선부는 1977년 김일성의 교시에 따라 신설된 대남사업부서로서 통상적으로 대남사업 담당비서가 직접 부장을 겸직할 정도로 대남공작의 핵심적 부서이다.

이 부서는 직할부서로 직접침투과, 남북회담과, 해외담당과, 대남심리전 및 정보자료를 분석·연구하는 통일정책연구원 등이 있다.

외곽단체로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한국민족민주전선(민민전), 해외동포위원회, 재북통일촉진협의회,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등을 관장하고 있다.

통일전선부 및 산하 외곽단체는 모두 북한의 대남적화혁명을 위한 위장 평화통일을 선전선동하는 활동뿐만 아니라 범민련, 범청학련 등 친북반한 통일전선단체도 관장하며 민민전을 통해 국내 좌익권을 지도하고 있다.

대외정보조사부는 주로 대외 대남정보수집, 해외간첩공작 및 국제·대남테러공작을 전담하고 있다. 주요 공작사례로는 1978년 신상옥·최은희납치 및 1987년 KAL 858기 공중폭파테러자행 등이 있다.

작전부는 공작원에 대한 기본교육훈련, 침투공작원안내·복

귀, 대남테러공작 및 대남침투 루트개척 등을 주임무로 하고 있다. 이 부서는 김정일 정치군사대학(일명 금성정치군사대학) 및 남한공작원 파견기지인 2개의 육상연락소와 4개의 해상연락소를 보유하고 있다.

정찰국은 인민무력부 총참모부 소속으로 무장공비 양성·납파, 요인암살, 파괴, 납치 등의 게릴라활동과 대남군사정보수집 등을 주임무로 하고 있다. 정찰국에는 많은 특수부대와 저격여단, 사단경보병부대 등과 1996년 9월 잠수함 침투사건을 일으킨 해상처가 소속되어 있다.

이와 같이 북한에는 혁명의 시각에서 남한에 대해 부단한 연구와 적대적 행위를 일삼는 상설기관이 존재한다.

95

북한이 남한을 배제하고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은 무엇인가?

1945년 7월 27일 무조건 항복을 종용하는 연합국측의 포츠담선언을 일본이 즉각 수락하지 않음으로써 동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폭이 투하되자, 소련은 8월 8일 대일 선전포고를 하고 한반도로 물밀듯이 진격해 들어왔다. 이에 미국은 일본군의 항복을 접수하기 위한 잠정 군사분계선으로 38도선 획정안을 제기하였으며, 소련은 일본본토 분할점령계획과 흥정할 욕심으로 이를 수락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자, 1950년 6월 25일 김일성의 제의를 수락하여 한국전쟁을 일으켰다. 한국전쟁은 1953년 7월 27일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을 일방 당사자로 하고, 김일성 조선인민군사령관과 팽덕회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을 타방 당사자로 하여 정전협정을 체결함으로써 40여년이 넘게 장기 휴전으로 들어가 오늘날 한반도는 불안한 평화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정전협정의 당사자는 쌍방 군사령관으로 되어 있으며, 한국군은 전시중의 ‘대전협정’에 따라 작전지휘권을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시킨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휴전반대정책에 따라 한국군사령관 명의로 정전협정에 별도의 서명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정전협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있으며, 정전협정에 따라 소집된

1955년 제네바 정치회담에 참여한 이래 군사정전위원회에도 빠짐없이 참여해 왔던 정전협정의 직접당사자이다. 이러한 구구한 법적 논쟁을 떠나서도 한국전쟁에 관한 정전협정에 한국이 당사자가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당사자인 말인가? 우리 한국이 만일 정전협정준수를 거부했었다면 정전협정은 벌써 효력을 상실하고 당연히 폐기되었을 것이다. 여하튼 정전협정은 오늘날 남북분단 상태에서 불안하게나마 한반도 평화의 확실한 법적 장치인 것이다.

그러므로 1992년 9월 17일 발효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부속합의서에서 남북한은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성실히 준수한다.”고 합의했던 것이다.

한편 김영삼 대통령은 1995년 광복 50주년 경축사에서, ① 남북한을 직접 협상당사자로 하고, ② 필요하다면 관련당사국이 남북한의 합의사항을 보장하여야 하며, ③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 등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기본원칙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정전협정을 남북한 평화협정으로 대치시키고 계속 주장해 오다가 월남전 당시 미국무장관 키신저와 월맹공산당 정치국원 레득토 간에 비밀리 진행된 월남전 종전협상 방식을 모방하여 1994년 3월 25일 북한과 미국만의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한 이래 이를 한사코 고집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전쟁의 성격을 미제의 침략전쟁으로 만들고 대한민국을 침략전쟁을 방조한 이른바 반민족적 식민정권으로

전략시키며, 다른 한편 김일성을 미제의 침략전쟁을 물리치고, ‘조선민족의 자주권’을 옹호한 민족적 영웅으로 부각시킴으로써 북한정권이 역사적 정통성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날조하여 그 여세를 몰아 공산화통일을 주도하려는 이른바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전략’과 직결된 것이다. 그리고 미·북간의 평화협정이 체결되어 정전협정을 대치시킬 경우 대한민국의 존재를 인정하는 법적 장치가 없어짐으로써 이른바 ‘하나의 조선’이 현실화 되어 ‘남조선’ 공산화를 위한 유리한 여건이 조성된다고 보고 있다.

한편 북한은 제50차 유엔총회 최수현 외교부 부부장 연설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대미평화협정 체결의 명분조작을 위하여 남북은 이미 불가침을 약속한 기본합의서가 체결되었다고 하면서 ‘대미평화보장체계’를 내세우고 있으나 평화협정체결 주장과 본질적으로 하등의 차이가 없는 것이다.

북한이 한국 배제전략을 고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북한은 지난 해에 이어 신년사를 대체한 1997년도 ‘당보·군보·청년보의 공동사설’에서도 여전히 미국에 대해서는 “조선반도에서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할 데 대한 우리의 정당한 제안에 긍정적으로 응해 나와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국에 대해서는 분열공작차원에서 “털끝만한 통일의지도, 최악의 상태에 있는 북남관계를 해결할 그 어떤 의사도 없으며 이들에게 기대할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고 강변하는 등 남한 당국 배제전략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대남태도는 기본적으로 그들이 대남적화혁명노선을 고수하고 있는 입장에서 최근의 사회주의권 와해라고 하는 국제정세의 변화와 한·소 수교 및 한·중 수교 등에 따른 국제적 고립 심화 및 극심한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난 그리고 특히 김일성이라는 카리스마가 소멸된 상황에 처하여 체제유지에 최우선 역점을 둘 수밖에 없는 그들의 궁색한 처지에 기인한다고 할 것이다.

사면초가에 둘러싸인 북한은 남북대화를 재개할 경우 이는 곧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과 실천의 장으로 발을 들어놓게 되고 이럴 경우 소위 남한의 ‘평화적 이행전략’이 현실화된다고 오판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우선 대미·일 관계개선을 통하여 외교적으로 체제보장을 확보하면서 경제적 실리획득으로 경제난 해소를 도모하는 한편, 대남면에서는 도리어 남한당국배제 및 주적화 전략을 추구함으로써 그들 내부의 체제결속을 통해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이어지는 유일독재지배체제를 공고화하는 이른바 ‘정권안보’에 이용하려는 것이다.

결국 현 북한통치권의 발상의 전환이 없고 폐쇄체제에 변화가 없는 한, 한국의 정통성을 훼손시켜가는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그들의 필요에 의한 전술적 변화는 있을지언정,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라는 근본적인 그들의 대남 정책에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97

북한이 주장하는 ‘민족대단결 10대 강령’의 내용은 무엇이며, 이를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북한이 주장하는 ‘민족대단결 10대강령’이란 1993년 4월 7일 최고인민회의의 9기 7차 대회에서 김일성이 직접 작성하여 발표한 것으로서,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민족대단결→자주·평화·중립적 통일국가 창설, ② 민족애·민주·자주정신에 기초한 단결, ③ 공존·공영·공의로 통일위업에 복종하는 단결, ④ 분열과 대결을 조장시키는 정쟁을 중지하는 단결, ⑤ 북침·남침위기를 제거하고 신뢰하는 단결, ⑥ 주의·주장이 다르다하여 배척하지 않는 단결, ⑦ 개인·단체의 재산을 보호하고 통일에 기여하는 단결, ⑧ 상호접촉·대화·왕래를 통한 단결, ⑨ 북과 남, 해외동포의 연대성을 강화하는 단결, ⑩ 통일위업에 공헌한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는 단결 등이다.

북한은 그 동안 ‘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지지하는 평양시 군중대회를 비롯하여 전국에 걸친 지지·관철 군중대회를 대대적으로 개최하였고, 우리측 재야단체들과 종교인들에게 ‘이 강령의 취지에 호응을 촉구’하는 편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북한은 이 강령이 “전민족의 대단결을 도모하기 위한 이론·실천적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힌 민족단결의 대헌장”이라고

선전하면서 “남조선과 해외, 각당, 각과, 각계각층 동포들의 애국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며 그들과 련대·연합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공동행동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선전하였다.

북한은 이 강령을 향후 통일투쟁의 선전구호화하려는 의도에서 채택하였고, 아울러 남한과 해외동포들과의 통일을 위한 공동행동을 강조함으로써 남한의 좌경세력과 해외친북세력과 의 통일전선전술을 전개할 목적으로 채택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이 강령은 북한의 대내적 체제결속의 도모에 이용하려는 목적에서 채택되기도 하였다.

북한은 이른바 ‘통일정책의 3대지주’로 ① 자주·평화·민족대단결, ② 고려연방제, ③ 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내세우고 있다.

VII. 통일대비

북한체제가 갑자기 붕괴될 경우 우리의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1980년대 말, 1990년 초 구소련과 동구 공산권이 사회주의체제의 한계성으로 연이어 붕괴되고 아울러 동독이 붕괴되어 서독체제로 흡수통일되면서 우리사회에 북한체제 붕괴론이 대두되었다. 그 후 1994년 7월 8일 김일성이 돌연 사망한 후 그가 독점하고 있었던 조선노동당 총비서직과 국가주석직을 김정일이 아직 공식 승계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는 사회주의 경제권이 붕괴되고 실용주의 노선으로 정책이 전환되면서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의 경제지원이 중단되고 내부적으로는 ‘우리식 사회주의’의 한계성이 노정되면서 식량난, 에너지난을 비롯하여 북한경제가 전반적으로 파탄지경에 이르고 귀순자의 속출 등 사회일탈현상이 계속 보도되면서 북한체제 붕괴론이 대내외적으로 더욱 꼬리를 물고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체제의 붕괴 여부를 속단하기는 극히 어려운 실정이다. 왜냐하면 북한은 정권수립 이래 거의 완벽한 폐쇄 사회체제를 유지시켜 왔으며, 김일성이 살아있는 신으로서 일인독재체제를 고수해 온 특수사회로서 주민의 민주주의 정치의식이 전무한 상태이므로 동구공산권에서 일어났던 체제저항운동은 아직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위기의식을 느낀 북한 당국이 주민에 대한 통제와 정치사회화교육

을 더욱 강화하고 미·일·중 등 주변국이 북한체제의 붕괴를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의 저해요인으로 판단하여 대처하는 상황이다. 오늘날 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난국이 곧바로 체제붕괴로 이어질 것으로 예견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북한당국이 생존전략 차원에서 시도하고 있는 대외개방 경제정책이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될 부분적인 북한사회 개방이 주민의 체제비교의식을 각성시킬 경우 체제저항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상정할 때 우리는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북한체제의 특성으로 보아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식량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며, 김정일에 저항하는 쿠데타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상의 이유 등으로 북한이 붕괴되는 급변사태를 대비하여 우선 북한사회를 안정시키고 점진적으로 자유민주사회로 전환시키는 업무를 수행할 인적 자원을 육성해야 한다.

99

통일과정에서 군사문제 협상이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의 하나로 여겨지는데 우리의 협상대책은 무엇인가?

남북한간의 군사문제 협상이란 남북한간에 현존하는 군사적 위협에 대해 상호 군비증강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쌍방이 군사력의 운용과 구조의 통제를 통해 그 위협을 보다 제한·감소시킴으로써 기습공격과 전쟁발발의 위험을 제거하고 제도적으로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을 의미한다.

역사상 대부분의 전쟁발발은 상호불신하는 가운데 잘못된 인식, 오해, 오관에서 비롯되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각종 군사정보를 교환하고 부대이동이나 기동훈련 및 부대배치 상황 등 주요 군사활동을 상대방에게 통보하고 공개하여 서로 감시·확인케 한다면 전쟁발발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오해와 오관, 불신의 소지를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인 것이다. 이렇게 군사적 신뢰구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한걸음 더 나아가 전쟁발발능력을 감소 또는 제거하기 위한 군사력의 규모 및 구조의 통제도 가능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제까지 남북한간의 군사문제에 대한 북한의 주장을 보면 10만명 이하로의 병력 감축, 주한미군 철수 등 신뢰구축과정은 도외시한 채 이른바 ‘결과로서의 군축’만을 강조해 왔다. 이는 군사력의 우위 특히 전차와 장갑차와 같은 공격무

기의 수량적 우위, 즉각적 동원이 가능한 병영화된 사회체제, 대남도발을 정당화하는 정치·이념체제 등을 배경으로 대남혁명전략 차원에서 전개한 선전적 성격이 짙다. 따라서 통일과정에서 군사문제 협상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문제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1990년대에 국제정세는 정치이념으로부터 탈피 및 자본주의 시장경제원리의 세계적 확산 등 급격한 정세변화를 가져왔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진행된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과 북은 ‘남북한 기본합의서’를 채택·발효시킬 수 있었다. 또한 이의 후속조치로서 정치, 군사, 교류협력의 3개 분야별 분과위원회 및 공동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합의하고, ‘기본합의서’ 해당 분야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각각의 부속합의서도 채택·발효시켰다.

현재 북한의 일방적인 남북대화 중단선언으로 남북고위급회담, 분야별 분과위원회 및 공동위원회가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나, 우리의 군사문제 협상에 대한 기본입장은 이러한 남북간 협의·실천기구들을 하루 속히 가동시켜 이미 채택·발효시킨 ‘남북한 기본합의서’의 기초에 따라 남북한 화해·협력체제를 구축함과 동시에 전쟁방지를 위한 군사적 안전성을 증대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단계적·점진적으로 실현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런 입장에서 우리의 군사문제 협상의 대책방향은 ‘선 정치·군사적 신뢰구축, 후 군비감축’이라는 단계적 실천으로 나가려는 것이며, 군축방안에 들어가는 ①쌍방간 공격형 전력을 우선 감축한 후, 방어형 전력구조로 전환, ②군사력 과다보유

측이 상대방 수준으로 우선 감축 후 동수균형감축 방식으로 군축 추진, ③ 병력감축은 무기감축과 병행 추진하되, 상비전력에 상응하여 예비전력 및 유사 군조직도 동시 감축, ④ 현장 검증과 감시를 실시하며 공동검증단과 상주감시단 구성·운영, ⑤ 쌍방 군사력의 최종 유지 수준을 통일국가의 군사력 수요를 감안하여 결정한다는 대책방향에서 협상을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다.

100 통일대비 차원에서 앞으로의 통일교육은 어떻게 전개되어야 하는가?

통일이 한낱 염원의 차원에 머물러 있던 시기의 통일문제나 북한 실상에 대한 교육내용과 통일이 눈앞의 현실적 실천 과제로 등장한 오늘의 그것이 같은 내용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1980년대 이후 지금까지 ‘통일안보교육’ 또는 ‘통일교육’의 가장 큰 약점은 통일 이전 시기의 상황만을 대상으로 상정해 온 나머지 통일의 앞날을 내다보며 이를 준비하고 대비케 하는 교육적 노력이 거의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의 통일교육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통일의 과정과 이후까지를 전망하는 이른바 ‘통일대비교육’을 어떻게 강화해 나갈 것인가에 모아진다.

여기서 통일대비교육을 통일에 대한 국민적·민족적 차원의 수용성을 높여 나가는 정치교육적 노력을 총칭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이 교육이 앞으로 담당해 나가야 할 기본과제는 다음 두 가지 영역으로 크게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그것은 첫째, 현실적 실천과제인 통일과업을 직접 담당해 나갈 국민들로 하여금 갈라져 있는 민족사회를 하나로 통합해 가는 과정과 그 이후에 실현될 공동체적 삶에 나타날 갈등과 혼란을 예견하여, 이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거나, 효과적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통일주체로서의 확

고한 의지와 가치관, 바람직한 태도 등을 함양해 주는 것(통일준비 차원)이고, 둘째는 통일 이후의 민족 전체의 삶이 우리가 원하는 바와 같이 평화롭고 복된 것이 되기 위해 통일국가의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도덕적 품성과 태도 등을 사전에 길러주는 것(통일대비 차원)이 된다.

그러면 이러한 통일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교육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어야 할 것인가?

먼저 통일에 이르는 과정과 이후의 변화된 삶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통일준비 차원의 교육은 일차적으로 구시대를 통해 길들여진 이데올로기적 적대감과 불신, 대결의식을 해소해 나가는 데 기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우리 모두는 지난 반세기 동안 냉전적 대결구조와 이질화된 사회문화체계 속에 살아 오면서 부지불식간에 상호 불신을 키워 왔으며, 북한동포를 더불어 살아갈 동반자가 아닌 대결과 적대의 대상으로 보는 데 익숙해져 있다.

이러한 민족간의 대결의식과 적대감을 씻어내지 않고는 상호관계의 실질적인 개선을 도모해 나갈 수 없을 뿐더러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향해 나가는 민족공동체의 건설을 통한 통일의 길에도 나설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교육을 통하여 국민 의식 속에 상존하는 불신과 적대감, 대결의식을 없애는 일이야말로 통일을 추진하고 준비해 나가는 길에 가장 앞서서 선결의 과제가 된다.

통일준비교육의 두번째 과제는 서로 다른 체제와 이념 아래 장기화된 분단으로 말미암아 심화되어 온 민족의 이질화를 극복하고 같은 민족으로서의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발전

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민족의 동질성을 되찾는 일이야말로 갈라져 있는 민족의식을 하나로 합쳐 나가는 길임과 동시에 분열되어 있는 남북한 사회를 하나의 공동체로 통합해 나가는 기반을 쌓는 일의 출발이 되는 것이다.

세번째로 개개인의 가슴 속에 하나의 민족공동체 속에 더 붙어 살아갈 구성원으로서의 성원의식을 심어주는 데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 통일정책은 최종적인 통일에 앞서 둘로 단절되어 있는 남북한 주민의 생활권을 하나로 합쳐 우선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공동체적 삶을 회복하고, 이 바탕 위에 정치적인 통합을 실현함으로써 궁극적인 국가통일을 완성한다는 것을 기조로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우선 지향해 가는 민족공동체의 형성과 발전에 가장 기초가 되는 요소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성원들이 가지는 공동체에 대한 귀속의식과 참여의식의 강약 문제로 귀결된다.

따라서 민족공동체를 건설해 나가기에 앞서 앞으로 같은 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남북한의 주민들에게 같은 민족으로서의 끈끈한 유대의식을 심어주고, 같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심리적 융합을 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기본적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교육적 노력이 사전에 경주되어야 한다.

네번째로 통일에 따르는 희생과 고통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이를 감내해 나갈 수 있는 의지와 각오를 다져 나가는 것이어야 한다.

통일에는 영광과 기대만이 뒤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를 성취하는 과정과 이후에 많은 희생과 부담, 책임이 우리에게 안

겨지는 것이라는 점을 사전에 확실히 인식시켜 나가야 한다. 통일과업을 담당해 나갈 통일주체 모두가 이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확고히 하지 않으면 통일을 도중에 포기하거나 처음부터 용기를 잃고 좌절에 빠지기 쉽게 된다.

끝으로 통일국가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바람직한 도덕적 품성과 태도를 심어주기 위한 통일대비 차원의 교육에서 특히 강조되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 그것은 주로 서로 다른 생활경험과 가치관, 행동양식을 가진 남북한의 주민이 하나의 공동체 속에서 삶을 영위해 나감에 있어 가장 긴요한 ‘함께 사는 원리와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될 것이다.

통일 이후의 삶을 예견해 볼 때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서로 다른 생활경험, 이질적 가치관과 의식구조를 가진 남북한의 주민들이 함께 살아가면서 각자 자기의 주장이나 의견, 생활양식만을 고집하고 앞세울 때 야기될 개인적·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어떻게 극복하고 사회적 통합을 원만히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이다.

통일 후에 예상되는 이같은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고, 각종 사회적 관계나 인간관계에서 야기될 갖가지 분쟁과 대립을 원만히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길은 결국 통일국가의 국민이 될 모두에게 타인들과 평화롭게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민주적 생활양식’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하는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통일을 대비하는 교육의 일환으로 ‘민주시민교육’의 강화 필요성이 최근 학계를 비롯한 관계요로에서 새삼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101

통일비용이란 무엇이며,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이고 조달방안은 무엇인가?

통일비용이란 통일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말하며, 이는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처음 나온 말이다. 서독은 통일과정에서 1990년 7월 1일 ‘경제통합’을 단행함으로써 당시 국제환율상 5:1의 동서독 화폐비율을 원칙적으로 1:1로 통합시킨 결과 엄청난 통일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 그리고 ‘2+4회담’에서 당시 소련의 난관조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독과 소련간의 비밀협상을 통해 서독은 소련에게 150억달러의 특별차관과 동독지역에서의 소련군 철수비용 74억달러를 1994년까지 제공기로 합의함으로써 엄청난 통일비용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밖에 동독지역의 사회간접자본 확충, 동독인의 실업 및 고용대책, 동독의 외채 해결을 비롯하여 각 부문의 통합비용이 당초 예상했던 통일비용을 크게 초과함으로써 큰 어려움을 겪었다.

한반도 통일이 실현될 경우에도 서독에 못지않게 엄청난 통일비용이 필요할 것이다. 서독에 비해 우리의 영세한 경제 규모를 감안할 때, 이는 매우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전문가들은 한반도의 통일비용이 줄잡아 200조원~400조원에 달하며, 통일 이후 2~3년 동안 이중 80조원~160조원이 투

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997년도 우리나라의 1년예산(일반회계기준)이 67조원인 점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천문학적 규모의 통일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를 더욱 키우는 길밖에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다.

결국 통일비용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해서는 국민저축도 늘려야 하며, 이에 따르는 고통을 국민들이 분담하여 감내해야 하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국민적 합의’를 미리 도출해 놓아야 통일상황이 닥쳐왔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통일비용으로 예상되는 부문은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따르는 비용, 북한의 실업자 고용대책에 따르는 비용, 남북한 화폐통합에 따르는 비용, 북한지역의 투자 유인 제공에 따르는 비용, 북한지역의 토지·건물 소유권 처리에 따르는 비용, 북한의 대외부채와 계약의 인수에 따르는 비용, 북한의 사회보장제도 적용에 따르는 비용, 교육제도 개편, 군비 감축, 행정체제의 정비 등 각 부문의 통합에 따르는 비용 등을 망라하고 있다.

이러한 막대한 통일비용을 조달하는 방안으로서는 통일기금, 통일세 신설 및 국공채 발행 등 다양한 방법들을 고려할 수 있겠으나 현재 우리 정부로서는 아직 구체적 방안을 확정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통일비용은 통일의 시기와 방법, 통일단계에서의 남북한 경제수준 격차, 재정부담의 범위 등에 따라 크게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현단계에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키보다는 우리 경제의 건실한 성장과 국제수지 흑

자 축적 및 북한의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건설 지원 등이 보다 중요하다.

한편 한반도의 통일이 실현되면 상당기간 통일비용에 따른 어려움은 계속되겠지만 이를 슬기롭게 극복한 뒤에는 통일한국의 경제규모는 크게 성장할 것이다. 왜냐하면 생산요소 및 생산물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이고, 분단상황에서 필요했던 각종 비용을 절감하는 이득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에 점증하고 있는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은?

김일성이 사망한 1994년을 기점으로 북한주민의 탈북은 매년 50명 수준으로 크게 늘어났다. 뿐만 아니라 북한 경제사정 악화 등의 이유로 북한을 이탈하여 중국, 러시아 등지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주민의 수는 약 1,500여명으로 추산되고,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로의 귀환을 희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인도주의, 인권적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북한이탈주민 전원수용과 이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시급하다는 인식 하에 보호대상자가 대한민국의 보호를 요청하는 시점부터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과정을 포괄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지난 해 12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금년 1월 13일에 공포한 바 있으며, 이 법은 6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금년 7월 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새 법의 주요 내용은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이 법에 의한 보호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3년 정도 특별한 보호를 받게 하고, 정착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여 이들이 우리 사회로 배출되기 전에 일정기간 사회적응 능력을 기르고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지원방식에 있어서도 일시적인 물질적 지원보다는 이들의 자활능력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고 이들의 화력 및 자 격인정, 취업알선, 교육 및 주거지원도 하도록 하였으며, 탈북 주민 관련업무를 범정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6개 유관부처가 참여하는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를 구성·운영토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중앙과 지방, 정부와 민간의 협조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참여도 보장하였다.

한편 우리의 의지와는 달리 대량 탈북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는 단순한 보호 및 수용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안보적 측면과 국제적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비상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도 준비·보완 중에 있다.

통일문답

통교 97-4-5

인 쇄 일 1997년 4월 11일

발 행 일 1997년 4월 15일

발 행 처 통일원 통일교육원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TEL : 901-7123·4 FAX : 901-7024

인 쇄 처 양동문화사

〈비매품〉

